2026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편람

2026. 4.

행정안전부

목 차

Ⅰ. 평가 개요 ····· 1
1. 목적 및 근거 ····· 1
2. 대상기관 ····· 1
3. 평가항목 ····· 1
4. 수행 절차 및 일정 ····· 2
5. 2026년 개편 추진방향 ····· 4
6. 평가지표의 구성 ····· 5
7. 평가결과의 활용 ····· 6

Ⅱ. 평가지표 세부내용 ····· 7
1. 개방·활용 영역 ····· 7
2. 품질 영역 ····· 26
3. 분석·활용 영역 ····· 47
4. 공유 영역 ····· 65
5. 관리체계 영역 ····· 78

Ⅲ. FAQ ····· 85

[첨부]
1. 2026년 평가대상 기관 목록 ····· 87
2. 정성평가 작성양식 ····· 93
3. 평가지표별 문의처 ····· 127

• • '25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1/4) •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음

<table>
<tr><th>영역</th><th>2025년</th><th>→</th><th>2026년</th></tr>
<tr><td rowspan="4">개방·활용
(48)
↓
(50)</td><td>1-①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및 이행률(10)</td><td>조정</td><td>1-①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및 이행(12)</td></tr>
<tr><td>1-② AI 친화·고가치 데이터 개방 노력(10) * 정성</td><td>조정</td><td>1-② AI 친화·고가치 데이터 개방 노력(10) * 정성
※ 인공지능 친화적(AI-Ready) 공공데이터 평가용 체크리스트 등 세부 평가 기준 조정</td></tr>
<tr><td>1-③ 개방데이터 이용자 지원 실적(8)
<table><tr><th>세부 평가항목</th><th>배점</th></tr><tr><td>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적기 처리율</td><td>2</td></tr><tr><td>공공데이터 제공 주기 준수율</td><td>4</td></tr><tr><td>공공데이터 오류신고 적기 처리율</td><td>2</td></tr><tr><td>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미수행</td><td>(-1/건)</td></tr><tr><td>분쟁조정위원회 권고 불수용</td><td>(-1/건)</td></tr></table></td><td>조정</td><td>1-③ 개방데이터 이용자 지원 실적(6)
<table><tr><th>세부 평가항목</th><th>배점</th></tr><tr><td>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적기 처리율</td><td>2</td></tr><tr><td>공공데이터 제공 주기 준수율</td><td>3</td></tr><tr><td>공공데이터 오류신고 적기 처리율</td><td>1</td></tr><tr><td>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미수행
※ 누적 감점 적용</td><td>(-1/건)</td></tr><tr><td>공공데이터 심의조정위원회 권고 불수용</td><td>(-1/건)</td></tr></table></td></tr>
<tr><td>1-④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및 성과(20) * 정량+정성
<table><tr><th>세부 평가항목</th><th>배점</th></tr><tr><td>활용성 진단 서비스 기준값 달성도</td><td>5</td></tr><tr><td>공공데이터 민간·공공 활용 성과</td><td>5</td></tr><tr><td>공공데이터 활용 지원</td><td>10</td></tr></table></td><td>조정</td><td>1-④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및 성과(22) * 정량+정성
<table><tr><th>세부 평가항목</th><th>배점</th></tr><tr><td>활용성 진단 서비스 기준값 달성도</td><td>5</td></tr><tr><td>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성과</td><td>7</td></tr><tr><td>공공데이터 활용 지원</td><td>10</td></tr></table></td></tr>
<tr><td>1-⑤ 가명정보 제공 및 합성데이터 개방 실적가점(5)</td><td>유지</td><td>1-⑤ 가명정보 제공 및 합성데이터 개방 실적가점(5)</td></tr>
<tr><td rowspan="3">품질
(45)</td><td>2-①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17)</td><td>조정</td><td>2-①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17)
※ 예방적 품질관리 자체진단 수행 지표 폐지 등</td></tr>
<tr><td>2-② 데이터 값 관리(18)</td><td>조정</td><td>2-② 데이터 값 관리(18)
※ 업무규칙 및 오류율 기준 상향</td></tr>
<tr><td>2-③ 진단결과 조치(10)</td><td>유지</td><td>2-③ 진단결과 조치(10)</td></tr>
<tr><td rowspan="2">관리체계
(7)
↓
(5)</td><td>5-① 추진기반 조성(3)</td><td>유지</td><td>5-① 추진기반 조성(3)</td></tr>
<tr><td>5-②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교육 참여(4)</td><td>조정</td><td>5-②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교육 참여(2)</td></tr>
</table>

• • ’25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2/4) • •

1. 개방·활용 영역

○ AI 핵심 데이터 개방 촉진을 위해 **‘AI 친화·고가치 데이터 개방’ 지표 개선**

-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개방 이행 여부**를 평가에 반영
- 인공지능 친화적(**AI-Ready**) **공공데이터 평가용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기관의 AI 친화 데이터 관련 이해도 제고 및 기관 차원의 AI-Ready 도입 촉진 도모

○ 기관 보유 데이터의 **조기 개방 이행** 지표의 배점을 **상향**[*] 조정하고 중장기 **개방계획 미수립시 감점**[**] 항목을 **추가**하는 등 조기 개방 평가 지표 강화

* 개방계획 조기 이행 및 수립 : 5점→7점, ** ’27~’29년 중장기 개방계획 미수립 시 감점 : - 0.5점

○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 신규서비스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이행 강화를 위해 **연속 미이행시 감점 누적 적용**

※ (예시) ’25년~’26년 정비 미이행시(건당) : -1점→-2점

○ 공공데이터 관련 위원회의 **심의·권고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권고 불수용 감점 지표를 **문제해결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미이행 및 이행 관리 미흡까지 **확대**

○ 기관에서 개방한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를 위해 **성과 배점 상향** 및 **지원 노력 인정 분야 확대**

※ 활용배점 조정(5점→7점) 지원분쟁조정/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지원센터 요청 등에 따른 데이터 개방 등

2. 품질 영역

○ 기관의 **전체 DB**를 **1~3년 주기로 진단**할 수 있도록 평가대상 DB를 선정하되, 공공데이터포털에서 개방되어 AI 학습데이터 등으로 활용되는 개방데이터의 원천 DB는 평가대상으로 필수 선정

※ (기존) 기관 자율 선정 → (변경) 개방데이터의 원천 DB는 필수 선정

○ 변별력이 낮은 예방적 **품질관리 자체진단 수행 여부**를 평가 기준에서 **제외**하고, **진단 결과 반영 여부** 중심으로 평가를 강화

※ **(폐지) 자체진단 수행**, (유지) 제안요청서 반영 여부, **(강화, 1점→2점)** 사업 이행 결과(산출물)

○ DB 품질진단 **업무규칙 개수 조정** 및 **데이터 오류율 기준 강화**

※ 업무규칙(8개→최대 20개), 데이터 오류율(0.01%→0.001%)

• • '25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3/4) • •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음

<table>
<tr><th>영역</th><th>2025년</th><th>→</th><th>2026년</th></tr>
<tr><td rowspan="3">분석·활용
(50)
↓
(53)</td><td>3-① 데이터 분석·활용 실적 및 성과(25) * 정량+정성</td><td>유지</td><td>3-① 데이터 분석·활용 실적 및 성과(25) * 정량+정성</td></tr>
<tr><td>3-② AI·데이터기반행정 리터러시 및 교육 실적(10)</td><td>유지</td><td>3-② AI·데이터 문해력(리터러시) 교육 실적(10)</td></tr>
<tr><td>3-③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노력(15) * 정량+정성
<table>
<tr><th>세부 평가항목</th><th>배점</th></tr>
<tr><td>3-③-1 데이터 분석·활용역량 진단실시(정량)</td><td>2</td></tr>
<tr><td>3-③-2 AI 도입·활용 사례 및 추진 노력(정성)</td><td>5</td></tr>
<tr><td>3-③-3 활성화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정성)</td><td>8</td></tr>
</table></td><td>조정</td><td>3-③ AI·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노력(18) * 정량+정성
<table>
<tr><th>세부 평가항목</th><th>배점</th></tr>
<tr><td>3-③-1 데이터 분석·활용역량 진단실시(정량)</td><td>2</td></tr>
<tr><td>3-③-2 AI 도입활용 사례 및 추진 노력(정성)</td><td>8</td></tr>
<tr><td>3-③-3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정성)</td><td>8</td></tr>
</table></td></tr>
<tr><td rowspan="6">공유
(45)
↓
(41)</td><td>4-① 공유데이터 구축 로드맵 수립이행 및 등록 이행률(14)
<table>
<tr><th>세부 평가항목</th><th>배점</th></tr>
<tr><td>4-①-1 공유데이터 구축 로드맵 수립 이행도(정량)</td><td>4</td></tr>
<tr><td>4-①-2 공유데이터 등록이행률(정량)</td><td>10</td></tr>
</table></td><td>폐지 및 조정</td><td>4-① 데이터 공유 실적(15)
<table>
<tr><th>세부 평가항목</th><th>배점</th></tr>
<tr><td>4-①-1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데이터 공유 실적(정량)
※ '25년 '공유데이터 등록 이행률' 지표에 해당</td><td>8</td></tr>
<tr><td>4-①-2 AI 친화적 행정문서 데이터 공유 실적(정량)</td><td>7</td></tr>
</table></td></tr>
<tr><td>4-② 공유데이터 제공 노력 및 실적(10) * 정성</td><td>조정</td><td>4-② 고가치·고활용 공유데이터 발굴 노력 및 실적(12) * 정성
※ 세부 평가기준 조정 등</td></tr>
<tr><td>4-③ 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실적(6)</td><td>조정</td><td>4-③ 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실적(6) ※ 세부 평가기준 조정</td></tr>
<tr><td>4-④ 메타데이터의 등록 및 관리(8)</td><td>유지</td><td>4-④ 메타데이터의 등록 및 관리(8)</td></tr>
<tr><td>4-⑤ AI 학습용 데이터 제공 실적(7)</td><td>폐지</td><td></td></tr>
<tr><td>4-⑥ 가명정보 제공 및 합성데이터 공유 실적가점(5)</td><td>유지</td><td>4-⑤ 가명정보 제공 및 합성데이터 공유 실적가점(5)</td></tr>
<tr><td rowspan="2">관리체계
(5)
↓
(6)</td><td>5-① 추진기반 조성(3)</td><td>조정</td><td>5-① 추진기반 조성(3)
※ 세부 평가기준 조정</td></tr>
<tr><td>5-② 기관장 추진 의지(2)</td><td>조정</td><td>5-② 기관장 추진 의지(3)</td></tr>
</table>

• • ’25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4/4) • •

1. 데이터기반행정 전체 영역

○ **지방공기업, 시도교육청**을 **A기관 유형**으로 **변경**하여 기관유형별 차등 평가

※ (A기관 유형) 중앙, 광역, 공기업·준정부, 지방공기업, 시도교육청, (B기관 유형) 기초, 기타공공기관

2. 분석·활용 영역

○ 업무 혁신, 대국민 서비스 개선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AI 도입·활용 사례 및 추진 노력’ 배점 확대 등** ※ (A기관 유형) 5점 → 8점, (B기관 유형) 5점 → 5점

3. 공유 영역

○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데이터 공유 실적’, ‘AI 친화적 행정문서 데이터 공유 실적’ 등 실 공유 실적 지표로 평가하여 **공유 내실화 도모**

※ 평가대상 기관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데이터 구축 로드맵 수립 이행도’ 지표를 제외

○ **‘고가치·고활용 공유데이터 발굴 노력 및 실적’**은 공유데이터 발굴 노력 및 실적에 대한 **배점 및 평가 방식 조정**(10점 → 12점)하여 정성평가 추진

○ ‘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실적’ 지표의 경우, **평가 기준을 정비**하고 시스템 구축 **계획** 및 **예산 확보 실적**을 **분리**하여 **평가**

※ 계획 미실행 기관 감점 도입, N/A 점수 산정 방식 변경, 구축계획 수립(4점) 및 예산확보(2점) 분리 평가

4. 관리체계 영역

○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역량 제고 및 성과 활용 방안 등을 평가 체계와 연계하기 위해 5-①-2 지표에 **‘26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제출여부’** 반영

○ 데이터기반행정 문화 조성 및 수준·역량 제고를 위한 기관장 관심·노력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기관장 추진 의지’ 지표 배점 확대**(2점 → 3점)

Ⅰ 평가 개요

1. 목적 및 근거

○ (목적) 행정·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정책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환류 체계***를 통해 **관련 정책 개선** 및 **이행력 제고**

* 평가 실시 → 평가 결과 기반의 정책 개선·보완 → 평가 체계·지표에 정책 반영

○ (법적근거)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시행령 제21조

2. 대상기관

○ 총 696개* 행정·공공기관 ※ [첨부1] 2026년 평가대상 기관

* 중앙(48), 광역(17), 기초(226), 공기업·준정부(88), 지방공기업(47), 기타공공(253), 시도교육청(17)

▪ **평가대상 기관 확대경과**

-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18년~) : '18년 287개(중앙·지자체) → '19년 520개(일부 공공기관 확대) → '20년 535개 → '21년 548개 → '22년 570개 → '23년 696개(전체 공공기관, 시도교육청 확대)
- **데이터기반행정 평가**('21년~) : '21년 288개(중앙·지자체) → '22년 467개(일부 공공기관 확대) → '23년 464개
- **평가대상 통일**('24년~) : '24년 679개 → '25년 684개

3. 평가항목

○ 5개 영역, 19개 평가지표

분야	영역	평가지표(안)
공공데이터 제공	개방·활용 (공)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및 이행, ▲AI친화·고가치 데이터 개방 노력, ▲개방데이터 이용자 지원 실적,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및 성과, ▲가명정보 제공 및 합성데이터 개방 실적(가점)
	품질 (공)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평가대상 DB관리, 예방적 품질관리, 표준·구조·연계 관리), ▲데이터 값 관리(품질진단, 오류율), ▲진단결과 조치(개선계획 수립, 개선조치 이행)
데이터기반 행정	분석·활용 (행)	▲데이터 분석·활용 실적 및 성과, ▲AI·데이터 문해력(리터러시) 교육 실적, ▲AI·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노력
	공유 (행)	▲데이터 공유 실적, ▲고가치·고활용 공유데이터 발굴 노력 및 실적, ▲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실적, ▲메타데이터의 등록 및 관리, ▲가명정보 제공 및 합성데이터 공유 실적(가점)
관리체계 (공)(행)		▲(공)(행) 추진기반 조성, ▲(공) 관련 교육 참여, ▲(행) 기관장 추진 의지

※ (공) :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 지표 / (행) :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지표

4. 수행 절차 및 일정

일정	수행내용	수행주체
평가편람 확정 (4월)	• 평가체계·지표 개편 및 **평가편람 배포**	행정안전부
⇩		
실적 등록	• 평가시스템에 **제출자료 업로드**	평가대상 기관
⇩		
평가실시(~12월)	• 전문기관(정량) 및 평가단(정성) **평가 수행** ※ 11월 중 이의신청 접수(정량지표만 해당)	평가단, 전문기관
⇩		
평가결과 공개 (~'27년 3월)	• 관련 위원회 보고 후 **등급 결과 대국민 공개**	평가단, 행정안전부

○ **(진행순서)** 실적 등록 → 평가 수행 → 이의신청 접수 → 최종점수 확정

- **(실적 등록)** 평가지표에 따라 **개별시스템**에서 실적이 **자동 집계**되거나 각 기관에서 **평가시스템***에 평가를 위한 **제출자료 업로드**

  * (인터넷) '목록등록관리시스템(all.data.go.kr)' > '기관 시스템 연계' >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 >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탭으로 이동 > 지표별 실적 등록
  (업무망)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std.sharedata.go.kr)' >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탭으로 이동 > 지표별 실적 등록

  ※ 일부 지표(개방, 공유 등)의 경우, 실적 인정기간 내 이행된 건 중 행정안전부 검토에 따른 보완을 실적 등록기간 안에 완료한 건은 실적으로 인정

- **(평가실시) 정량평가**는 **전문기관***, **정성평가**는 **평가단****이 수행

  *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 NIA /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NIA(중앙), KLID(지방)

  ** 정보통신기술(ICT), 법, 경영, 행정 등 유관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

  ※ 허위 자료, 전년도와 동일 자료 제출, 기관 보완 등에 따른 파일(보고서·증빙) 열람 불가 시 평가 불가로 해당 평가지표 '0점' 처리

- **(이의신청 접수)** 실적 집계 오류 등 평가 결과에 대한 각 기관의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평가 오류 확인 및 정정

  ※ 이의신청은 정량평가만 진행하며, 정성평가는 이의신청 불가

○ **(평가결과)** 각 기관이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100점)'와 '데이터기반행정 평가(100점)'에서 획득한 평가별 최종점수에 각각 등급 부여

※ '26년 평가는 본점수(100점)+가점(5점)으로 구성, 총 점수(105점) 기준으로 산정

- **(등급기준) 매우 우수(95점 이상 또는 전체 상위 5%), 우수(80점 이상), 보통(60점 이상), 미흡(40점 이상), 매우 미흡(40점 미만)**

  ※ 평가점수 등 평가에 필요한 수치는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

▪ (예시)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에서 88점,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 70점을 획득한 기관
→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는 **'우수'** 등급, 데이터기반행정 평가는 **'보통'** 등급

- **(결과공개) 각 평가의 등급 결과**는 관련 위원회 보고 후 **대국민 공개**

  ※ 평가 결과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 국무회의(공공데이터 限) 보고 후 대국민 공개

<참고 : "품질"영역 평가 절차 및 일정>

일정		수행내용	수행주체
평가대상 DB 선정 (~6월)		• 기관 보유DB 현행화(~5월) • 평가대상 DB 선정(~6월)	평가대상 기관
⇩			
평가 진행	기관별 자체평가 (6~10월)	• **기관별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수행** - 평가대상 DB의 오류진단 및 조치 - 평가지표에 대한 증빙자료 등록	평가대상 기관 ※ (NIA) 진단도구 제공 → (기관) 진단 수행
	상시 확인·점검 (6월~11월초)	• **기관별 자체진단·평가 결과 확인·점검** - 평가 완료된 증빙자료에 대한 확인·점검 - 기관 자체평가 및 품질관리 활동 지원 - 기관 제출자료 검토 및 개선 방향 가이드	공공데이터활용 지원센터(NIA)
⇩			
결과 확정 (~12월)		• **이의신청 접수(11월) 및 검토, 결과 확정**	품질·공유 전문위, 행정안전부

① **(DB 현행화)** 기관 보유 DB 정보(DB명, 테이블·컬럼 등)를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등 현행화(~5월)

② **(평가대상 DB선정)**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서 DB 선정기준** (보유DB의 65% 이상)에 따라 평가대상 DB 선정(~6월)

*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 기관 보유 DB 검색 가능

** 선정기준 : 기관 보유DB의 65% 이상을 선정하되, 보유DB가 19개 이하인 기관은 전체 DB, 20~31개인 기관은 20개 이상 DB를 선정, 그 외 기관은 아래표 참조

보유DB	19개 이하	20~31개	32개 이상은 65% 이상 적용	
			32~76개	77개 이상
평가대상 DB	전체	20개 이상	21~49개 이상	50개 이상

※ DB 생성 및 수정·삭제 등 변경된 DB가 있으면, 보유DB 현행화를 위해 반드시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수정해야 함

③ **(자체평가)** 각 기관은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지표에 따라 기관 자체적으로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검토·개선 조치 등 지속적으로 보완 및 평가 증빙자료를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 등록(6~10월)

④ **(확인·점검)** 각 기관 자체평가 결과(제출자료)를 상시 확인·점검(6~11월초, NIA)

⑤ **(결과 확정)** 기관별 이의신청 접수 및 검토, 최종 평가 결과 확정(~12월)

5. 2026년 개편 추진방향

◈ AI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AI·데이터 정책 방향**을 **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성과 중심의 평가 강화** 및 **지표 재정비**를 통한 평가체계 개선

□ 평가 개선 필요성

○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구현을 위해 **'AI 친화·고가치 데이터 개방'** 등 **핵심 정책 기조**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평가 체계** 마련 필요

○ 각종 증빙자료 제출 등 **행정적 노력에 비해, 실질적인** 데이터 개방·활용과 데이터기반행정 **정책 성과는 다소 미흡**

○ **정부 정책**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지표 정비 필요**

□ 개선방향

○ **(AI촉진 유도)** **'AI·고가치 TOP 100 개방'**과 **'AI Ready'** 정책을 평가에 반영하고 **'AI 도입·활용 추진 노력'**의 평가 강화로 **AI 민주정부 실현 뒷받침**

※ ① (공공데이터) TOP 100 개방 이행 여부 및 AI-Ready 관련 세부 평가 기준 마련

② (데이터기반행정) 'AI 도입·활용 사례 및 추진노력' 배점 상향 조정(5점 → 8점)

○ **(성과 평가 강화)** 민간 활용 성과 및 고가치 데이터 발굴·공유 등 **실질적 성과를 측정**하는 **'정성지표' 배점**을 **상향 조정**하여 **질적 성장 유도**

※ ①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성과'(5점 → 7점)

② (데이터기반행정) '고가치·고활용 공유데이터 발굴 노력 및 실적'(10점 → 12점) 등

○ **(지표재정비)** **중·장기적 개방계획 수립** 등 정부의 **데이터 정책 기조**에 **부합토록 지표 조정, 기관장 추진 의지 평가 강화**

※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이행**'(10점→12점), '**기관장 추진 의지**'(2점→3점)

6. 평가지표의 구성

○ 개방·활용, 품질, 분석·활용, 공유, 관리체계 5개 영역 및 19개 지표

※ (공) :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 지표 / (행) :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지표

분야	영역 (200) *가점 제외	평가지표		기관 유형						
		지표명	방식	중앙	광역	기초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기타 공공기관	시도교육청
공공데이터 제공	1. 개방·활용 (50)	1-①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및 이행(12) (공)	정량	12	12	16	12	12	16	12
		1-② AI 친화·고가치 데이터 개방 노력(10) (공)	정성	10	10	8	10	10	8	10
		1-③ 개방데이터 이용자 지원 실적(6) (공) ※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미수행(감점/건당 -1점), 심의·조정위원회 권고 불수용(감점/건당 -1점) 포함	정량	6	6	6	6	6	6	6
		1-④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및 성과(22) (공)	정량 정성	22	22	20	22	22	20	22
		1-⑤ 가명정보 제공 및 합성데이터 개방 실적가점(5)		5 (건당 1점)						
	2. 품질 (45)	2-①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17) (공)	정량	17	17	17	17	17	17	17
		2-② 데이터 값 관리(18) (공)	정량	18	18	18	18	18	18	18
		2-③ 진단결과 조치(10) (공)	정량	10	10	10	10	10	10	10
데이터 기반 행정	3. 분석·활용 (53)	3-① 데이터 분석·활용 실적 및 성과(25) (행)	정량	10	10	15	10	10	15	10
			정성	15	15	10	15	15	10	15
		3-② AI·데이터 문해력(리터러시) 교육 실적(10) (행)	정량	10	10	12	10	10	12	10
		3-③ AI·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노력(18) (행)	정성	18	18	15	18	18	15	18
	4. 공유 (41)	4-① 데이터 공유 실적(15) (행)	정량	15	15	15	15	15	15	15
		4-② 고가치·고활용 공유데이터 발굴 노력 및 실적(12) (행)	정성	12	12	8	12	12	8	12
		4-③ 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실적(6) (행)	정량	6	6	6	6	6	6	6
		4-④ 메타데이터의 등록 및 관리(8) (행)	정량	8	8	10	8	8	10	8
		4-⑤ 가명정보 제공 및 합성데이터 공유 실적가점(5) (행)	정량	5 (건당 1점)						
공통	5. 관리체계 ((공5)/(행6))	5-① 추진기반 조성(3) (공)	정량	3	3	3	3	3	3	3
		(행)		3	3	6	3	3	6	3
		5-②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교육 참여(2) (공)	정량	2	2	2	2	2	2	2
		5-② 기관장 추진 의지(3) (행)	정량	3	3	3	3	3	3	3

※ (공) Ⓐ기관 : 중앙, 광역, 공기업·준정부, 지방공기업, 시도교육청 / Ⓑ기관 : 기초, 기타공공기관

※ (행) Ⓐ기관 : 중앙, 광역, 공기업·준정부, 지방공기업, 시도교육청 / Ⓑ기관 : 기초, 기타공공기관

7. 평가결과의 활용

○ **평가결과 공표**

- **'공공데이터 제공'**의 기관별 평가 등급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 국무회의 보고 후, '데이터기반행정'**의 기관별 평가 등급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심의 후 대국민 공개**

- 각 기관에서 제출한 **실적 및 증빙** 내용은 **보도자료** 배포, **우수사례집** 발간 등 **대외자료에 인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적·성과를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 및 제출**

○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표창**(대통령·국무총리·장관) **수여** 예정

※ 표창 규모는 유관부서와 협의 예정('27.上)

-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미수행'** 및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 권고 불수용'** 기관은 점수와 관계없이 **수여기관에서 제외**

○ 행정·공공기관 대상 **각종 평가지표**에 **평가 결과 반영 협의중**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데이터기반행정 평가'의 **일부 지표***를 **정부·지자체 혁신평가**에 **반영**

  * (협의중) '1-② AI 친화·고가치 데이터 개방 노력', '1-④-2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성과', '3-①-2 분석 결과의 정책 활용 노력 및 성과', '3-③-3 AI·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

- **(공기업·준정부기관)**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데이터기반행정 평가'의 **전체 점수**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 **(지방공기업)**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데이터기반행정 평가' 결과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

Ⅱ 평가지표 세부내용

1. 개방 · 활용 영역

< 평가목적 >

공공데이터 저변확대를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개방 관리 노력 수준을 평가

지표구성		배점							방식
		중앙	광역	기초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기타공공기관	시도교육청	
①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및 이행		**12**	**12**	**16**	**12**	**12**	**16**	**12**	-
중장기 개방계획 **제출기관**	①-1 '26년 개방계획 이행	5	5	8	5	5	8	5	정량
	①-2 '27년 개방계획 조기 이행 및 '27~'29년 개방계획 수립	7	7	8	7	7	8	7	
중장기 개방계획 **미제출/신규기관**	①-3 '27~'29년 중장기 개방계획 수립	5	5	8	5	5	8	5	
	①-4 '27년 개방계획 조기 이행	7	7	8	7	7	8	7	
② AI친화·고가치 데이터 개방 노력		**10**	**10**	**8**	**10**	**10**	**8**	**10**	정성
③ 개방데이터 이용자 지원 실적		**6**	**6**	**6**	**6**	**6**	**6**	**6**	-
③-1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적기 처리율		2	2	2	2	2	2	2	정량
③-2 공공데이터 제공 주기 준수율		3	3	3	3	3	3	3	
③-3 공공데이터 오류신고 적기 처리율		1	1	1	1	1	1	1	
③-4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미수행 **(감점)**		-							
③-5 공공데이터 심의·조정위원회 권고 불수용 **(감점)**		-							
④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및 성과		**22**	**22**	**20**	**22**	**22**	**20**	**22**	-
④-1 활용성 진단 서비스 기준값 달성도		5	5	5	5	5	5	5	정량
④-2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성과		7	7	5	7	7	5	7	정성
④-3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10	10	10	10	10	10	10	정량 정성
⑤ 가명정보 제공 및 합성데이터 개방 실적 (가점)		-							정량

※ Ⓐ**기관 :** 중앙, 광역, 공기업·준정부, 지방공기업, 시도교육청 / Ⓑ**기관 :** 기초, 기타공공기관

○ 「1-①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및 이행」 지표

지표 정의	미개방 테이블의 개방을 위한 '27~'29년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여부 및 개방 이행 정도 평가 ※ 중장기 개방계획 **제출기관은** 1-①-**1, 2**, **미제출/신규 평가대상 기관은** 1-①-**3, 4** 적용		
배점	**A기관 : 12점 / B기관 : 16점**	**방식**	**정량**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서 집계)
담당자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과 **이지영 연구관(044-205-2470)**, NIA **이유리 선임(053-230-1568)**		

[중장기 개방계획 제출기관 적용]

1-①-1. '26년 개방계획 이행 ([A기관] 5점 / [B기관] 8점)

[평가방법]

[계산식]

$$\frac{\text{'26년 개방이행 테이블 수}^{1)}}{\text{'26~'28년 중장기 개방계획의 '26년 개방계획 테이블 수}^{2)}} \times 100(\%)$$

1) '26년에 신규로 개방한 테이블 수
2) '25년 기관이 목록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26~'28년 중장기 개방계획의 '26년 개방계획 테이블 수

[평가기준]

■ **'26~'28년 중장기 개방계획('25년 목록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한 기관 제출)**의 **'26년 개방계획 대비 이행률** 평가

- '개방계획 이행률'은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 완료하고, 목록등록관리시스템의 '개방계획 수립/이행' 메뉴에 9월 30일까지 등록·승인이 완료된 URL로 이행 실적 확인*

* 단, 9월 20일까지 공공데이터 개방이행 결과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이후 행정안전부의 개방 검토결과 품질 문제 등으로 반려(포털 개방검토 미통과)된 경우, 1회에 한해 수정(검토결과 통보 후 7일(휴일포함) 이내)하여 재신청할 수 있고, 재신청 결과 통과하지 못한 경우 '개방 미이행'으로 간주

[점수산정]

구 분		배 점	
		A기관	B기관
'26~'28년 중장기 개방계획의 **'26년 계획 대비 개방이행률**	100% 이상	**5점**	**8점**
	80% 이상 100% 미만	**4점**	**6.5점**
	60% 이상 80% 미만	**3점**	**5점**
	40% 이상 60% 미만	**2점**	**3.5점**
	0% 초과 40% 미만	**1점**	**2점**
	0% (개방 이행 없음)	**0점**	**0점**

[제출방법] 목록등록관리시스템 자료 집계로, **별도 자료 제출 불필요**

[참고사항]

■ **'26년 개방계획은 '25년에 수립한 '26~'28년 중장기 개방계획 중 '26년 계획임**

■ 기관은 **당해연도 현행화된 메타데이터 전체**에 대해 **다음 3년 동안의 개방계획**을 목록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매년 제출해야 함**

■ 개방목록 및 개방계획 등록, 목록 작성 방법 등 상세한 내용은 **'2026년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 및 활용 실무가이드'**(별도 안내예정) 참조

■ '26년 개방계획이 0건인 경우, '26년 개방계획을 재수립하고, 개방을 이행하여야 점수 획득 가능
※ '25년에 조기 이행된 '26년 개방계획은 본 지표 점수에 반영하지 않음

■ **[N/A처리]** 행안부 및 사업단 협의 결과 제외대상 기관(개방가능한 테이블이 없는 경우 등)
→ A·B기관별 평균점수로 처리

1-①-2. '27년 개방계획 조기 이행 및 '27~'29년 개방계획 수립 ([A기관] 7점 / [B기관] 8점)

[평가방법]

[계산식]

■ 기준1. '27년 계획 대비 조기 이행

$$\frac{\text{'26년 조기개방 이행 테이블 수}^{1)}}{\text{'26~'28년 중장기 개방계획의 '27년 개방계획 테이블 수}^{2)}} \times 100(\%)$$

1) '26년에 신규로 개방한 조기개방 테이블 수

2) '25년 기관이 목록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26~'28년 중장기 개방계획의 '27년 개방계획 테이블 수

■ 기준2. '27~'29년 개방계획 수립

$$\frac{\text{'27~'29년 개방계획 검토완료 테이블 수}^{1)}}{\text{기관의 목록등록관리시스템 검토대상 테이블 수}^{2)}} \times 100(\%)$$

1) 테이블 단위 개방여부 검토 후 개방목록 구성 단계*를 완료한 테이블 수

* 개방목록 구성 단계의 완료는 시스템 단위로 함

2) 메타관리시스템에 등록('26.3.31. 기준)된 전체 테이블을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기관의 검토대상 테이블로 6월초까지 업로드할 예정이며, 기관의 검토대상 테이블은 목록등록관리시스템의 '개방계획 수립/이행>2.개방대상 선정>개방대상 테이블 관리' 메뉴에서 확인 가능

[평가기준]

■ 평가배점

기준	내용	배 점	
		A기관	B기관
1	'27년 계획 대비 조기 이행	**5점**	**5점**
2	'27~'29년 개방계획 수립	**2점**	**3점**

■ 기준1. '26~'28년 중장기 개방계획의 '27년 계획 대비 조기 이행

- '조기 이행'은 '25년 기관에서 목록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26~'28년 중장기 개방계획의 '27년 계획 대비 조기 이행이 완료된 비율임
-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 완료하고, 목록등록관리시스템의 '개방계획 수립/이행' 메뉴에 **9월 30일**까지 등록·승인이 완료된 URL로 이행 실적 확인*

* 단, 9월 20일까지 공공데이터 개방이행 결과등록 신청은 완료하였으나, 이후 행정안전부의 개방 검토결과 품질 문제 등으로 반려(포털 개방검토 미통과)된 경우, 1회에 한해 수정(검토결과 통보 후 7일(휴일포함) 이내)하여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하지 못한 경우 개방 미이행으로 간주

■ 기준2. ①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현행화된 전체 테이블에 대한 **개방여부 검토 정도와 ② '27~'29년 중장기 개방계획 제출 여부**

- 기관별 '27~'29년 개방계획은 목록등록관리시스템의 '메타기반 개방계획 수립/이행' 메뉴에서 개방계획 및 목록구성이 **9월 30일까지** 등록·승인 완료된 건을 실적으로 인정

■ 점수산정

- **기준1. '27년 계획 대비 조기 이행**

구 분		배 점	
		A기관	B기관
'26~'28년 중장기 개방계획의 '27년 계획 대비 조기이행	50% 이상 조기 개방 이행	**5점**	**5점**
	30% 이상 50% 미만 조기 개방 이행	**2.5점**	**3점**
	0% 초과 30% 미만 조기 개방 이행	**1점**	**1.5점**
	조기 개방 미이행(0%)	**0점**	**0점**

- **기준2. '27~'29년 개방계획 수립**

구 분		배 점	
		A기관	B기관
목록등록관리시스템 검토대상 테이블의 '27~'29년 중장기 개방계획 수립	80% 이상 100% 이하 수립	**2점**	**3점**
	60% 이상 80% 미만 수립	**1.5점**	**2점**
	50% 이상 60% 미만 수립	**1점**	**1점**
	0% 초과 50% 미만 수립	**0.5점**	**0.5점**
	중장기 개방계획 미수립	**-0.5점**	**-0.5점**
'27~'29년 개방계획 중 '27년과 '28년 개방계획(테이블 기준) 검토 비율이 전체 대비 각 30% 미만		**-0.5점**	**-0.5점**

[제출방법] 목록등록관리시스템 자료 집계로, **별도 자료제출 불필요**

[참고사항]

■ **'조기 이행률'**은 '25년에 수립한 중장기 개방계획('26~'28)의 '27년 계획 건수 대비 '26년에 조기 개방한 '27년 개방예정 테이블의 건수를 산정(단, '25년에 수립한 '27년 개방계획이 0건인 경우 '27년 개방계획을 재수립하고, 개방을 이행하여야 점수 획득 가능)

■ 개방목록 및 개방계획 등록, 목록 작성 방법 등 상세한 내용은 **'2026년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 및 활용 실무가이드'**(별도 안내예정) 참조

■ 모든 기관은 '27~'29년 개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검토 대상 데이터가 있음에도 개방 계획을 검토하지 않거나 마지막 연도에 개방계획이 집중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 감점 도입

- 다만, '28년 계획을 '27년 개방계획에 집중하는 경우 등은 감점 대상이 아님

■ **[N/A 처리]** 행안부 및 사업단 협의 결과 제외대상 기관(개방가능한 테이블이 없는 경우 등)

→ **A·B기관별 평균점수로 처리**

[중장기 개방계획 미제출 또는 신규 평가대상 기관 적용]

1-①-3. '27~'29년 중장기 개방계획 수립 ([A기관] 5점 / [B기관] 8점)

[평가방법]

[계산식]

$$\frac{\text{'27~'29년 개방계획 검토완료 테이블 수}^{1)}}{\text{기관의 목록등록관리시스템 검토대상 테이블 수}^{2)}} \times 100(\%)$$

1) 테이블 단위 개방여부 검토 후 개방목록 구성 단계*를 완료한 테이블 수

* 개방목록 구성 단계의 완료는 시스템 단위로 함

2) 메타관리시스템에 등록('26.3.31. 기준)된 전체 테이블을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기관의 검토대상 테이블로 6월초까지 업로드할 예정이며, 기관의 검토대상 테이블은 목록등록관리시스템의 '개방계획 수립/이행>2. 개방대상 선정>개방대상 테이블 관리' 메뉴에서 확인 가능

[평가기준]

■ ①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체 테이블***에 대한 **개방여부 검토 정도와** ② **'27~'29년 중장기 개방계획 제출 여부**

- 기관별 '27~'29년 개방계획은 목록등록관리시스템의 '메타기반 개방계획 수립/이행' 메뉴에서 개방계획 및 목록 구성이 **9월 30일까지** 등록·승인 완료된 건을 실적으로 인정*

* 중장기 개방계획에 따라 메타관리시스템에 등록('26.3.31일 기준)된 전체 테이블을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6월 초 업로드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설명회 개최 예정

- '27~'29년 개방계획 중 '27년과 '28년 개방계획은 전체 대비 각 30% 이상 설정 준수(감점 요인)

■ **점수산정**

구 분		배 점	
		A기관	B기관
목록등록관리시스템 검토대상 테이블의 '27~'29년 중장기 개방계획 수립	80% 이상 100% 이하 수립	**5점**	**8점**
	60% 이상 80% 미만 수립	**4점**	**6점**
	50% 이상 60% 미만 수립	**3점**	**4점**
	0% 초과 50% 미만 수립	**2점**	**2점**
	중장기 개방계획 미수립	**0점**	**0점**
'27~'29년 개방계획 중 '27년과 '28년 개방계획(테이블 기준) 비율이 전체 대비 각 30% 미만		**-1점**	**-1점**

[제출방법] 목록등록관리시스템 자료 집계로, **별도 자료제출 불필요**

[참고사항]

■ 개방목록 및 개방계획 등록, 목록 작성 방법 등 상세한 내용은 **'2026년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 및 활용 실무가이드'**(별도 안내예정) 참조

■ **[만점 사례]**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현행화된 테이블 기준으로 기관의 검토대상 테이블에 대한 '27~'29년 개방계획(테이블 선정, 목록 구성)의 제출 및 등록·승인이 9월 30일까지 완료되었고, 이와 함께 목록등록관리시스템 개방 대상 테이블의 개방계획을 100% 검토한 경우

■ **[0점 사례]** 9월 30일까지 '27~'29년 공공데이터 개방계획(테이블 선정, 목록 구성)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 **[N/A 처리]** 행안부 및 사업단 협의 결과 제외대상 기관(개방가능한 테이블이 없는 경우 등)
→ **A·B기관별 평균점수로 처리**

1-①-4. '27년 개방계획 조기 이행 ([A기관] 7점 / [B기관] 8점)

[평가방법]

[계산식]

$$\frac{\text{'26년 조기개방 이행 테이블 수}^{1)}}{\text{'27~'29년 중장기 개방계획의 '27년 개방계획 목표 테이블 수}^{3)}} \times 100(\%)$$

1) '26년에 신규로 개방한 조기개방 테이블 수

2) '26년 기관이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27~'29년 중장기 개방계획으로 등록한 테이블 중 '27년 개방 목표 테이블 수

[평가기준]

■ '27~'29년 개방계획 중 **'27년 계획 대비 조기 이행**

- '조기 이행률'은 '26년 기관에서 목록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27~'29년 중장기 개방계획의 '27년 계획 대비 조기 이행 비율로서,
-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 완료하고, 목록등록관리시스템의 '개방계획 수립/이행' 메뉴에 **9월 30일까지** 등록·승인이 완료된 URL로 이행 실적 확인*

* 단, 9월 20일까지 공공데이터 개방이행 결과등록 신청은 완료하였으나, 이후 행정안전부의 개방 검토결과 품질 문제 등으로 반려(포털 개방검토 미통과)된 경우, 1회에 한해 수정(검토결과 통보 후 7일(휴일포함) 이내)하여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하지 못한 경우 개방 미이행으로 간주

■ **점수산정**

구 분		배 점	
		A기관	B기관
'27~'29년 중장기 개방계획의 '27년 계획 대비 조기이행	50% 이상 조기 개방 이행	**7점**	**8점**
	30% 이상 50% 미만 조기 개방 이행	**3.5점**	**4점**
	0% 초과 30% 미만 조기 개방 이행	**1점**	**2점**
	조기 개방 미이행	**0점**	**0점**

[제출방법] 목록등록관리시스템 자료 집계로, **별도 자료제출 불필요**

[참고사항]

■ 개방목록 및 개방계획 등록, 목록 작성 방법 등 상세한 내용은 **'2026년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 및 활용 실무가이드'**(별도 안내예정) 참조

■ **[N/A 처리]** 행안부 및 사업단 협의 결과 제외대상 기관(개방가능한 테이블이 없는 경우 등)

→ **A·B기관별 평균점수로 처리**

○ 「1-② AI 친화·고가치 데이터 개방 노력」 지표

지표 정의	국민·기업의 활용 수요가 높고, AI 시대 대응 및 사회문제 해결에 의미가 큰 기관의 핵심 고가치 데이터 개방 노력을 평가		
배점	**A기관 : 10점 / B기관 : 8점**	**방식**	**정성**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 제출)
담당자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과 **황경진 서기관(044-205-2472), 구창규 주무관(044-205-2469)**, NIA **이유리 선임(053-230-1568)**		

[평가방법]

[평가기준]

■ 설문조사·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한 **민간의 공공데이터 개방 수요가 높고, AI 학습 등에 용이***하거나,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데이터 개방을 위한 노력과 실적을 정성적으로 평가

* AI 학습 등에 활용이 편리한 데이터로, 품질, 데이터 규모 등 최소한의 기준 충족 필요

** 저출산·고령화, 재난·안전, 의료문제, 환경오염, 디지털 격차 등의 지역·사회 현안

① **실적 인정기간 내** 기관에서 **AI친화·고가치 데이터**를 **개방한 실적**을 제시

② 기관이 보유한 **AI 친화·고가치 데이터 중 미개방 데이터에 대한 개방계획**을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제시('26년 10월 이후 **개방 예정인 목록** 제출)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개방계획이 있는 경우 명시

③ **실적 인정기간 내** 기관에서 개방한 AI친화·고가치 데이터 **대표사례 1건**에 대한 **고수요·고가치성, AI 친화성, 활용성** 등을 제시(**대표사례 상세 설명서(첨부2-3)** 제출)

※ AI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및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에 해당되는 데이터 개방 실적 제출 시 고득점 부여 (대용량 데이터일 경우 개별 포털 업로드 후 공공데이터포털에 링크 등록)

④ AI 친화·고가치 데이터 대표사례(**③번 제출 사례**)에 대해, '인공지능 친화적(AI-Ready) 공공데이터 평가용 체크리스트'(**첨부2-4**) 점검 결과를 제출

[실적 인정기간] '25.11.15.~'26.9.30.

※ '25년 TOP100 개방데이터 10종은 '26년 평가 실적에 포함됨.

※ 기관 보유 AI친화·고가치 데이터 중 미개방 데이터의 개방계획 목록('26년 10월 이후) 작성 필요

[제출방법]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 아래 자료 제출(**[첨부2]** 작성양식 참고)

① AI 친화·고가치 데이터 개방 노력 보고서(**[첨부2]** 작성양식 작성, PDF 파일로 제출)

② 증빙자료 : 보고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공식 결재 및 보고 문서, 사진 등) 일체(하나의 PDF 형태로 제출)

[참고사항]

[실적 불인정 사례]

■ 공식적인 문서(공문, 보고, 결재 등) 및 임의 수정이 안 되는 자료(캡쳐 등) 증빙이 아닌 경우

■ 보고서 작성 없이 증빙자료만 제출하는 경우

■ 평가기준③ 대표 사례의 경우, 양식에 작성한 URL을 통해 개방데이터 확인이 불가한 경우

※ 기개방 데이터 업데이트 또는 보완·수정·현행화는 실적기간 내 신규 개방데이터로 인정되지 않음

■ 평가기준③ 대표 사례의 데이터 개방 시점이 실적 인정기간('25.11.15.~'26.9.30.)을 벗어난 경우

※ 기간 내 포털 개방 검토가 완료되어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실적데이터 확인이 가능해야 함

[추가 안내사항]

■ AI친화·고가치 데이터 **대표사례는 1건만 제출**(1건 이상 제출 시 첫 번째 사례만 평가)

■ 보고서 양식 임의 조정 불가

■ 첨부 양식 내 'AI 친화성'을 제외한 모든 항목은 반드시 필수로 작성하여야 하며, 일부 누락 시 점수 차감 혹은 실적 미인정

※ AI 친화성은 비필수 항목으로 해당 기관만 작성(증빙 첨부 필요)

['25년 사례](※ 아래 내용은 다양한 사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점 사례는 아님)

하천범람지도 및 도시침수지도	
데이터 개요	- 하천 범람 결과를 5단계 유역별, 빈도별로 분류한 하천범람·도시침수 지도 데이터 * 하천 범람에 의한 침수예상지역, 피해범위, 예상 침수깊이 등 표시한 지도
고수요·고가치성	-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 증가로 홍수 대응 중요도 확대 - ①신속한 대처를 위한 위험 예측 및 관련 비즈니스 개발과 ②홍수 예방을 위한 관리 구역 설정, 풍수해보험, 토지이용 규제 등 정책 수립에 활용 가능
AI친화성	- 전국 단위의 하천범람지도 및 도시침수지도 오픈API로 실시간 제공, 품질 검증(데이터 수치, 구조·정부 표준 준수 여부 등) 및 공간파일 진단 관리를 통한 데이터 신뢰성 확보, 일관성 있는 데이터 품질 관리를 위해 단어·용어 표준화
활용성	- 침수 예측 정보 기반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및 정책 의사결정 지원(침수가뭄급경사 정보시스템, 통계지리정보서비스 등) - 하천정비, 홍수위험 예측, 내비게이션 서비스 등 민간·연구 분야 활용

교통카드이용 재현데이터	
데이터 개요	실제 교통카드 이용 정보를 기반으로, 익명화·통계적 변형 과정을 통해 생성된 합성데이터
고수요·고가치성	- 국민 이동패턴 분석의 핵심 데이터로 민간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은 교통 분야 데이터 - 교통 수요 분석, 혼잡 관리, 도시계획, MaaS 등 교통 정책 수립 및 민간 서비스 개발에 활용 가능
AI친화성	- 승·하차 일시 및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시계열·공간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 - 실제 교통카드 이용정보를 기반으로 생성된 데이터로 신뢰성 및 데이터 품질 확보 - 비식별화 처리 및 표준화된 구조로 제공되어 AI 학습 및 데이터 연계 활용 용이
활용성	- 교통 혼잡 관리, 배차 간격 조정, 정류장 설치 등 교통 정책 의사결정 지원 - 교통 수요 예측, 이동 패턴 분석 기반 서비스 개발 및 모빌리티 서비스 고도화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데이터	
데이터 개요	-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신고·승인되는 생활화학제품 관련 데이터로, 국내 및 해외 직수입 제품 정보(목록, 제품이미지, 농약정보, 함유성분정보목록, 위반제품상세 등)
고수요·고가치성	- 공모전 참가자, 국민,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대상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수요 데이터 분석 및 정부 정책 등 종합분석을 기반으로 데이터 발굴 - ①위험 제품 식별 및 정보 제공 서비스 개발과 ②위반제품 관리, 제품 승인·신고, 유해물질 관리 등 정책 수립에 활용 가능
AI친화성	- 2010년부터 현재까지 축적된 54만개 제품 상세정보를 오픈API로 실시간 제공하는 시계열·대규모 데이터 - 전국 단위 신고·승인 기반 데이터로 신뢰성 및 완결성 확보
활용성	- 위반제품·유해물질 정보 제공을 통한 위해 제품 유통 차단 및 사고 예방 - 제품성분 정보 기반 소비자 선택 지원 및 위험도 분석, 제품 정보 제공 등 AI 서비스 개발 활용

일별 농수축산물 도소매가격 데이터	
데이터 개요	- 국내 농수축산물의 도매, 소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일자별 도・소매 가격조사 데이터
고수요·고가치성	- ①기관 데이터 활용 민간기업 대상 데이터 활용도 심층 인터뷰, ②기관 공공데이터 이용자(18백여명) 대상 개방 후보 데이터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방데이터 선정 - 가격 예측, 수급 분석, 식재료 추천 등 다양한 AI 서비스 개발과 농산물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화 정책 수립에 활용 가능
AI친화성	- 1996년부터 약 30년간 축적된 일별 도·소매 가격정보를 기반으로 한 시계열 데이터 - 전국 단위 도·소매 가격정보를 공식 조사·검증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로 신뢰성 확보 - 표준화된 코드 및 오픈포맷 형태로 제공되어 AI 학습 및 활용 용이
활용성	- 가격 급등락 정보 제공을 통한 외식업주 식재료 구매 의사결정 지원 및 비용 절감 - 가격 예측 및 수급 불균형 분석을 통한 농산물 가격 안정화 및 정책 지원 - 맞춤형 식단 추천, 가격 기반 서비스 등 AI 활용 서비스 개발 및 유통시장 효율화

참고 분야별 AI친화 · 고가치 데이터 예시

분 야	데이터명
국토관리	도시재생구역, 도시계획, 부동산, 위성/항공/드론 데이터, 건축도면, 입지분석, 주택공급 등
교통물류	교통사고 상세정보, 물류시설, 수출입통관, 교통약자 시설정보, 자율주행, 철도교통망, 해상운송망, 교통카드 이용 내역, 전국 지하철 이용패턴 등
환경기상	탄소배출 데이터, 폐기물 처리정보, 신재생 에너지 발전 현황, 실시간 일사량 등
산업고용	사업자 등록정보, 고용 및 기업 정보, 산업기술 정보, 고용·노동 보험 등
보건의료	의료영상, 질환별 통계, 반려동물 의료데이터, 의약품, 한의학, 치매검진, 정신건강 상담 등
농축수산	농업방역, 축산농가현황, 수산물 유통·양식, 농작물 병해충, 농산물 유통 등
식품건강	건강기능식품 정보, 음식 사진, 레시피DB, 식품원재료, 의료기기 등
공공행정	인구통계, 선거데이터, 공문서(회의록), 주소정보, 업종별 인허가 정보 국내·외 공공 정책정보 등
과학기술	3D지도데이터, 드론비행, 로봇, R&D, 국가과학기술 연구 정보 등
재난안전	인구 밀집 지역 CCTV, 실시간 지진 예측 정보, 비상사태 및 재난 구호 관련 정보, 계곡 유량, 화학물질 안전 정보, 화재 대응 등
문화관광	국악, 대중음악 등 음성·음악 데이터, 문화재 3D데이터, 관광이미지·동영상 등
사회복지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 저출산·고령화 대책, 아이돌봄 지원, 영유아·아동·청소년 생애주기 정보 등
교 육	학교 및 학원 분포, 교육사업, 교육 수준 및 역량 통계, 전국 학사 운영 등
법 률	저작권 분쟁 사례, 법령해석, 재결례, 법조문 판례, 의결서 등
재정금융	정부 세부 지출, 주식정보, 신용정보, 국가보조금, 지역사랑 상품권 등
통일외교안보	방위사업, 북한정보, 병역현황, 보훈데이터, 여권 정보 등

○ 「1-③ 개방데이터 이용자 지원 실적」 지표

지표 정의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개방된 기관의 데이터 관련하여 대국민의 이용 편의를 위한 지원 노력 및 공공데이터 관련 정부 권고 이행 여부를 평가		
배점	**6점**	**방식**	**정량** ('목록등록관리시스템' 및 행안부 보유자료 집계)
담당자	**(기준①~③)**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과 **김규한 주무관(044-205-2473)**, NIA **윤소윤 주임(053-230-1550)** **(기준④)** 행안부 디지털인프라혁신과 **이우창 사무관(044-205-2866)**, NIA **백동엽 책임(053-230-1510)** **(기준⑤)**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과 **문지환 사무관(044-205-2463)**, NIA **채은선 수석(02-6191-2063)**		

[세부기준]

번호	평가항목	배점	방식	제출방법
1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적기 처리율	2점	정량	목록등록관리시스템 및 행안부 자료 집계로 **별도 자료제출 불필요**
2	공공데이터 제공 주기 준수율	3점		
3	공공데이터 오류신고 적기 처리율	1점		
4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미수행	(감점)		
5	공공데이터 심의·조정 위원회 권고 불수용	(감점)		

[1-③-1]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적기 처리율(배점 2점)

계산식

$$\left\{\frac{\text{기한내 신청처리건수}}{\text{특정기간내 신청접수건수}}+\left(\frac{\text{기한초과후 신청처리건수}}{\text{특정기간내 신청접수건수}}\times 0.3\right)\right\}\times 100(\%)$$

평가기준

- **처리기한** : 기관의 제공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연장 시 최대 20일 이내)
- **실적기간** : '25.10.1.~'26.9.30.
- **신청 처리 기준** : 처리완료에 해당하는 "제공", "제공불가", "보완필요"인 경우

점수산정

구 분	점 수
공공데이터포털 내 데이터 제공신청 적기처리율이 90% 이상	2점
공공데이터포털 내 데이터 제공신청 적기처리율이 80% 이상	1.5점
공공데이터포털 내 데이터 제공신청 적기처리율이 70% 이상	1점
공공데이터포털 내 데이터 제공신청 적기처리율이 60% 이상	0.5점
공공데이터포털 내 데이터 제공신청 적기처리율이 60% 미만	0점

※ **N/A 처리 :** '25.10.1.~'26.9.30. 기간 중 제공신청이 0건인 경우 **(만점처리)**

실적 확인 방법

- **신청관리 > (신)데이터 제공 신청 > (조건 설정* 후) 검색**

* **(설정조건)** 기간 : 제공신청; **'25.10.1.~'26.9.30**, 제공방법 : **전체**, 처리상태 : **전체**

※ 소속기관 실적은 '소속기관 처리 현황 열람' 탭에서 확인, '제공신청 취소'는 평가실적에서 모수제외

- 위 조건으로 검색한 결과 중 "처리일자"가 "처리기한" 이내인 경우 적기 처리로 판단

[1-③-2] 공공데이터 제공 주기 준수율(배점 3점)

계산식

$$\frac{\text{차기등록예정일이 '26년 9월 30일 이후인 목록수(파일, 표준데이터셋)}}{\text{포털에 개방중이거나 개방검토요청한 전체목록수(파일, 표준데이터셋)}} \times 100(\%)$$

평가기준

■ **평가대상 :** ①'26.9.30.에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 중이거나,
②'26.9.30. 이전에 등록·변경 개방검토를 요청한 데이터

※ 링크데이터, 오픈API, 1회성 수시데이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실적인정 :** '26.10.31.까지 개방이 완료되고, 차기등록예정일이 '26.9.30. 이후인 경우

※ 데이터 내용의 최신화 없이 의도적으로 파일명만 변경·등록하거나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목적으로 주기성 데이터를 1회성 수시 데이터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0점 처리

점수산정

구 분	점 수
목록의 제공 주기 준수율이 90% 이상	3점
목록의 제공 주기 준수율이 75% 이상	2점
목록의 제공 주기 준수율이 60% 이상	1점
개방하는 모든 파일데이터의 제공주기를 정의하고 있지 않거나 목록의 제공 주기 준수율이 60% 미만	0점

※ **N/A 처리 :** '13.1.1.~'26.9.30. 내에 개방데이터(파일, 표준데이터셋)가 0개인 경우
→ **A·B기관별 평균점수로 처리**

실적 확인 방법

1. 파일데이터(목록 단위) : 통계조회 > 개방목록 현황 조회 > (조건 설정 후) 검색
※ **(설정조건) 조회기간 : '13.1.1.~'26.9.30, 제공주기준수 확인 : 체크**(체크시 링크데이터, 1회성데이터 등 제외)
※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 실적 포함을 위해 **'하위기관 포함' 체크**

2. 표준데이터셋(데이터 단위) : 통계조회 > 개방데이터 현황조회 > (조건 설정 후) 검색
※ **(설정조건) 조회기간 : '13.1.1.~'26.9.30, 표준데이터셋 여부 : "예" 선택**
※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 실적 포함을 위해 **'하위기관 포함' 체크**

- 위 조건으로 검색한 결과 중 '차기등록예정일'이 '26.9.30. 이후인 데이터는 제공 주기가 준수된 것으로 판단

[1-③-3] 공공데이터 오류신고 적기 처리율(배점 1점)

계산식	$\frac{\text{신고처리기한(영업일기준10일이내)내처리된오류신고및문의건수}}{\text{기준기간내신고접수된오류신고및문의건수}} \times 100(\%)$
평가기준	■ **평가대상 :** 기준기간('25.10.1.~'26.9.30.) 내 접수된 데이터 오류신고 및 문의 건 ※ 오류신고, 오픈API활용문의 등 모든 유형의 문의가 해당되며, '접수취소'는 대상에서 제외 ■ **실적인정 :** 오류신고·문의 등록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처리된 경우, 기한 내 처리로 인정
점수산정	**구 분** / **점 수** 공공데이터포털 내 데이터 오류신고·문의 적기처리율이 80% 이상 / 1점 공공데이터포털 내 데이터 오류신고·문의 적기처리율이 60% 이상 / 0.5점 공공데이터포털 내 데이터 오류신고·문의 적기처리율이 40% 이상 / 0점 공공데이터포털 내 데이터 오류신고·문의 적기처리율이 40% 미만 / -0.5점 ※ **N/A 처리 :** 기준기간 내 오류신고 및 문의건수가 0인 경우 **(만점처리)**
실적 확인 방법	■ **신청관리 > 오류신고, 문의 및 개선요청** > (조건 설정 후) 검색 ※ **(설정조건)** 검색기간 : **신고일자;'25.10.1.~'26.9.30.**, 데이터요청·데이터유형·처리상태 : **전체** ※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 실적 포함을 위해 **'하위기관 포함' 체크** - 위 조건으로 검색한 결과 중 "처리일자"가 "처리기한일자" 이내인 경우 적기 처리로 판단

[1-③-4]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미수행(-1점/건)

평가방법	■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대상 중 미수행 서비스당 1점씩 감점
평가대상	■ '26년 신규 정비 권고 및 '17~'25년 재권고 대상(앱서비스)
참고사항	■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나 정비를 하지 않겠다고 계획을 제출한 경우는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 단, 연속으로 정비 미이행시, 감점 누적 적용('25년부터 누적 감점, ㉮ '26년(–2점), '27년(–3점) ■ '26년 신규 권고 대상기관 중 정비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정비 미수행 기관에서 제외 * 서비스 폐지, 중복기능 제거, 고도화 중지, 기술이전, 상생협력

[1-③-5] 공공데이터 심의·조정 위원회 권고 불수용(-1점/건)

평가방법	■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 권고 불수용* 1건당 1점씩 감점 ■ 공공데이터 문제해결심의위원회 심의결과(공공데이터 제공) 미이행* 공공데이터 1건당 1점씩 감점 ■ 공공데이터 문제해결심의위원회 심의결과의 이행관리 미흡(제공주기, 제공항목 누락 등)* 공공데이터 1건당 0.2점씩 감점 * 실적 인정기간('25.10.1. ~ '26.9.30.) 내 불수용/미이행/미흡 건

○ 「1-④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및 성과」 지표

지표 정의	기관에서 개방한 공공데이터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기관의 다양한 노력 및 성과 수준을 평가		
배점	**A기관 : 22점 / B기관 : 20점**	**방식**	**정량·정성** (세부 항목별 제출방안 참조)
담당자	**(기준①)**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과 **김규한 주무관(044-205-2473)**, NIA **이유리 선임(053-230-1568)** **(기준②~③)**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과 **오정현 주무관(044-205-2418)**, NIA **이서연 책임(053-230-1503)**		

[세부기준]

번 호	세부 평가항목	배점		방식	제출방안
		A기관	B기관		
1	활용성 진단 서비스 기준값 달성도	5점	5점	정량	목록등록관리시스템 자동 집계
2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성과	7점	5점	정성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 제출 (ⓐ성과보고서, ⓑ증빙자료) ※ 기준별 성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는 각각 하나의 PDF파일 형태로 제출
3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10점	10점	정량 정성	

[1-④-1] 활용성 진단 서비스 기준값 달성도(배점 5점)

[평가방법]

[평가기준]

■ **'26년 9월 30일까지** 기관이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한 전체 목록 중 활용성 진단 서비스***의 **'이해가능성' 지표** 기준값(15점 이상)을 충족한 목록의 비율 측정

* 5개 진단지표(이해가능성, 연계가능성, 가공편의성, 중요성, 준수성)로 개방 목록의 활용 용이 수준 진단

** 데이터 검색 편의와 사용자 이해를 높이기 위해 목록 등록시 **키워드와 설명**을 상세하게 작성한 정도

※ '이해가능성' 점수 확인 및 수정 방법은 참고사항 확인

■ **'이해가능성' 지표 기준값 달성도 계산식** (※ 최종 집계시점 : '26.10.1.)

$$\frac{\text{이해가능성 지표 15점(20점 만점) 이상인 목록 수}}{\text{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 중인 전체 목록 수}} \times 100(\%)$$

■ **점수산정**

구 분		배 점
'이해가능성' 지표 기준값 달성도	90% 이상	**5점**
	80% 이상 90% 미만	**4점**
	70% 이상 80% 미만	**3점**
	60% 이상 70% 미만	**2점**
	60% 미만	**0점**

[제출방법] 목록등록관리시스템 내 활용성 진단서비스 자료 집계로, **별도 자료제출 불필요**

[참고사항]

['이해가능성' 지표(15점 이상) 충족방법 안내]

① **키워드** : 기본 3개(2.3점), 최대 8개까지 등록 가능, **1개 추가 시 0.02점 가점**

※ 목록을 설명하거나 연상시키는 키워드를 중복 없이 등록, '핵심 키워드' 포함 가능

② **데이터 설명** : 기본 50글자(12.36점중복구문無), **50글자 추가 시 0.1점 가점**

(작성요령) 데이터의 수집 목적·과정 및 전반적인 내용, 데이터 세부 항목, 활용 기대효과 등 작성

(예 시) 소방청_구급정보서비스(API)

- 인구 고령화, 교통수단 다양화 등의 사회 변화로 119구급 출동 건수 증가, 각 분야에서 구급활동정보에 대한 활용 요청 증가에 따라 소방청은 구급활동시 환자이송, 환자상태, 응급처치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방 데이터는 (구급정보)구급환자이송정보, 구급환자상태정보, 구급환자응급처치정보, 구급차량출동정보, 구급차량정보, 구급활동정보 6종 약8,350만건 (구급통계)교통사고구급활동현황, 구급출동유형별현황, 구급상황관리센터운영현황, 사고장소별이송환자현황, 이송환자병력현황, 연령별이송환자현황, 구급활동현황 7종 약 70만 건입니다.
- 학계·연구기관은 구급활동의 계절별 추이, 환자증상유형, 사고빈발지역 분석과 구급업무 효율화 및 예방정책 수립 등의 구급상황 연구에 활용하고, 의료·보건기관은 보유중인 데이터와 구급정보 개방데이터의 융·복합을 통해 구급환자 발생 및 증상에 대한 분석 및 대응 방법 등의 연구에 활용하고, 참여기관은 구급정보 공유를 통하여 사고장소, 환자유형, 출동 유형 등 세부자료 활용으로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데이터는 익명성 확보를 위한 처리로 인하여, 소방청에서 별도로 제공되는 데이터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능성' 지표 15점 사례] 키워드 5개(2.34점), 데이터 설명 200글자(12.66점)

[실적 확인 방법] 추후 공공데이터포털 차세대시스템 개편 후 제공 예정('26.7월)

[1-④-2]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성과 ([A기관] 7점 / [B기관] 5점)

[평가방법]

[평가기준]

■ 기관의 개방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민간(국민, 기업 등)에서 창출된 성과**의 **우수성(파급효과 등) 및 기관 지원 노력**을 정성적으로 평가

- **제출 사례 수** : 분야(앱·웹, 논문 등) 구분 없이 **대표사례 1건 제출(A기관/B기관 동일)**

■ **인정 분야 및 분야별 작성 항목**

- 앱·웹 서비스(기존 제공 서비스 개선 및 신규 개발), 논문, 특허 등 지식재산 기여 등
  ※ 앱·웹 서비스 개발(AI모델/서비스 등) 사례인 경우, 가중치 부여

구 분	작성항목	
	개 별	공 통
앱·웹서비스	서비스명, 서비스URL, **운영주체**, **실적일자***, 파급효과	개요, 우수성·필요성, **기관 데이터의 활용 부분**, 데이터명, 데이터URL, **기관 지원 노력**
논문 (논문 필수)	논문명, **서지정보****, **승인·출판일자**	
특허 (특허증 등 필수)	특허명, 출원·특허번호, 발명자 정보, 출원·등록일자	
기 타	※ 서비스 구축, 시스템 개발 등 제품개발 및 지식재산에 준하는 기관의 실적을 작성하되, 데이터 분석·공유사례 등과 같은 타 지표 제출 실적은 불인정되며, 작성 양식은 일부 조정 가능	

※ **밑줄(작성항목)** : 증빙자료 필수 제출 항목
* 실적일자 : 기존 제공 서비스인 경우, '실적일자'는 서비스 업데이트일자 및 기관 지원노력에 따른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예, oo항목 추가 반영, xx데이터 오류 수정 등)
** 서지정보 : 학술지 및 출판물에 등재된 논문은 저널명, 권/호, 페이지번호 등을, 단순 학위논문은 학위유형(석사/박사 등), 제출연도, 소속기관, 지도교수 등 각 성격에 맞는 필수 정보를 작성하여야 함

[실적인정기간] '25.11.15 ~ '26.9.30

[제출방법]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 아래 자료 제출

①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성과보고서(**[첨부3]** 작성양식 2p 이내 작성, PDF 파일로 제출)

② 증빙자료 : 보고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일체

[참고사항]

[실적 불인정 사례]

① 실적 인정기간('25.11.15~'26.9.30) 외의 실적
- (앱·웹서비스)서비스개시일/업데이트일자, (논문)승인·등재·출판일자, (특허)출원·등록일자 중 어떤 일자든 실적 인정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② 평가시점에 미운영중인 앱·웹서비스

③ 보고서 및 증빙자료 중 필수 제출 항목을 누락한 경우

④ 증빙자료 중 공식문서 및 수정 불가자료가 아닌 경우
- (공식문서) 공문, 보고문서, 결재문서 등, (수정 불가자료) 화면캡쳐, 사진 등

⑤ 본인기관 사례 제출
- 기관이 운영하는 서비스, 기관 소속 직원이 논문·특허·개발 등에 직접 참여(공동 포함), 소속기관의 민간 활용 성과 등은 본인기관 사례에 포함됨

⑥ 작성한 활용데이터 URL로 개방데이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⑦ (앱·웹 서비스) 실적 기간 내 서비스 개선 또는 신규 개발된 서비스가 아닌 경우
- 기존 앱·웹서비스의 개선 사례일 경우, 서비스의 우수성·필요성·파급효과 등 기관 데이터가 활용되어 개선된 부분에 한해서만 보고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⑧ 기관 개방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았거나, 보고서 내용이 기관데이터 활용과 무관한 경우

[점수 차감 사례]
■ 보고서상 사례의 파급효과 등이 증빙자료 대비 과장된 경우

[추가 안내사항]
■ 분야(앱·웹, 논문 등) 구분 없이 **대표사례 1건만 제출**(1건 이상 제출 시 첫 번째 사례만 평가)
■ 기타 사례 외 보고서 양식 임의 조정 불가
■ 첨부 양식 내 모든 항목은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일부 누락 시 점수 차감 혹은 실적 불인정

['25년 사례](※ 아래 내용은 다양한 사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점 사례는 아님)

[앱·웹서비스] 해외 위험국가 실시간 모니터링 플랫폼	
서비스개요	- 국가별 위험등급(1~5단계), 현지 안전정보(치안상황, 정세 불안, 자연재해, 감염병 등), ODA 사업 활동 정보(현지 사업 운영 현황, 참여 인력 등)를 실시간으로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 우수성	- 분산된 공공데이터를 융·복합하여 정치·사회·치안·보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 반영한 국가별 위험도 분석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제공 - 해외 파견 인력뿐 아니라 일반 국민까지 활용 가능한 범용성 높은 서비스로, 정책 수립 및 사업 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
파급효과	- 해외 파견 인력, 개발 협력 관계자, 일반 해외여행자 등에게 국가별 안전 리스크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결정 지원 및 안전성 제고 * 연간 3-4,000명의 봉사단원, 3-400명 국별협력사업 조사 전문가, 47개국 소재 해외사무소 인력 등 고려 시 연(年) 최소 5,000명 이상의 활용 기대
기관의 지원 노력	-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제도 수립·홍보 및 참여기업 선정 - 참여기업 대상 데이터 활용 교육 및 오픈API 활용 역량 강화 지원 - 기존 개방 데이터(오픈API·파일데이터 등 98건)에 대해 범정부 데이터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품질 진단 및 오류 개선 수행

[앱·웹서비스] 지역 소상공인 가게 기프티콘 구매·선물 플랫폼	
서비스개요	- 지역 소상공인 가게의 상품을 모바일 기프티콘 형태로 구매·선물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 우수성	- 시흥시 지역화폐 가맹점 공공데이터를 실시간 반영하여 소비자는 가맹점 정보를 쉽게 탐색할 수 있고, 소상공인은 별도 비용 없이 온라인 홍보 효과를 확보 - 지역화폐 연동 결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에게는 온라인 판매 채널을 제공하여 오프라인 중심 영업구조의 한계 보완
파급효과	- 지역화폐 기반 결제를 통해 소비 촉진,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고객 유입 증가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 - 앱을 통한 가맹점 검색 및 간편결제 지원으로 지역화폐 이용률 증가 및 시민 참여 확대
기관의 지원 노력	- 시흥시 지역화폐 가맹점 대상 서비스 가입 홍보 및 현장 지원을 통한 가맹점 확대 추진 * 시흥시 570개 가맹점 등록 - 공공기관 내부 사용 및 이벤트·축제 연계를 통한 서비스 이용 활성화 - 할인 쿠폰 발행 및 정책사업 연계를 통한 신규 사용자 유입 및 재사용 유도, 다양한 홍보 채널(SNS, 시정 홍보 등)을 활용한 서비스 인지도 확산

[논문] 관리자 육아휴직 사용 경험 및 인식 차이 관련 연구	
논문 개요	- 관리자의 육아휴직 사용 경험 및 인식 차이 분석을 통해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 사항 발굴
논문의 우수성필요성	- 기업 차원의 제도 도입이나 여성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아닌 근로자 개인 차원의 육아휴직 사용 결정 요인을 분석하고, 조직 내 경력 관리 인식에 대한 부분과 연결하여 제도 활용의 어려움의 실증적 근거 제시
활용성	- 정책 입안자나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실효성 있는 육아휴직 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 조직문화 개선 등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
기관의 지원 노력	- 여성 관리자의 기업 내 성장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패널을 구축하여 제공 - 2기 패널로 전환(총 5천 여명 대규모 표본 구축)하여 기존 표본 확충 및 남성 관리자 표본까지 확대하여 제공

[1-④-3]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배점 10점)

[평가방법]

[평가기준]

■ 국민·기업이 기관 개방데이터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지원한 기관의 노력 사례(제출 실적의 추진 적정성)와 추진 성과에 대한 정성**평가 실시

- **제출 사례 수** : **5건**

① 아래 인정실적(예: 기업 지원, 수요조사/활용 교육 등)을 참고하여 기관이 직접 수행한 내용을 제출하고, 제출 실적이 인정 사례에 해당하고 증빙자료를 통해 문제없이 수행되었음이 확인되면 적정하게 추진한 것으로 인정 (A기관 : 0.4점/건, B기관 : 0.8점/건)

※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수행**한 실적은 **1건**으로 인정함 (예: 동일 내용의 교육을 여러 차례 실시하거나, 동일 내용의 홍보를 여러 매체를 통해 수행한 경우는 1건으로 인정)

② 기관의 지원 노력과 성과(예: 데이터 활용 건수 증가, 지원 기업의 투자 유치 등)를 정성적으로 평가

■ **평가배점**

기준	내용	배 점		방식
		A기관	B기관	
1	활용지원 사례의 적정성	**2점**	**4점**	**정량**
2	활용지원 사례의 성과	**8점**	**6점**	**정성**

■ **작성항목** : 실적명, 수행시기, 추진 필요성(추진배경), 추진 내용, 핵심 성과

■ **인정실적**

분 야	인정 실적 예시
기업 지원	기업·시민사회 등과 파트너십 운영, 기반 마련 등 지원*, 기관 데이터 활용 절차 간소화(제공신청 데이터 개방 포함),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해커톤·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기관 데이터를 활용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금, 인프라, 협업 프로젝트, 교육, 컨설팅 지원 등
수요 조사/ 활용 교육 등	공공데이터 수요 조사, 민간 대상 공공데이터 인식 제고, 활용 교육 시행 등
데이터 확보 지원	AI 활용이 용이한 형태로 가공, 분쟁조정/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지원센터 개방 요청 등에 따라 데이터 항목 추가 개방·가공, 전국 통합성 데이터 개방 사업 참여, 표준배포시스템 개방표준(또는 제공표준)에 따른 데이터 개방* 등 * 상세 내용은 '2026년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 및 활용 실무가이드' 참조
제도 정비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을 저해하는 법·제도 정비, 기관에서 업무상 생성·관리 중인 모든 데이터·자료 관리 관련 법·제도 내 기계 판독 및 FAIR*원칙 검토·적용 실적 등 * 국가인공지능위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2.25)' 50-2 정책 권고사항 참고 (FAIR : 검색성(Find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재사용성(Reusability)으로, 기계도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의 데이터 관리 지향)
홍 보	기관 공공데이터의 우수성 및 활용 사례 등의 언론·미디어 홍보
기타	기타 기관의 활용지원 사례

[실적인정기간] '25.11.15 ~ '26.9.30

[제출방법]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 아래 자료 제출

① 성과보고서 :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성과보고서(**[첨부4]**작성양식 6p 이내 작성, PDF 파일로 제출)

② 증빙자료 : 각 실적별 증빙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50p 이내로 하나의 PDF 형태로 제출

[참고사항]

[실적 불인정 사례]

① 보고서 작성 없이 증빙자료만 제출한 경우	④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내용과 무관한 실적을 제출한 경우*
② 실적 인정기간 외의 실적	⑤ [1-④-2. 민간 활용 성과]의 기관 지원 노력 또는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지표 제출 실적과 중복인 경우
③ 공식적인 문서(공문, 결재문서 등) 증빙이 없는 경우	⑥ 본인 기관 적용 사례**

* 기관 공공데이터 활용과 무관한 기업 대상 통상적 지원, 디지털 관련 행사 개최 등

** 본인 기관 서비스 개선, 정책 등에 활용을 위해 민간기업에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활용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그와 관련된 실적을 제출한 경우, 활용지원 실적을 발굴하여 본인 기관에 적용한 경우 등

[점수 차감 사례]

- 단순 추진 실적 외 구체적인 추진 결과 및 성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보고서 작성 내용 중 일부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가 미비한 경우

[추가 안내사항]

- **기관별 배정 사례 건수**(5건)**만 제출**(배정 건수 외 초과 제출된 사례는 평가 제외)
- **대표 사례에 대한 성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우수사례 순으로 작성**
- 보고서 양식 임의 조정 불가

○ 「1-⑤ 가명정보 제공 및 합성데이터 개방 실적」 지표

지표 정의	민감정보 포함 데이터를 **가명정보로 처리**하여 제공하거나 **합성데이터 형태로 개방**한 실적을 정량적으로 평가		
배점	**5점**	**방식**	**정량**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 제출)
담당자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과 **구창규 주무관(044-205-2469)**, NIA **최인선 수석(053-230-1563)**		

[평가방법]

[평가기준]

■ 기관이 민간에 공공데이터포털 및 정보공개포털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가명정보로 처리하여 제공**하거나 **합성데이터 형태로 개방**한 실적

< 관련 용어 설명 >

- 제공: 특정 대상이나 조건에 맞는 대상에게만 데이터 전달
  (대상) 공공데이터포털, 정보공개포털 등을 통해 접수된 제공신청에 대한 처리 건
- 개방: 국민 누구나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
- 가명정보: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하는 등 가명으로 처리하여 추가 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합성데이터: 원천데이터와 통계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가진 가상데이터

[점수산정] 가명정보 제공 또는 합성데이터 개방 **1건당 1점**

■ 가명 처리된 **동일 데이터**를 여러 대상에게 제공하였더라도 **1건으로 처리**

■ 합성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개방(연계데이터* 포함)**한 건에 한해서 인정

* 기관 개별포털의 연계를 통해 공공데이터포털에서 검색 가능한 데이터

[제출방법]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 아래 자료 제출

■ 가명정보 제공, 합성데이터 개방 실적 (**[첨부5]** 작성양식 참고)

■ 가명정보·합성데이터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공문, 포털 화면, 이메일 등 ①공식적인 신청 증빙자료, ②제공·개방 증빙자료
- ③가명정보 적정성 최종 검토 결과서 또는 합성데이터 안전성 및 유용성 검증 결과서
- ④적정성 검토 또는 안정성·유용성 검증 최종 결과를 보고한 공식 문서

※ 증빙자료는 ①②③④ 모두 제출해야 실적 인증(합성데이터는 ① 생략 가능)
※ 증빙자료에는 신청 일자, 제공·개방 일자, 검토·검증 완료 일자가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증빙자료에 민감정보가 포함되었을 경우 민감정보 비식별 조치 후 제출

[참고사항]

[실적 불인정 사례]

■ 실적 인정기간('25.12.13. ~ '26.9.30) 내의 제공·개방 실적이 아닌 경우

■ ①증빙자료만 제출한 경우, ②증빙자료가 없거나 일부 누락된 경우*

* 예) ③가명정보 적정성 최종 검토 결과서를 제출하였으나, ④결과 보고서가 없는 경우

■ '1-④-3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실적(정성),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4-⑤ 가명정보 제공 및 합성데이터 공유 실적(가점)'과 중복으로 제출된 경우

[기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처리 가이드라인",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 준수

2. 품질 영역

< 평가목적 >

행정·공공기관이 생성·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체계 및 오류 개선

지표구성	배 점							방식
	중앙	광역	기초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기타공공기관	시도교육청	
①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17**	**17**	**17**	**17**	**17**	**17**	**17**	정량
①-1 평가대상 DB관리	3	3	3	3	3	3	3	
①-2 예방적 품질관리	4	4	4	4	4	4	4	
①-3 데이터 표준관리	6	6	6	6	6	6	6	
①-4 데이터 구조관리	2	2	2	2	2	2	2	
①-5 데이터 연계관리	2	2	2	2	2	2	2	
② 데이터 값 관리	**18**	**18**	**18**	**18**	**18**	**18**	**18**	
②-1 데이터 품질진단	8	8	8	8	8	8	8	
②-2 데이터 오류율	10	10	10	10	10	10	10	
③ 진단결과 조치	**10**	**10**	**10**	**10**	**10**	**10**	**10**	

영역	평가 지표	실무담당자 (총괄)	업무담당자 (DB 담당)
①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①-1 평가대상 DB관리	●	
	①-2 예방적 품질관리	●	
	①-3 데이터 표준관리	●	●
	①-4 데이터 구조관리		●
	①-5 데이터 연계관리		●
② 데이터 값 관리	②-1 데이터 품질진단		●
	②-2 데이터 오류율		●
③ 진단결과 조치	품질진단 결과 조치		●

※ N/A 처리

구분	산정 방법
영역 내	N/A 지표의 배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표 평가점수를 합산 → 해당 영역의 만점 기준으로 환산
지표 내	N/A 세부지표의 배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부지표 평가점수를 합산 → 해당 지표의 만점 기준으로 환산

○ 「2-①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지표

지표 정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활동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품질관리 활동을 평가		
배점	**17점**	**방식**	**정량** (세부지표별 [평가 방법] 내 [제출자료] 참조)
담당자	2-①-1, 5 : 행안부 공공데이터분석관리과 **홍종윤 주무관(044-205-2491)**, NIA **정성우 책임(053-230-1542)** 2-①-2 : 행안부 공공데이터분석관리과 **최지현 주무관(044-205-2490)**, NIA **류 도 수석(053-230-1535)** 2-①-3, 4 : 행안부 공공데이터분석관리과 **장진욱 주무관(044-205-2492)**, NIA **이성옥 선임(053-230-1536)**		

2-①-1. 평가대상 DB관리(배점 3점)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DB 현행화 및 평가대상 DB 선정을 위한 일정 준수, 신규 평가대상 DB선정 비율, 품질관리 평가대상 DB 선정 관리계획 수립 여부를 평가

[평가방법]

[평가기준]

기준	내 용	배점
1	보유DB 현행화 및 평가대상 DB 선정	1점
2	신규 평가대상 DB 선정	1점
3	품질관리 평가대상 DB 선정계획 수립	1점

[점수산정]

■ 기준1. 보유DB 현행화 및 평가대상 DB 선정

-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서 DB 선정기준**(보유DB의 65% 이상)에 따라 평가대상 DB 선정을 6.30.까지 완료해야 함 ※ 8.31.까지 미선정 시,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임의 선정 예정

*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 기관 보유 DB 검색 가능

** 선정기준 : 기관 보유DB의 65% 이상을 선정하되, 보유DB가 19개 이하인 기관은 전체 DB, 20~31개인 기관은 20개 이상 DB를 선정, 그 외 기관은 아래표 참조

보유 DB	19개 이하	20~31개	32개 이상은 65% 이상 적용	
			32~76개	77개 이상
평가대상 DB	전체	20개 이상	21~49개 이상	50개 이상

1)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된 개방데이터의 원천 DB는 필수 선정(DB 목록 별도 안내 예정)

2) DB생성 및 수정·삭제 등 변경된 DB가 있으면 보유DB 현행화를 위해 반드시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수정해야 함

3) 전체 평가대상 DB 중 표준배포시스템 DB 선정은 50% 미만으로 선정

※ 제외 대상 : 이미 폐기된 시스템

※ 고도화·재구축 등이 진행중인 정보시스템(DB)은 운영중인 정보시스템(DB)으로 진단·평가를 수행해야 함

■ **기준2. 신규 평가대상 DB 선정**(보유DB 21개 이상 기관만 해당)

- 전년도('25년)에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DB를 올해('26년) 평가대상 DB로 선정한 비율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평가 기준	점수
신규 DB 비율이 50% 이상	1점
신규 DB 비율이 25% 이상 ~ 50% 미만	0.5점
신규 DB 비율이 25% 미만	0점

※ 개방 데이터의 원천 DB를 필수 선정하고 전년도에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DB를 올해 모두 선정하더라도 신규 DB 비율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최대 점수 부여

기관보유 DB (A)	'25년 선정 DB (B)	진단 미수행 DB (C=A-B)	개방데이터의 원천 DB	'26년 선정 DB (D=A*0.65)	
30개	18개	12개	9개	20개	신규 (D*0.5)
					11개
77개*	45개	32개	31개	50개	신규 (D*0.5)
					19개

* 총 77개 DB 중 50개 DB를 선정할 경우, 개방데이터의 원천 DB 31개는 필수 선정 대상이므로 최종 선정된 50개 DB 중 신규 DB 비율이 50% 미만이더라도 만점을 부여

■ **기준3. 품질관리 평가대상 DB 선정계획 수립**(보유DB 21개 이상 기관만 해당)

- 각 기관 전체 보유DB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를 최소 1년에서 3년 이내에 수행하기 위한 품질관리 평가대상 DB 선정계획* 수립 여부를 평가

* 기관명, 보유DB명(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DB명과 일치해야 함), 연도별 평가대상 DB 선정계획 (개방데이터의 원천 DB는 매년 평가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작성 양식(예)>

보유 DB 현황 (`26년)				평가대상 DB 선정 계획		
기관명	시스템명	한글 DB명	영문 DB명	`26년	`27년	`28년
ㅇㅇㅇㅇ	*ㅇㅇㅇㅇ시스템*	*ㅇㅇㅇㅇㅇDB*	*ㅇㅇㅇㅇㅇDB*	*Y*	*Y*	*Y*
ㅇㅇㅇㅇ	*ㅇㅇㅇㅇ시스템*	*ㅇㅇㅇㅇㅇDB*	*ㅇㅇㅇㅇㅇDB*	*N*	*Y*	*N*
...	...	...	...	...	...	...
총합계		***보유 DB 총 00개 (100%)***		***00개 (60%)***	***00개 (60%)***	***00개 (60%)***

※ 보유DB가 130개 이상인 기관은 3년 이내에 전체 DB를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유 DB별 평가 주기 등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선정계획 수립·제출 시 만점(1점) 부여(단, 개방데이터의 원천 DB는 매년 평가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 품질관리 평가대상 DB선정 계획 공문서(내부 결재문서) 제출 필요(~10.31.까지)

[제출자료]

■ **(기준1) 별도 자료제출 불필요**(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서 자동 집계)

■ **(기준2) 별도 자료제출 불필요**(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서 자동 집계)

■ **(기준3)**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을 통해 품질관리 평가대상 DB 선정계획 수립 공문서* **제출 필요**

* 기안자와 결재자가 구분되어야 하며, 결재자는 상위 결정권자이어야 함

2-①-2. 예방적 품질관리(배점 4점)

정보화사업 추진 시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결과를 사업 발주 및 완료 단계에서 반영 여부를 평가

[평가방법]

[평가기준]

-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등록된 사전협의 대상 사업에 대하여, 예방적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검토 의견이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및 사업 완료 산출물에 반영 여부를 평가

기준	내 용	배점
1	사업발주 단계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결과 반영	2점
2	사업완료 단계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결과 반영	2점

■ 기준1. 사업발주 단계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결과 반영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검토 결과를 '25.9.1.~'26.8.31. 기간 중 통보*받은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발주를 위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DB 분야) 확정 단계에서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기준의 반영 여부를 평가

* 대상여부는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검토 결과 통보일' 기준으로 선정하며,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보완 후 협의' 사업은 '반영계획 점검등록일'을 기준 적용

※ 검토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의견 반영 결과(제안요청서 등)를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등록해야 함 ('26.9.30.까지 등록하지 않은 경우 미반영으로 판단, 사전협의 진행 상황에 따른 제출기한은 별도 공문 발송 예정)

- 평가산식 :

$$\text{점수} = \frac{\text{사업별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결과 반영비율}^{2)}\text{의 합계}}{\text{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검토결과 통보 사업 수}^{1)}} \times \text{배점}$$

1) 사전협의 신청 후 '25.9.1.~'26.8.31. 기간 동안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사업* 수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서 확인되는 '검토 결과 통보일' 기준)

* 사전협의 검토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사업의 경우, '26.8.31.까지 재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사업

$$2)\ \text{사업별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결과 반영비율} = \frac{\text{검토대상 진단항목 중 최종 반영된 항목 수}}{\text{검토대상 진단항목}^{*} - \text{해당없음 항목 수}^{**}}$$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23.4월 배포) 3.2.1.3 정보화사업 유형 및 금액별 진단기준의 항목 수

** 사전협의 결과 중 사업내용과 부합하지 않아 반영이 불가능한 항목이 있는 경우, 반영 불가 사유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등록한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 후 '해당없음 항목'으로 인정

■ 기준2. 사업완료 단계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결과 반영

- '21.3.12. 이후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신청하여 '25.8.1.~'26.7.31. 기간동안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을 실시한 완료된 사업 중 제안요청서 보완 등 사전협의(DB분야) 검토의견을 받은 사업(이하 '이행점검 대상 사업')을 대상으로,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결과를 사업완료 산출물에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평가

※ '26.8.31.까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등록된 사전협의 이행결과(사업완료 산출물, 완료보고서 등)를 기준으로 판단, 사전협의 진행 상황에 따른 제출기한은 별도 공문 발송 예정

- 평가산식 :

$$\cdot\ \textbf{점수} = \frac{\textbf{사업별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결과 이행비율}^{2)}\textbf{의 합계}}{\textbf{예방적 품질관리 이행점검 대상 사업 수}^{1)}} \times \textbf{배점}$$

1) '21.3.12. 이후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신청하여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을 실시한 사업 중 '25.8.1.~'26.7.31. 기간동안 완료된 사업

2) $$\text{사업별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결과 이행비율} = \frac{\text{완료단계에서 이행된 항목 수}}{\text{점검대상 진단항목}^{*} - \text{해당없음 항목 수}^{**}}$$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23.4월 배포) 3.2.1.3 정보화사업 유형 및 금액별 진단기준의 항목 중, 사전협의 검토의견을 받은 항목 수

** 사전협의 결과 중 사업내용과 부합하지 않아 반영이 불가능한 항목이 있는 경우, 반영 불가 사유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등록한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 후 '해당없음 항목'으로 인정

[제출자료] 별도 자료제출 불필요

■ **(기준1)**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 **별도 자료제출 불필요**

■ **(기준2)**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등록된 결과로 평가, **별도 자료제출 불필요**

※ 필요시 추가 증빙자료 요구 가능(세부 이행결과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

2-①-3. 데이터 표준관리(배점 6점)

상위표준을 준용한 기관 표준(상위 : 공통표준) 정의 및 DB 표준(상위 : 기관표준)을 정의하여 평가대상 DB에 적용하고, 공통표준용어 기준으로 비표준 데이터 매핑정보 관리 여부를 평가

[평가 방법]

[평가기준]

기준	내 용	배점
1	상위표준을 준용한 데이터베이스(DB) 표준 정의	2점
2	데이터베이스(DB) 표준 적용률	3점
3	비표준 데이터 매핑정보 관리	1점

[점수산정]

■ 기준1. 상위표준을 준용한 데이터베이스(DB) 표준 정의

- 공통표준을 준용하여 기관표준을 정의하고, 기관표준을 준용하여 평가대상 DB의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정의 여부를 평가
- 기관담당자는 기관표준, DB담당자는 DB표준의 표준용어·표준단어·표준도메인·표준코드 항목을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 등록·점검을 수행해야 함

※ 평가기준 : ㉠ 데이터베이스 표준 정의, ㉡ 기관표준 준용 여부, ㉢ 공통표준 준용 여부

평가 기준	내용
㉠ 데이터베이스(DB) 표준 정의	DB표준 등록 및 완전성 점검(중복, 형식오류 등) 성공 여부
㉡ 기관표준 준용 여부	DB표준 정의 시, 기관표준이 준용되었는지 여부 ※ 평가대상 DB 구축 시점이 기관 표준 제정 이전인 경우, 해당 기준을 제외하고 평가
㉢ 공통표준 준용 여부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이 준용되었는지 여부 ※ 평가대상 DB 구축 시점이 공통표준 최초 제정('20년 8월) 이전인 경우, 해당 기준을 제외하고 평가

※ ㉠ 데이터베이스 표준 정의(완전성 점검) 선행 후, ㉡ 기관표준 및 ㉢ 공통표준 준용 점검 가능

① 완전성 점검 항목 : 표준용어, 표준단어, 표준도메인, 표준코드의 중복여부, 특수문자사용, 제정일자(YYYYMMDD)의 형식 등 점검

② 상위표준 준용 점검 항목 : '기관표준'은 공통표준을 준용하고, 'DB표준'은 기관표준 및 공통표준을 준용하여야 하며, '표준코드' 정의 시 기관표준 및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함

- 평가 산식 :

$$\cdot\ 점수 = \frac{\textbf{평가 대상 DB의 점수}^{3)}\ \textbf{합계}}{\textbf{평가 대상 DB 수}^{1)}} \times A^{2)}$$

1) 평가대상 DB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한 평가대상 DB 수

2) 기관표준 정의 및 공통표준 준용에 대한 점수로, 공통표준을 준용하여 기관표준을 정의한 경우 A=1, 기관표준을 정의하였으나 공통표준을 준용하지 않은 경우 A=0.9, 기관표준을 정의하지 않은 경우 A=0.8

3) 평가대상 DB의 점수 산정 기준

① 표준용어 점수 = 충족되는 평가기준 수 / 해당되는 평가기준 수 × 0.6	①, ②, ③, ④ 점수의 합 3) (DB별 최대 2점)
② 표준단어 점수 = 충족되는 평가기준 수 / 해당되는 평가기준 수 × 0.4	
③ 표준도메인 점수 = 충족되는 평가기준 수 / 해당되는 평가기준 수 × 0.6	
④ 표준코드 점수 = 충족되는 평가기준 수 / 해당되는 평가기준 수 × 0.4	

ex) DB에 대해 DB 표준을 정의(㉠)하고 기관·공통표준을 준용(㉡,㉢) 했다고 하면 ① 점수는 (3/3)*0.6 = 0.6 점으로 산정, DB 표준을 정의했으나 기관·공통표준을 미 준용 했다고 하면 ① 점수는 (1/3)*0.6 = 0.2 점으로 산정

■ 기준2. 데이터베이스(DB) 표준 적용률

- 평가대상 데이터베이스(DB)의 표준(표준용어, 표준도메인)과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컬럼과 비교하여 표준 적용률 평가

※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서 (기준1) 수행 완료된 이후, (기준2) 수행 가능

- 평가 산식 :

$$\cdot\ 점수 = \frac{\textbf{평가 대상 DB의 점수 합계}^{2)}}{\textbf{평가 대상 DB 수}^{1)}}$$

1) 평가대상 DB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한 평가대상 DB 수

2) 평가대상 DB의 점수 산정 기준

· 데이터베이스(DB) 표준 적용률(%) = $\frac{\text{표준이 적용된 컬럼 수}^{2)}}{\text{전체 컬럼 수}^{1)}} \times 100$

1) 전체 컬럼 수 : 평가대상 DB의 전체 컬럼 수(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기준)
2)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평가대상 데이터베이스 컬럼 중 정의한 데이터베이스 표준**(표준용어(표준용어명, 영문약어명), 표준도메인(데이터타입, 데이터길이))**이 적용된 컬럼 수

평가기준	점수
표준 적용률 90% 이상	3점
표준 적용률 80% 이상 ~ 90% 미만	2점
표준 적용률 70% 이상 ~ 80% 미만	1점
표준 적용률 70% 미만	0.5점
미수행	0점

■ **기준3. 비표준 데이터 매핑정보 관리**

- 공통표준 미준수 용어(비표준)*를 식별하고, 해당 용어들에 대해 공통표준용어를 매핑하여 관리하는지 여부를 평가

  * 표준용어명 또는 영문약어명 중 하나라도 공통표준용어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 식별된 비표준 데이터는 **'표준용어명', '영문약어명', '데이터타입', '데이터길이'**를 포함하여 **비표준 데이터 매핑정보**를 **관리**하여야 함

1) 비표준 데이터 매핑대상인 DB표준용어 전체가 공통표준용어와 매핑되어야 함
2)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는 공통표준용어를 준용하여 구축 및 연계·활용해야 하므로, 모든 DB는 구축 시점과 상관없이 비표준 데이터 매핑정보 관리 대상임

< DB표준용어 비표준 데이터 매핑 예시 >

	DB표준용어(비표준)				공통표준 점검결과	공통표준용어 매핑등록	매핑 공통표준용어명
	표준용어명	영문약어명	데이터타입	데이터 길이			
	종료일	END_YMD	*VARCHAR*	*100*	비표준	① 추천용어로 등록 ② 직접 등록 ③ 예외처리	(매핑필요)
▼							
① 추천용어로 등록	*종료일*	END_YMD	*VARCHAR*	*100*	매핑완료	-	종료일자 END_YMD CHAR 8
② 직접 등록	*종료일*	END_YMD	*VARCHAR*	*100*	매핑완료	-	종료일자 END_YMD CHAR 8
③ 예외처리	*종료일*	END_YMD	*VARCHAR*	*100*	예외처리	※ 관리 중인 DB표준과 공통표준용어의 의미가 다르거나, 예외처리해야하는 경우에만 활용	-

※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서 '매핑등록' 기능을 활용하여 일괄·개별로 매핑된 공통표준용어명을 작성할 수 있음

- 단, 신규 구축 및 지속적인 표준화 활동을 통해 DB표준용어 전체가 공통표준용어를 준용하여 관리 대상이 없을 경우 만점(1점) 부여(표준화 활동 증빙자료 제출 필요)

[산출예시]

< 산출예시① : 상위표준을 준용한 데이터베이스(DB) 표준 정의 >

정보 시스템	DB명	선정DB	DB별 점수					기관표준 정의 및 준용여부	기준1 최종점수
			표준용어	표준단어	표준도메인	표준코드	최종점수		
A	홈페이지	O	0.6	0.4	0.6	0.4	2	1	$\frac{(2+2+2+2)}{4}$ *1= 2점
	사용자	O	0.6	0.4	0.6	0.4	2	1	
	권한	O	0.6	0.4	0.6	0.4	2	1	
	콘텐츠	O	0.6	0.4	0.6	0.4	2	1	
	헬프데스크	**X**	**미선정**						
합계		**4**							

< 산출예시② : 데이터베이스(DB) 표준 적용률 >

정보 시스템	DB명	선정DB	DB별 점수			DB별 점수	기준2 최종점수
			전체 컬럼수	표준적용 컬럼수	표준 적용률		
A	공공데이터	O	50	47	94%	3	$\frac{(3+2+3+1+2)}{5}$ =2.2점
	개방데이터	O	100	80	80%	2	
	빅데이터	O	150	140	93%	3	
	인공지능	O	200	150	75%	1	
	딥러닝	O	250	200	80%	2	
	블록체인	**X**	**미선정**				
합계		**5**					

[제출자료]

- **(기준1)**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 **기관표준 및 DB표준(표준용어, 표준단어, 표준도메인, 표준코드) 등록 필요** (자료 등록 후 시스템에서 점검 수행)
- **(기준2)** 기준1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점검, **별도 자료 제출 불필요**
- **(기준3)**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서 수행한 DB표준 비표준 매핑 결과를 이용할 경우 **별도 자료 제출이 불필요하나 자체 증빙자료의 경우 제출 필요**

2-①-4. 데이터 구조관리(배점 2점)

평가대상 DB 산출물인 '데이터베이스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을 실제 DB 구조에 맞게 현행화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평가

[평가방법]

[평가기준]

기준	내 용	배점
1	데이터 구조 정의	1점
2	데이터 구조 현행화	1점

[점수산정]

■ 기준1. 데이터 구조 정의

- DB별 '데이터베이스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산출물 대상 표준관리 항목* 등록여부 평가

※ 산출물의 완전성 점검(중복, 데이터 누락 등) 이후, 표준관리 항목 포함 여부 평가

* 항목 : **(데이터베이스 정의서)** 기관명, 한글 DB명 또는 영문 DB명, DBMS 정보, **(테이블 정의서)** 한글 테이블명, 영문 테이블명, **(컬럼 정의서)** 영문 테이블명, 한글 컬럼명, 영문 컬럼명, 데이터 타입, 데이터 길이,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영문 DB명, 설명

① 데이터베이스 정의서 평가기준

평가기준	점수
평가항목 포함 등록	0.1점
미등록	0점

② 테이블 정의서 평가기준

평가기준	점수
평가항목 포함 등록	0.3점
미등록	0점

③ 컬럼 정의서 평가기준

평가기준	점수
평가항목 포함 등록	0.5점
미등록	0점

④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평가기준

평가기준	점수
평가항목 포함 등록	0.1점
미등록	0점

①, ②, ③, ④ 점수의 합

■ 평가 산식 :

$$\cdot\ 점수 = \frac{평가대상\ DB의\ 점수\ 합계^{2)}}{평가대상\ DB\ 수^{1)}}$$

1) 평가대상 DB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한 평가대상 DB 수

2) DB별 점수 산정 기준

■ **기준2. 데이터 구조 현행화**

- 데이터 구조 산출물('테이블 정의서', '컬럼 정의서')을 실제 DB의 구조에 맞게 현행화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평가

  ※ 데이터 구조 현행화율을 확인하기 위해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서 데이터구조 완전성 점검과 산출물 현행화(메타)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평가 산식 :

① 테이블 현행화율(%) = $\frac{\text{물리DB*와 테이블정의서 테이블 정보 일치 개수}}{\text{물리DB 내 테이블 전체 개수}} \times 100$

② 테이블정의서 현행화율(%) = $\frac{\text{물리DB*와 테이블정의서 테이블 정보 일치 개수}}{\text{물리DB 테이블정의서 내 테이블 개수}} \times 100$

③ 컬럼 현행화율(%) = $\frac{\text{물리DB*와 컬럼 정의서 컬럼 정보 일치 개수}}{\text{물리DB 내 컬럼 전체 개수}} \times 100$

④ 컬럼정의서 현행화율(%) = $\frac{\text{물리DB*와 컬럼 정의서 컬럼 정보 일치 개수}}{\text{물리DB 컬럼정의서 내 컬럼 개수}} \times 100$

①, ②, ③, ④ 중 낮은 비율 적용

* 물리DB :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는 테이블, 컬럼을 의미

평가 기준	점수
현행화율 90% 이상	1점
현행화율 80% 이상 ~ 90% 미만	0.7점
현행화율 70% 이상 ~ 80% 미만	0.4점
현행화율 70% 미만, 미수행	0점

[제출자료]

■ **(기준1)**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표준관리 메뉴)에 데이터베이스 정의서, 테이블 정의서, 컬럼 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등록 필요**

※ 데이터베이스 정의서 등록 후 테이블 정의서, 컬럼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등록 가능

■ **(기준2)** (기준1)에 등록된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 – **자료 등록 불필요**

2-①-5. 데이터 연계관리(배점 2점)

내·외부기관의 정보시스템(DB)과 연계되어 송·수신하는 데이터의 목록 정의 및 송·수신 내역 관리 여부 평가

[평가방법]

[평가기준]

기준	내 용	배점
1	연계데이터 관리 정보 정의	1점
2	연계데이터 송·수신 내역 관리	1점

[점수산정]

■ 평가 산식 :

$$\cdot\ 점수 = \frac{평가대상\ DB의\ 점수\ 합계^{2)}}{평가대상\ DB\ 수^{1)}}$$

1) 평가대상 DB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한 평가대상 DB 수
2) DB별 점수 산정 기준

■ 기준1. 연계데이터 관리 정보 정의

- 내·외부 기관(DB) 간 송·수신하는 연계데이터 목록 정의 여부 평가

※ 필수항목(12종)인 "연계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데이터 길이), 항목 출처(DB명, 테이블명,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을 정의해야 함

평가기준	점수
모든 필수항목을 포함하여 정의	1점
일부 필수항목만 포함하여 정의	0.7점
미정의	0점

- 별도의 정의서 형태가 아닌 연계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관리되는 경우도 인정함
  · 연계 솔루션을 사용하는 경우 시스템 캡쳐 화면(연계데이터의 정합성 점검 및 모니터링 화면)도 인정 (단, 캡쳐 화면에 12개 필수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며, 캡쳐 화면에 부족한 항목이 있는 경우, 부족한 정보를 관리하는 별도의 자료가 제출되어야 함)
- 연계데이터의 인정 범위 : 내부(기관 내 시스템 간) 및 외부(기관 간) 연계 대상
- 연계 형태가 API인 경우에도 12개 필수항목을 정의해야 함
- 연계데이터가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논리적** 시스템 구성도(인터넷으로 공개할 수 있는 수준의 개념도로 RFP, 사업계획서 등에 기술되어 있는 구성도)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단순한 **물리적** 시스템 구성도(서버, H/W 구성도, S/W구성도, N/W구성도)를 제출하여 내·외부 정보시스템(DB)와의 연계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인정하지 않음

■ **기준2. 연계데이터 송·수신 내역 관리**

- 연계데이터 송·수신 **현황 점검 내역**(점검일시, 연계건수, 검증내역 등) 및 **오류발생 시 조치 내역(**오류 발생 내역 및 조치결과 등)에 대한 관리 여부 평가

※ 연계데이터 오류 발생이 없는 경우, 연계 데이터 현황 점검 내역만 포함되어도 만점 부여

※ '기준1 연계데이터 관리 정보 정의' 지표에서 '해당없음'(N/A)으로 처리된 경우 기준2 지표도 '해당없음'(N/A) 처리됨

평가기준	점수
현황 점검 및 오류 조치 모두 수행	1점
현황 점검, 오류 조치 중 하나만 수행	0.5점
미수행	0점

[제출자료]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 아래의 자료 제출 필요

■ **(기준1)** 연계데이터 목록 정의서 또는 증빙자료(연계 솔루션 캡쳐 화면 등)

■ **(기준2)** 연계데이터 현황 점검 및 오류 조치 내역

○ 「2-② 데이터 값 관리」 지표

지표 정의	각 기관이 구축·운영하고 있는 DB의 품질 제고를 위해 수행하는 품질진단 기준 설정 및 오류 보완 조치 등 데이터 값의 품질개선 활동을 평가		
배점	**18점**	**방식**	**정량** (평가시스템에 자료제출 필요)
담당자	행안부 공공데이터분석관리과 **홍종윤 주무관(044-205-2491)**, NIA **정성우 책임(053-230-1542)**		

2-②-1. 데이터 품질진단(배점 8점)

DB 품질진단 대상 테이블과 컬럼을 식별하고, 진단대상 컬럼에 대해 법령·지침·업무규정 등에 따라 데이터 검증 및 진단기준을 정의하고 품질진단 수행 여부를 평가

[평가방법]

[평가기준]

기준	내 용	배점
1	품질진단 기준 정의 및 진단	4점
2	품질진단 규칙(BR) 정의 및 진단	4점

[점수산정]

■ **평가 산식 :**

$$\cdot\ 점수 = \frac{평가\ 대상\ DB의\ 점수^{2)}\ 합계}{평가\ 대상\ DB\ 수^{1)}}$$

1) 평가대상 DB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한 평가대상 DB 수
2) DB별 점수 산정 기준

■ **기준1. 품질진단 기준 정의 및 진단**

- DB 품질진단을 수행할 **테이블 및 컬럼**을 **선정**하고, 진단 대상으로 선정한 **모든 컬럼**에 대해 **진단기준**을 **정의하고 진단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평가
- 진단 수행률 = 진단 대상 테이블 수행 비율 x 진단 대상 컬럼 수행 비율

※ (예시) 진단대상 테이블 10개 중 9개 수행(90% 충족), 진단 대상 컬럼 100개 중 98개 수행(98% 충족)일 경우, 진단 수행률 = 90% x 98% = 88.2%

평가기준	점수
진단 수행률 100%	4점
진단 수행률 90% 이상 ~ 100% 미만	3.5점
진단 수행률 80% 이상 ~ 90% 미만	3점
진단 수행률 70% 이상 ~ 80% 미만	2.5점
진단 수행률 70% 미만	0점

- **품질진단 기준**은 품질진단 대상 컬럼에 매핑되어 관리되어야 함
  · 진단기준 : 데이터 품질진단기준(16개 항목) ※ [참고1] 데이터 품질진단 기준
  · 진단대상 : 데이터 품질진단 기준에 해당하는 전체 테이블 및 컬럼 ※ [참고2] 품질진단 범위조정 및 절차
- 대용량 DB 등 품질진단 수행 시 정보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진단대상(테이블 및 컬럼)을 행정안전부·NIA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협의 조정된 경우, 진단 대상 모수에서 제외)

■ **기준2. 품질진단 규칙(BR) 정의 및 진단**

- 법령·지침·업무규정 등에 위배되는지 데이터를 검증하기 위해 **업무규칙(품질진단 규칙)**을 **정의하고 진단**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평가

평가기준	점수
업무규칙 20개 이상 정의·진단	4점
업무규칙 10개 이상 ~ 19개 이하 정의·진단	3.5점
업무규칙 5개 이상 ~ 9개 이하 정의·진단	3점
업무규칙 2개 이상 ~ 4개 이하 정의·진단	2점
업무규칙 1개 정의·진단	1점
업무규칙 미적용	0점

※ 평가대상 DB의 전체 테이블 수가 20개 미만인 경우, 테이블 수를 기준으로 업무규칙을 정의·진단한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예시 : ① 전체 테이블 수가 5개인 DB에 업무규칙을 5개 이상 정의·진단 시, 만점(4점) 부여), ② 전체 테이블 수가 5개인 DB에 업무규칙을 3개 정의·진단 시, (3/5) * 4 = 2.4점 부여

- **업무규칙(BR) 정의서**에는 필수적으로 '업무규칙명', '업무규칙내용', '스크립트', '근거규정'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 업무규칙의 근거규정은 반드시 평가대상 DB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참고해야 하는 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으로 구체적이어야 함
- 업무규칙의 근거 규정이 없는 홈페이지, 내부업무 시스템 등은 자체적으로 DB별 업무규칙을 관리하는 '매뉴얼', '가이드', '지침' 등을 근거로 진단을 수행하여도 인정

※ 업무규칙으로 정의되는 테이블은 반드시 품질진단 도구에서 '진단 대상'으로 선정되어야 함

[제출자료]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 아래의 자료 제출 필요

■ **(기준1) 진단결과 보고서**(진단결과 보고서 내 품질 진단 기준 및 정의 내역 활용)

※ 데이터 품질진단 대상 정의 및 데이터 품질진단 기준 정의 내역 포함

■ **(기준2) 진단결과 보고서**(진단결과 보고서 내 품질진단 규칙 정의 내역 활용)

※ 업무규정에 따른 품질진단 규칙 정의 내역 포함*

* 품질 진단도구 내 '업무규칙 기본정보'의 근거 규정 내용을 기술하였다면 '업무규칙 정의서'는 미제출 가능

2-②-2. 데이터 오류율(배점 10점)

평가대상 DB의 데이터 오류율(최종) 진단 및 평가

[평가방법]

[평가기준]

- 데이터 품질진단 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DB의 데이터 오류율 진단 및 평가

* 데이터 품질진단 기준(16개: 시간순서 일관성, 선후관계 정확성, 논리관계 일관성, 계산식, 참조관계, 글자깨짐, 공백 및 특수문자, 필수값, 중복데이터, 도메인(날짜, 번호, 여부, 코드, 금액, 수량, 율)) 및 설정한 업무규칙으로 오류율 측정

[점수산정]

■ **평가 산식 :**

· 점수 = $\frac{\text{평가 대상 DB의 점수 합계}^{2)}}{\text{평가 대상 DB 수}^{1)}}$

1) 평가대상 DB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한 평가대상 DB 수
2) DB별 점수 산정 기준

■ **데이터 오류율 산정 기준 :**

데이터 품질 오류율(%) = $\frac{\text{오류데이터 건수}^{b)}}{\text{평가 대상DB 전체 데이터 건수}^{a)}}$ X 100

a) 평가대상 DB 내 품질 진단을 수행한 전체 데이터 건수
b) 평가대상 DB 내 품질 진단을 수행한 전체 데이터 중 오류가 발견된 건수

평가기준	점수
오류율 0.001% 미만	10점
오류율 0.001% 이상 ~ 0.005% 미만	9점
오류율 0.005% 이상 ~ 0.01% 미만	8점
오류율 0.01% 이상 ~ 0.1% 미만	7점
오류율 0.1% 이상 ~ 0.5% 미만	6점
오류율 0.5% 이상 ~ 1.0% 미만	5점
오류율 1.0% 이상	4점
미수행	0점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와 공간정보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국토부 소관) 대상 DB가 중복되는 경우 공간정보 품질진단 및 오류데이터 건수를 합산하여 해당 DB의 점수산정

※ 공간정보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국토부 소관)에서만 평가대상 DB로 선정된 경우 공간정보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결과(품질 오류율)를 해당 DB의 점수로 산정하고, 지표점수 산정 시 반영

※ 공간정보 DB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에 대한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문을 통해 별도 안내 예정

[제출자료]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 아래의 자료 제출 필요

■ **품질진단 결과보고서(최종본)**

※ 품질진단 기준 및 정의, 업무규칙 정보와 오류율 산출을 위한 진단 기준 정보는 같아야 함

○ 「2-③ 진단결과 조치」 지표

지표 정의	품질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 계획 수립 및 조치 활동 여부를 평가		
배점	10점	방식	**정량** (평가시스템에 자료 제출 필요)
담당자	행안부 공공데이터분석관리과 **홍종윤 주무관(044-205-2491)**, NIA **정성우 책임(053-230-1542)**		

[평가방법]

[평가기준]

기준	내 용	배점
1	품질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4점
2	개선조치 이행률	6점

[점수산정]

■ **평가 산식 :**

$$\cdot\ 점수 = \frac{평가\ 대상\ DB의\ 점수\ 합계^{2)}}{평가\ 대상\ DB\ 수^{1)}}$$

1) 평가대상 DB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한 평가대상 DB 수
2) DB별 점수 산정 기준

■ **기준1. 품질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 DB의 표준, 구조, 연계, 데이터 값에 대한 품질 진단결과(데이터 표준관리, 데이터 구조관리, 데이터 연계관리, 데이터 품질진단)를 분석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평가
- 품질진단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과제 정의 산정 기준

평가기준		점수
품질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계획 수립	데이터 값 오류율, 표준, 구조, 연계 관리 개선 과제 모두 포함	4점
	데이터 값 오류율 개선 과제만 포함	3점
	데이터 값 오류율 개선 외 과제(표준, 구조, 연계관리 모두)만 포함	2점
개선계획 미수립		0점

※ 각 지표별 충족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개선할 오류가 없는 DB의 경우 만점 부여
  * 데이터 표준관리(데이터 표준 정의 조건 및 표준 적용률 100% 충족), 데이터 구조관리(데이터 구조 산출물 관리 조건 및 현행화율 100% 충족), 데이터 연계관리(관리 정보 정의 및 송·수신 내역 관리 조건 모두 충족), 데이터 품질진단(진단기준 충족률 100% 및 업무규칙 20개 이상 설정·진단), 데이터 오류율(오류율 0%)

※ '개선조치 이행률 지표로써 올해 인정받을 수 있는 개선과제'의 이행 기한의 완료일은 기관별 자체평가 마감일까지로 설정해야 인정되므로 개선계획수립 시 유의해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와 공간정보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국토부 소관) 대상 DB가 중복되는 경우 공간정보 품질진단 및 오류 데이터 건수를 합산하여 해당 DB의 점수 산정

※ 공간정보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국토부 소관)에서만 평가대상 DB로 선정된 경우 공간정보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결과(품질 오류율)를 해당 DB의 점수로 산정하고, 지표점수 산정 시 반영

※ 공간정보 DB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에 대한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문을 통해 별도 안내 예정

■ **기준2. 개선조치 이행률**

- 데이터 품질 개선계획에 따라 개선이 완료되었는지 여부 평가

※ 데이터 품질 점검·개선 내역 등 개선조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고 및 관리하여야 함

- 평가 산식 :

· 점수 = $\frac{\text{수행완료 과제 건수}^{b)}}{\text{개선계획 과제 건수}^{a)}}$ X **배점**

a) '25년 개선계획의 개선과제 중 과제완료 시점이 '25.10.1.~'26.10.31.인 과제 건수

+ '26년 개선계획의 개선과제 중 완료시점이 '26.10.31.까지인 과제 건수

b) a)의 개선계획의 개선과제 건수 중 '26.10.31.까지 개선 완료된 과제 건수

[제출자료]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 아래의 자료 제출 필요

■ **(기준1)** 데이터 품질 개선계획(공문서)

■ **(기준2)** 개선조치 결과보고서(공문서)

※ 데이터 품질개선 조치결과 및 과제수행 증빙, 내부결재 등 공문서* 제출

* 기안자와 결재자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하며, 결재자는 상위 결정권자이어야 함

참고 1 데이터 품질진단 기준

구분	진단유형	진단유형 설명	DB 진단
정합성 진단	시간순서 일관성	시간순서 관계를 갖는 컬럼 간의 데이터 오류 측정	O
	선후관계 정확성	선후관계를 가지는 컬럼 간의 데이터 오류 측정	O
	논리관계 일관성	컬럼 간 논리적 일관성 오류를 측정	O
	계산식	계산값이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측정	O
	참조관계	참조하는 컬럼과 참조되는 컬럼 사이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	O
완결성 진단	글자깨짐	컬럼명, 데이터 값에 깨진 글자 또는 완성된 한글이 아닌 데이터 오류 측정	O
	공백, 특수문자	컬럼명, 데이터 값에 불필요한 공백과 특수문자가 입력된 오류 측정	O
	필수값	데이터의 특성 상 반드시 입력되어야 하는 값은 누락 없이 제공되어야 함	O
	중복데이터	DB 내 두 개 이상 테이블(또는 파일)에 존재하는 동일한(중복) 데이터의 값 일치 여부 측정	O
유효성 진단	날짜 도메인	날짜 데이터값이 유효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형식이 표준을 위배한 데이터 오류 측정	O
	번호 도메인	번호 생성 규칙을 위배한 경우 오류 측정	O
	여부 도메인	컬럼의 저장된 값이 유효값(2개의 값)의 범위를 벗어나는 데이터 오류 측정	O
	코드 도메인	원천 DB에서 표준으로 정의한 코드값 이외 데이터 오류 측정	O
	금액 도메인	금액 데이터 이외 문자가 입력 되어있는 컬럼의 데이터 오류 측정	O
	수량 도메인	수량 데이터 이외 문자가 입력되어있는 컬럼의 데이터 오류 측정	O
	율 도메인	율 데이터 이외 문자가 입력되어있는 컬럼의 데이터 오류 측정	O

참고 2 품질진단 범위 조정 및 절차

❍ 활용성 높은 주요 데이터 중심으로 품질진단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관에서 품질진단 **범위 조정 요청 시, 검토 후 범위 조정**

- **(테이블, 컬럼 제외)** 임시, 백업, 로그 기록, 뷰, 시스템관리 테이블 등에 대해 **품질진단 제외 가능**(품질진단 도구에서 사유 입력, 공문 제출 불필요)
- 과거 데이터의 단순 저장(보존), 법령이나 관련 업무 지침 변경으로 데이터 관리 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 검토 및 심의 후 진단범위 조정 가능(공문 제출 필요)

※ [붙임] 'DB 진단 범위 조정 신청서' 작성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공문으로 제출

구분		예시
데이터 범위 조정 (공문제출 필요)		▶ 과거 데이터를 기록 차원에서 단순 보존하고 있는 경우 예시) 과거 수기 기록 행정 데이터의 단순 보존 등
		▶ 법령, 지침, 고시 등의 변경이나 기관 수행 업무의 변경 등으로 데이터를 더이상 수집 및 관리하지 않고 단순 보존만 하는 경우
		▶ 삭제된 데이터를 단순 보존하는 경우 예시)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지만, 삭제된 데이터를 보존하는 경우
진단대상 테이블 및 컬럼 조정 (공문제출 불필요)	임시테이블	▶ 개발 등의 목적으로 임시 생성된 테이블 예시) _TEMP, _TMP, _TEST 등
	백업 테이블	▶ 백업의 목적으로 데이터를 중복 생성한 테이블 예시) _BAK, _BACKUP, 특정 날짜(_20250202) 등
	로그 기록 테이블	▶ 시스템의 로그를 기록한 테이블 예시) 일반적으로 _LOG 등의 명칭을 포함
	뷰 테이블	▶ 사용자에게 접근이 허용된 자료만을 제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하나 이상의 기본 테이블로부터 유도된 가상 테이블 예시) _VIEW, _VW 등
	시스템 관리 테이블	▶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저장하는 등 시스템 관리의 목적으로 생성된 테이블 예시) SYS, DB 시스템 테이블, PLAN(실행계획) 테이블 등

※ 이외 기타 사유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1600-2187)에 문의

❍ **(절차)** DB 담당자가 진단 범위 조정 신청서(붙임)를 작성해서 '기관별 자체 평가 마감' 7일 전까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공문으로 제출, 검토 및 심의 후 기관 및 DB담당자에게 최종 확정 통보(공문)

단계	진단 범위 조정 요청(공문)		검토 및 심의		최종 확정(공문)
수행 내용	테이블/컬럼 : 품질진단 도구에 사유 입력 진단범위 : 조정 신청서 작성	⇨	제외 사유 및 진단범위 조정 검토	⇨	검토 결과 기관 통보

[붙임] □ DB 진단 범위 조정 신청서

신 청 기 관	기 관 명			
	신 청 D B 명			
	담 당 자		부 서	
	연락처(전화)		이 메 일	
DB 운영 기관 정보	기 관 명			
	담 당 자		부 서	
	연락처(전화)		이 메 일	

조정 이유
(예시) 해당 DB는 25년도 법률 개정으로 인해 XX 테이블의 데이터의 형식이 변경되었음 따라서, 진단 대상 범위를 법률 개정 시점 이후로 조정하여 품질진단을 수행하고자 함

범 위 조 정 안	【조정방안 선택】 아래 방안 중 하나 이상 □ 진단대상 테이블 및 컬럼 조정 : 전체 영역 중 특정한 영역(주제영역)을 선별할 수 있는 기준 제시 - 진단하고자 하는 주제영역, 해당영역을 선택하는 사유 등 □ 진단 기간 조정 : ex) 최근 ○년 데이터 (3년, 5년 등 특정 기간으로 진단 범위 조정) □ 기타 *(예시)* *■ 진단 기간 조정* *조정 테이블 : xxxxx_tbl* *조정 기간 : 2025-05-01 ~ 현재*
신청기관 제 시 안	【조정방안 기술】 위에서 선택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예시)* *조정 테이블 xxxxx_tbl의 update_dt 컬럼값이 2025-05-01 이후인 데이터만 진단 (from xxxxx_tbl where update_dt > '2025-05-01')*

3. 분석 · 활용 영역

< 평가목적 >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 수립 및 행정·대국민 서비스 개선 추진, 데이터기반행정 역량·문화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평가

지표구성	배점							방식
	중앙	광역	기초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기타공공기관	시도교육청	
① 데이터 분석·활용 실적 및 성과	**25**	**25**	**25**	**25**	**25**	**25**	**25**	**-**
①-1 데이터 분석·정책활용 실적	10	10	15	10	10	15	10	**정량**
①-2 분석 결과의 정책활용 노력 및 성과	15	15	10	15	15	10	15	**정성**
② AI·데이터 문해력(리터러시) 교육 실적	**10**	**10**	**12**	**10**	**10**	**12**	**10**	**-**
②-1 전 직원 대상 AI·데이터 분석 교육 이수 실적	5	5	6	5	5	6	5	**정량**
②-2 AI·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 실적	5	5	6	5	5	6	5	
③ AI·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노력	**18**	**18**	**15**	**18**	**18**	**15**	**18**	**-**
③-1 데이터 분석·활용역량 진단실시	2	2	2	2	2	2	2	**정량**
③-2 AI 도입·활용 사례 및 추진 노력	8	8	5	8	8	5	8	**정성**
③-3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	8	8	8	8	8	8	8	

※ **A기관 :** 중앙, 광역, 공기업·준정부, 지방공기업, 시도교육청 / **B기관** : 기초, 기타공공기관

○ 「3-① 데이터 분석·활용 실적 및 성과」 지표

지표 정의	데이터를 수집·결합·분석하여 해당 목적에 부합하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현안 해결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 기관 정책에 활용한 실적 및 성과를 평가		
배점	**25점**	**방식**	**정량·정성**
담당자	행안부 공공데이터분석관리과 **김정훈 사무관(044-205-2287)**, **김채은 주무관(044-205-2283)**, NIA **곽성일 수석(053-230-1952)**		

[세부기준]

번호	세부기준명	방식	배점	
			A기관	B기관
1	데이터 분석·정책활용 실적	정량	10	15
2	분석 결과의 정책활용 노력 및 성과	정성	15	10

※ **A기관 :** 중앙, 광역, 공기업·준정부, 지방공기업, 시도교육청 / **B기관** : 기초, 기타공공기관

3-①-1 데이터 분석·정책활용 실적([A기관] 10점 / [B기관] 15점)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결합하여 목적에 부합하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의 정책이나 대국민 서비스 등에 활용한 실적 점검

[평가방법]

[평가기준]

- '범정부 데이터분석시스템(insight.go.kr)'에 분석사례로 등록하고 **최종 승인(등록완료)** 된 과제 건수로 평가
  ※ 분석시스템에 기관사례 등록 첨부문서의 공개/비공개를 선택하되, 비공개 시 사유 명시 필요

[필수작성 항목]
①분석기간, ②분석목적(목표), ③분석방법, ④활용데이터, ⑤분석결과, ⑥ 정책활용 결과(계획)
※ 세부 작성 예시 및 등록 방법은 '범정부 데이터분석시스템(insight.go.kr)' 등록 화면을 통해 안내

- '범정부 데이터분석시스템' 등록 시 필수 작성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첨부한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에서도 다름없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함

[점수산정]

- **평가산식 :** $\frac{\text{실적 과제 수}}{\text{목표 과제 수}} \times \text{배점}$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종 점수는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목표 과제 수 :** 정원 대비 목표치 설정 ※ 기관유형별 정원 기준 구간 상이

1) 중앙행정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정원기준	목표과제 수
~200명	2건
201~400명	4건
401~600명	6건
601~800명	8건
801~1,000명	10건
1,001명~	12건

2) 광역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시도교육청

정원기준	목표과제 수
~1,000명	3건
1,001~1,500명	6건
1,501~2,000명	9건
2,001~2,500명	12건
2,501~3,000명	15건
3,001명~	17건

3) 기초자치단체, 기타공공기관

정원기준	목표과제 수
~400명	1건
401~600명	2건
601~800명	3건
801~1,000명	4건
1,001명~	5건

< 정원기준 >

▣ 정원기준 : 2025년도 확정 정원

▷ 정원기준은 2025년도 데이터기반행정 평가를 위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라 확정된 기관의 본부(본청/본원/본사) 정원 기준으로 함

▷ 정원 변동이 필요한 기관, 조직 변경 기관, 전년도 미확정 및 신규 평가대상 기관은 정원 확정 기간 내 정원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정원 증빙자료 :** 본부(본청/본원/본사) 정원, 제외직군·직렬을 확인 할 수 있는 공식 자료

- (예시) 직제 시행규칙, 조례, 공시(ALIO, 클린아이시스템), 기관 내부결재 문서 등 정원을 확인 할 수 있는 공식자료
- (정원 필수 포함 직군·직렬) 일반직, 사무직, 전산직, 회계직, 행정직, 연구직 등
- (정원 제외 가능 직군·직렬) 공무직(시설·미화·경비 등), 상담직, 소방직 등 비사무직

▷ 정원 증빙자료 미제출 등 기관의 사유로 정원이 **미확정된 경우 해당 기관 유형의 최대 정원 구간을 적용**

※ 2025년도 확정 정원 확인 방법, 정원 확정 요청 절차 및 기한 등은 5월중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평가시스템)' 공지사항 등을 통해 별도 안내 예정

[실적 인정기간] 2025년 11월 1일 ~ 2026년 9월 30일

■ 분석 및 정책활용 결과(계획)에 대한 내부결재(증빙자료) 완료일이 실적 인정기간 내에 있어야 함(공식문서 내 정확한 날짜 명시)

■ **시스템에 최초 등록요청**된 분석과제 중 **'26.9.30일까지 승인**을 받아 최종 등록완료된 분석과제만 실적 인정

※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26년 10월 16일까지 보완을 완료하고 승인된 등록완료 과제만 실적으로 인정

[제출방법]

■ 제 출 처 : 범정부 데이터분석시스템(insight.go.kr)

■ 제출자료

① 결과물(필수작성 항목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실제 보고서 1건 이상)

② 증빙자료(내부결재문, 외부시행문, 메모보고 등 시행처와 시행일을 알 수 있는 공문서 1건 이상)

※ ① ② 모두 제출하여야 실적으로 인정

■ 등록경로 : 범정부 데이터분석시스템(insight.go.kr)→로그인→분석사례→분석사례 등록

※ 구체적인 분석사례 등록 방법은 범정부 데이터분석시스템 공지 사항 및 사용자 매뉴얼 참고

[참고사항]

[주요 불인정 사례]

o 소속기관의 실적을 제출한 경우

※ 소속기관이 데이터기반행정 평가대상이 아니고, 기관 정원에 소속기관을 포함한 경우 가능

o 지난 연도 실태점검에 제출하여 인정받은 과제와 동일한 주제의 실적을 제출한 경우

※ 활용 데이터나 정책활용 내용이 이전과 달라진 경우에는 제출 가능

o 필수 작성항목이 제출자료(결과보고서, 공문 등)에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o 공모사업, 지원사업 등을 통해 타 기관의 분석 과제를 용역사업으로 수행한 경우는 타 기관의 실적으로만 인정

※ (예시) NIA 공공빅데이터분석사업의 경우 NIA 예산이 집행되었더라도 수요기관의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분석사업이므로 수요기관 실적으로 인정(NIA 실적 불인정)

o 동일 주제를 다수 건으로 나누어 실적으로 제출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적은 1건만 인정

o 직접적인 데이터 분석이 아닌 정보시스템 구축, 연구성 과제, 설문조사 등의 과제를 제출한 경우

※ 상기 과제 내에 데이터 분석 과정과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만을 구체적으로 발췌하거나 별도의 분석 과정을 거쳐 범정부 데이터분석시스템 입력 요건에 맞게 등록 시 인정

o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의 타 지표(3-1-2 지표는 제외)에 동일한 실적을 제출한 경우

※ 동일 실적을 여러 지표에서 중복 인정 불가하므로 지표별로 구분하여 제출

[유의사항]

o 실적 인정기간 내(2025년 11월 1일 ~ 2026년 9월 30일) 분석 수행과 정책 활용을 모두 완료한 건만 원칙적으로 본 지표의 실적으로 인정. 단,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과제는 인정

① 실적 인정기간 이전의 분석과제에 대한 정책활용 성과를 제출하는 경우, 지난 실태점검에서 정책활용 실적으로 인정받지 않은 분석 과제 중 분석수행 기간이 '24년 이후(2024.1.1.~) 과제만 인정

② 정책활용이 시점상 계획 단계일 때, 예산 반영이나 구체적인 시행시기 등을 담은 보고서와 내부결재를 득한 과제만 인정

3-①-2 분석 결과의 정책활용 노력 및 성과([A기관] 15점 / [B기관] 10점)
기관이 데이터 기반의 분석을 적절히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활용한 일련의 과정과 핵심적인 성과에 대한 정성평가

[평가방법]

[평가기준]

■ 기관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활용한 실적 및 노력의 수준에** 대해 **15점 만점*** 기준으로 정성평가

* 기초,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10점 만점 기준

o 데이터 분석 주제의 발굴, 분석 수행, 정책 활용,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수행된 수준

o 데이터 기반의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기관의 정책이나 대민 서비스 개선 등에 적절히 활용하고 얻은 혹은 기대하는 성과의 수준, 기관 내 노력과 활동의 수준 등

[실적 인정기간] 2025년 11월 15일 ~ 2026년 9월 30일

[제출 방법]

■ 제 출 처 :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평가시스템)

■ 제출자료

① 데이터 결과의 정책활용 노력 및 성과 보고서 (**[첨부6]** 작성양식 참고)

② 보고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 ①번 문서([첨부6] 작성양식)의 내용이 공식 활동임을 증빙할 수 있는 결재문서

㉯ ①번 문서([첨부6] 작성양식)의 내용의 사실을 증빙하는 실제 결과물 일체*

* 공식 계획 및 결과보고서, 내부결재 문서, 사진, 캡쳐, 보도자료 등

㉰ 분석결과보고서, 정책활용 보고서 등

※ **증빙자료는 ㉮,㉯,㉰ 모두 제출해야 실적 인정** (모든 증빙을 한 파일로 묶어 PDF 형태로 제출)

■ 등록경로 : ㉠공공데이터포털 통합로그인(all.data.go.kr) → 기관시스템 연계 →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 → 데이터기반행정평가

㉡ std.sharedata.go.kr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 → 데이터기반행정평가

[참고사항]

[주요 불인정 사례]

o 실적 인정기간('25.11.15.~'26.9.30.) 내 수행한 정책 활용 노력과 성과가 아닌 경우

※ 증빙자료 공식 문서 내 정확한 수행기간이 확인되어야 함

o 보고서 작성 없이 증빙자료만 제출하거나 증빙자료 없이 보고서만 제출한 경우

※ 보고서나 증빙자료 둘 중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o 결과물과 증빙문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o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의 타 지표(3-1-1 지표는 제외)에 동일한 실적을 제출한 경우

※ 동일 실적을 여러 지표에서 중복 인정 불가하므로 지표별로 구분하여 제출

[평가 착안사항]

구분		착안사항
노력 및 성과		o 데이터 분석 주제의 발굴, 분석 수행, 정책 활용,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체계적인가 o 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관의 현안 해결, 중점사업, 주요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는가
주요 과제 분석·활용	추진배경 및 목표	o 과제 추진의 필요성이 명확하고 정책적 시급성이 인정되는가 o 기관 및 사회의 현안 해결, 서비스 개선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목적이 제시되었는가 o 분석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범위와 대상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가
	활용 데이터	o 활용한 데이터가 분석 목표 및 과제 해결에 적합한가 o 분석을 수행하기에 데이터의 양이 충분하고, 품질이 적절한가 o 데이터의 출처가 신뢰할 수 있으며 최신성이 확보되었는가
	분석과정	o 자체분석을 실시한 경우 분석 목표에 따라 적절한 분석기법이 활용되었는가 o 범정부 데이터분석시스템(표준분석모델, 온라인 분석모델 등)을 활용한 경우, 해당 모델이 분석과제에 적절하게 적용되었는가 o 데이터 편향, 오류 등 분석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였는가 o 분석결과가 검증 가능하며, 재현 가능하도록 명확히 기술되었는가 o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 등 단순 통계 조사에서 벗어나 심층적인 데이터 분석이 수행되었는가
	분석 결과	o 추진배경 및 목표에 부합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는가 o 분석 결과가 정책적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o 분석 결과의 해석이 타당하며, 논리적인 근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명확하게 설명되었는가 o 분석 기법과 활용 데이터가 실제로 분석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었는가
	정책활용 성과	o 분석 결과가 과학적 의사결정, 업무자동화, 사회문제해결, 행정·대민서비스 개선 등 기관의 주요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는가 o 정책활용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는가 o 정책 활용의 성과를 정량적으로도 측정 가능하고, 이를 통해 개선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가
운영 및 개선 방안		o 정책활용 성과의 지속성 및 확산 가능성이 있는가 o 분석 결과의 정책 반영 후 효과를 측정·분석하기 위한 사후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o 사후관리 방안 및 예산 수립방안이 수립되어 있으며 실현 가능한가

○ 「3-② AI · 데이터 문해력(리터러시) 교육 실적」 지표

지표 정의	전직원 대상 AI·데이터 교육 수료, AI·데이터분석 전문가 양성을 통해 기관의 AI·데이터기반행정 역량강화 노력을 평가		
배점	**A기관 : 10점 / B기관 : 12점**	**방식**	**정량** (평가시스템에 자료제출 필요)
담당자	행안부 공공인공지능혁신과 **박성희 주무관(044-205-2289)**, NIA **채정민 선임(053-230-1592), 헬프데스크(053-230-1956)**		

[세부기준]

번호	세부기준명	A기관	B기관
1	전 직원 대상 AI·데이터 분석 교육 이수 실적	5	6
2	AI·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 실적	5	6

※ **A기관 :** 중앙, 광역, 공기업·준정부, 지방공기업, 시도교육청 / **B기관** : 기초, 기타공공기관

3-②-1 전 직원 대상 AI·데이터 분석 교육 이수 실적([A기관] 5점 / [B기관] 6점)

[평가방법]

[평가기준]

■ 전 직원 대상 AI·데이터 분석 관련 교육 이수 실적(이수율)에 대해 평가

[점수산정]

■ **평가산식 :** $\frac{AI\text{·데이터분석교육수료자}}{\text{기관정원*}}$

* **기관 정원 : 2025년도 확정 정원**(본부(본청/본원/본사) 정원)

-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내 정원은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며 상세 내용은 편람 49페이지 '정원 기준' 참고

■ **평가배점**

평가 배점	A기관	5점	3점	1점	0점
	B기관	6점	4점	1점	0점
교육 이수율* (정원 대비)		65% 이상	45% 이상	25% 이상	25% 미만

* 교육이수율: 소수점 이하 절사

[실적 인정기간] 2025년 11월 15일 ~ 2026년 9월 30일

[제출방법]

■ 제 출 처 :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평가시스템)

■ 제출자료

① 교육실적 명단(엑셀)

※ 아래 참고사항의 [증빙자료 작성 양식]에 따라 작성

② 증빙자료

㉮ 기관 자체 교육일 경우 내부 품의문서(교육계획, 교육결과보고), 참석사인본, 사진 등 증빙(PDF)

㉯ 외부 교육기관 수료인 경우 교육이수증 제출

※ ①②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①은 엑셀파일, ②는 한 파일로 묶어 PDF 형태로 제출

[증빙자료 작성 양식]

o **전 직원 대상 AI·데이터 분석 교육 이수자 명단**(※엑셀파일로 제출)

순번	부서명	성명	직급	교육기관명	교육명	수료일

※ 교육이수자는 동일인인 경우 1인(1건)만 인정 ※ 엑셀 파일명에 "기관명_정원00명,_수료자00명"을 기재

■ 등록경로 : ㊀공공데이터포털 통합로그인(all.data.go.kr) → 기관시스템 연계 →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 → 데이터기반행정평가
㊁ std.sharedata.go.kr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 → 데이터기반행정평가

[참고사항]

[주요 불인정 사례]

o 사업설명회, 컨퍼런스 등 사업관리를 위한 교육
o 실적 인정기간 내 수료한 교육이 아닐 경우
o 확정 정원(본부(본청/본원/본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 확정 정원 기준으로 교육 이수자 명단을 제출해야 함
o '데이터기반행정'이 아닌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 실적을 제출하는 경우

[교육 구분]

■ **'전 직원 대상 교육'만 해당하며, '전문교육'은 3-②-2 지표에서 인정**

구 분	정 의	교육 내용	예시
① 전 직원 대상 AI·데이터 분석 교육	▸ AI 개념 및 생성형 AI 도구의 이해와 활용 중심 교육 및 데이터 문해력(리터러시) 교육	▸ ChatGPT, 생성형 AI 등 업무 활용 툴 교육 (AI 툴 이해·활용 실습 교육) ▸ 보고서 작성, 정보 검색 등 행정 적용 사례 ※ 단순 이론, 동향 소개만이 아닌 실무와 관련된 AI·데이터 분석 활용·실습 교육 권장	▸ AI 트렌드, AI 윤리, AI 툴 활용 보고서 작성 ▸ 데이터의 이해, 데이터기반 의사결정 이해 등 ▸ 행안부 공공 AI역량 트랙1* 과정의 과목 * 나라배움터, 역량강화학습지원 시스템(databus.kr) 콘텐츠 활용 권고
② 전문교육	▸ AI·데이터 기술 이론과 실습을 통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실무역량 강화 교육	▸ 파이썬, 머신러닝, 딥러닝(알고리즘, 코딩) ▸ 데이터 수집·분석·시각화 도구 등 ▸ 문제 해결형 실습·구현 능력 강화	▸ AI 개발 (머신러닝, 딥러닝, RAG 등), AI서비스 기획, ▸ AI·데이터분석해커톤, ▸ 데이터 분석도구 (Python, R, SQL) 실습 등 ▸ 행안부 공공 AI역량 트랙2, 3, 4 과정의 과목(AI챔피언 종합교육과정 등)

3-②-2 AI·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 실적([A기관] 5점 / [B기관] 6점)

[평가방법]

[평가기준]

■ 기관의 AI·데이터 분석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양성 실적 평가

① **(AI챔피언 인증 및 자격증)** AI챔피언(그린, 블루, 블랙), AICE Associate, 데이터분석전문가(ADP), 데이터분석준전문가(ADsP), 빅데이터분석기사 등 관련분야 자격만 인정

※ 컴퓨터활용, 정보처리기사, 네트워크분석기사 등은 불인정

② **(전문교육)** 전 직원 대상 AI·데이터 문해력(리터러시), 동향 소개 등 기본 이해 수준의 교육은 불인정하며 **3일 이상(1일 최소 4시간 이상 한정) 집합교육(대면·실시간 비대면) 이수자만 인정함**

[점수산정]

■ **평가산식 :** 「AI챔피언 인증 또는 자격증① 취득자」+「전문교육② 이수자」

※ 양성 인원 수에 대하여 아래의 평가배점 기준별 구간에 따라 점수 부여
※ 1인이 자격증 취득 및 교육이수 동시 충족 시 중복 인정 불가

■ **평가배점**

평가 배점 / 정원 규모*	A기관	5점	3점	1점	0점
	B기관	6점	4점	1점	0점
374명 이하		1명	-	-	미양성
375명부터 624명까지		2명	1명	-	
625명부터 749명까지		3명	2명	-	
750명부터 874명까지		4명	2명	1명	
875명부터 1,124명까지		5명	3명	1명	
1,125명부터 1,249명까지		6명	3명	1명	
1,250명부터 1,374명까지		6명	3명	1명	
1,375명부터 1,624명까지		7명	4명	1명	
1,625명부터 1,749명까지		8명	4명	1명	
1,750명부터 1,874명까지		8명	4명	1명	
1,875명 이상		10명	5명	1명	

* **기관 정원 : 2025년도 확정 정원**(본부(본청/본원/본사) 정원)
-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내 정원은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며 상세 내용은 편람 49페이지 '정원 기준' 참고

[실적인정 기간] 2025년 11월 15일 ~ 2026년 9월 30일

※ 전문교육 이수증(수료증), AI챔피언 인증서 및 자격증 확인서 등에 기입된 취득 날짜가 실적인정 기간 내여야 함

[제출방법]

■ 제 출 처 :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평가시스템)

■ 제출자료
① AI챔피언 인증자·AI·데이터분석 자격증 취득자 명단(엑셀)
② AI·데이터분석 전문교육 이수자 명단
③ 증빙자료
㉮ 자격증 취득자 : 자격증 사본 제출(PDF)
㉯ 전문교육 이수자 : 교육이수증, 오프라인 교육임을 확인하기 위해 이수한 교육안내물
※ ①②③을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①②는 엑셀파일, ③은 한 파일로 묶어 PDF 형태로 제출

[증빙자료 작성 양식]

① AI·데이터분석 자격증 취득자 명단(※엑셀파일로 제출)

순번	부서명	성명	직급	자격증 명칭	자격증 번호	취득일자

* (별첨 증빙자료) 순번대로 **자격증 사본 제출(행안부 전문인재 인증자는 명단만 제출)**

② AI·데이터분석 전문교육 이수자 명단(※엑셀파일로 제출)

순번	부서명	성명	직급	교육명	수료 번호	교육일자	수료일

* (별첨 증빙자료) 순번대로 **교육 이수증** 및 오프라인 교육 확인을 위한 **교육 안내물(소개자료) 제출**

※ 상기 양식에 따라 ① 자격증 취득자 명단, ② 전문교육 이수자 명단을 작성하여 1개의 엑셀 파일 안에 시트(sheet)로 구성하여 제출

■ 등록경로 : ㉮공공데이터포털 통합로그인(all.data.go.kr) → 기관시스템 연계 →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 → 데이터기반행정평가
㉯ std.sharedata.go.kr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 → 데이터기반행정평가

[참고사항]

[주요 불인정 사례]
o 사업설명회, 컨퍼런스 등 사업관리를 위한 교육
o 실적 인정기간 내 수료한 교육이 아닐 경우

[교육 구분]
■ **'전문교육'만 해당하며, '전 직원 대상 교육'은 3-②-1 지표에서 인정**

구 분	정 의	교육 내용	예시
① 전 직원 대상 AI·데이터 분석 교육	▸ AI 개념 및 생성형 AI 도구의 이해와 활용 중심 교육 및 데이터 문해력(리터러시) 교육	▸ ChatGPT, 생성형 AI 등 업무 활용 툴 교육 (AI 툴 이해·활용 실습 교육) ▸ 보고서 작성, 정보 검색 등 행정 적용 사례 ※ 단순 이론, 동향 소개만이 아닌 실무와 관련된 AI·데이터 분석 활용·실습 교육 권장	▸ AI 트렌드, AI 윤리, AI 툴 활용 보고서 작성 ▸ 데이터의 이해, 데이터기반 의사결정 이해 등 ▸ 행안부 공공 AI역량 트랙1* 과정의 과목 * 나라배움터, 역량강화학습지원시스템 (databus.kr) 콘텐츠 활용 권고
② 전문교육	▸ AI·데이터 기술 이론과 실습을 통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실무역량 강화 교육	▸ 파이썬, 머신러닝, 딥러닝(알고리즘, 코딩) ▸ 데이터 수집·분석·시각화 도구 등 ▸ 문제 해결형 실습·구현 능력 강화	▸ AI 개발 (머신러닝, 딥러닝, RAG 등), AI서비스 기획, ▸ AI·데이터분석해커톤, ▸ 데이터 분석도구 (Python, R, SQL) 실습 등 ▸ 행안부 공공 AI역량 트랙2, 3, 4 과정의 과목(AI챔피언 종합교육과정 등)

참고 행안부 '공공 AI역량 트랙' 및 AI챔피언 역량인증

□ (공공 AI역량 트랙) 데이터분석 위주의 기존 교육을 전면 개편하여 AI·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대상별·수준별 4개 과정 개발 및 교육 운영('25.6.~)

※ 개발한 **AI·데이터 분석 교육 콘텐츠**는 나라배움터, 데이터역량강화학습시스템(databus.kr)에 **탑재·개방**

< 행정안전부 4단계 공공 AI역량 트랙 >

보편역량	인재양성		
(트랙1) AI활용	(트랙2) AI융합	(트랙3) AI개발	(트랙4) AI마스터(전문인재)
전 직원	실무자(비IT 직렬) AI챔피언 그린(Basic)	IT담당 AI챔피언 블루(Practice)	IT담당(고급) AI챔피언 블랙 (Pro)'26년 예정
AI 기본 이해와 활용역량	AI도구를 활용한 AI 서비스 기획·구현 역량	AI모델 개발과 데이터 분석 기술 역량 교육	고급 AI기술 이해, AI 거점리더 양성

< (참고) 2025년 행정안전부 AI·데이터 분석 교육과정 >

(트랙1) AI활용	(트랙2) AI융합	(트랙3) AI개발	(트랙4) AI마스터
전직원 대상	실무자 대상	IT담당 대상	IT담당(고급) 대상
① AI 리터러시	⑤ 노코드 데이터 분석	⑧ AI 머신러닝, 딥러닝의 이해 및 활용	⑬-1. 분석기술교육 ⑬-2. 생성형AI 기술교육 ⑬-3. 개인 프로젝트 ⑬-4. 팀 프로젝트 ⑬-5. 특별교육 및 AI리더십 ⑬-6. 강의·코칭방법
② 데이터 리터러시	⑥ AI 행정 융합 기획	⑨ AI와 파이썬 활용 데이터 분석 실습	
③ 관리자 AI 리더십	⑦ 노코드 AI 서비스 구현	⑩ 융합 데이터 분석 사례교육	
④ 생성형 AI활용 업무 효율화	⑧ AI 머신러닝, 딥러닝 이해 및 활용	⑪ 공공 LLM 프롬프트 해커톤	
		⑫ LLM 미니 프로젝트	

※ 2026년 교육과정은 AI·데이터 분석 기술발전을 반영하여 최신화, 개편될 수 있음

□ (AI챔피언 역량인증) 단순 AI 활용자가 아닌, 공공행정 현장에서 AI로 업무를 자동화하고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해결 역량을 갖춘 실무 인재에 대해 역량 인증

< 공공 AI역량 트랙과 AI챔피언 연계 >

교육과정	육성목표	AI챔피언 연계	역 할
[트랙2] AI 융합	AI융합 실무자	그린	AI 전환 아이디어를 정책·서비스 기획안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실무 기획자 역할
[트랙3] AI 개발	AI전환 실행자	블루	AI 전환사업을 기획·설계하고, PoC부터 구축·준공까지 실무 전 과정을 이끌어가는 실행 중심 역할
[트랙4] AI 마스터	거점리더	블랙	기관의 핵심업무에 대한 AI 전환사업을 기획·운영하고, 다부처 융합형 AI 전환 과제에 대한 실무 협의·자문·내부 교육을 수행하는 거점 리더 역할 ※ 2026년 신설 예정

□ (AI챔피언 인증방식) ① 교육과정형, ② 자기주도형, ③ 자격연계형 3가지 방식*으로 인증 부여

* ① 교육과정형: 종합교육 + 수행평가를 통해 인증
② 자기주도형: 수행평가만 참여하여 인증
③ 자격연계형: 지정 자격증 취득 + 지정 과목 이수 시 인증

※ 지정자격증: 데이터분석전문가(ADP), 빅데이터분석기사, AICE Associate

< AI챔피언 종합교육과정 학습내용·달성 수준>

학습분야	학습 내용 · 키우는 역량
① 생성형 AI 활용	행정문서·보고서·홍보자료를 작성 ⇒ AI활용하여 문서·콘텐츠 생산 역량 확보
② 데이터 분석	공공데이터 기반 패턴 분석·인사이트 도출 ⇒ 정책 개선안을 제시하는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
③ 서비스 구현	AI·데이터 도구로 행정 서비스 프로토타입 제작 ⇒ 서비스/자동화 솔루션 구현 역량 습득

※ 2026년 학습내용은 AI 기술발전을 반영하여 최신화, 개편될 수 있음

○ 「3-③ AI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노력」 지표

지표 정의	기관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역량진단 및 개선, AI 도입·활용, 문화 조성 등의 다양한 시책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		
배점	**A기관 18점/ B기관 15점**	**방식**	**정량·정성** (평가시스템에 자료제출 필요)
담당자	**(기준①)** 행안부 공공인공지능혁신과 **박성희 주무관(044-205-2289)**, NIA **조용탁 수석(053-230-1546)**, **헬프 데스크(053-230-1933)** **(기준②)**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정책과 **박선 서기관(044-205-2711)**, **남궁지윤 사무관(044-205-2712)**, NIA **김재범 주임(053-230-1634)** **(기준③)** 행안부 공공지능데이터정책과 **정선영 주무관(044-205-2476)**, NIA **최현미 수석(053-230-1597)**		

[세부기준]

번호	세부기준명	방식	배점	
			A기관	B기관
1	데이터 분석·활용역량 진단실시	정량	2점	2점
2	AI 도입·활용 사례 및 추진 노력	정성	8점	5점
3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	정성	8점	8점

3-③-1 (정량)데이터 분석·활용역량 진단실시(배점 2점)

기관의 AI 및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한 역량 진단 추진 실적 평가

[평가방법]

[평가기준]

■ 기관 정원*의 50% 이상 또는 100명 이상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진단 실시 여부

* **기관 정원 : 2025년도 확정 정원**(본부(본청/본원/본사) 정원)

-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내 정원은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며 상세 내용은 편람 49페이지 '정원 기준' 참고

o 2026 범정부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진단 가이드라인* 제2장을 참고하여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역량진단 가이드라인 : DATACAPA(datacapa.go.kr)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제공

o 진단결과 분석 보고서에는 진단방식*, 진단점수, 진단점수 산출 방식, 역량 수준, 취약 역량 분석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보고서는 상기 항목을 포함한 자유양식으로 작성

* 진단방식 : DATACAPA를 통한 역량 진단, 기관 자체진단 체계 활용, 용역업체를 통한 진단 등

[실적 인정기간] 2025년 11월 15일 ~ 2026년 9월 30일

[제출방법]

■ 제 출 처 :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평가시스템)

■ 제출자료 : ① 역량진단 추진을 증빙할 수 있는 내부결재 등 공식 문서
② 진단결과 분석보고서
- DATACAPA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 설문 문항 자료 포함하여 제출
※ ①, ②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증빙은 한 파일로 묶어 PDF 형태로 제출
※ 보고서 파일명과 본문에 "기관명_정원00명,_진단대상수00명_진단참여자수00명"을 기재

■ 등록경로 : ㉮공공데이터포털 통합로그인(all.data.go.kr) → 기관시스템 연계 →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 → 데이터기반행정평가
㉯ std.sharedata.go.kr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 → 데이터기반행정평가

[참고사항]

['데이터분석활용 역량진단 도구'(행정안전부) URL]

o (외부망 접속 시) datacapa.go.kr
(행정망 접속 시) intra.datacapa.go.kr

[주요 불인정 사례]

o 진단 기간 도과, 진단 방식 근거 등 미제출 시 진단 시행 불인정
o 응답자 수가 기관 정원의 50% 이상 또는 100명 이상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3-③-2 (정성)AI 도입·활용 사례 및 추진 노력([A기관] 8점, [B기관] 5점)

AI 도입·활용을 통해 행정업무 혁신, 대국민 서비스 제고, 사회문제 해결 등 서비스 개선과 기관(직원) 내부 업무에 활용 등 추진 사례 및 노력에 대해 정성적으로 평가

[평가방법]

※ **A기관 :** 중앙, 광역, 공기업·준정부, 지방공기업, 시도교육청 / **B기관** : 기초, 기타공공기관

[평가기준]

■ 각 기관의 AI 도입·활용을 통한 서비스 제고 등 노력 수준을 **8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

- 아래 유형 및 예시를 참고하여 **기관이 대표하는 실적을 선별하여 최대 3건 제출**

※ 구축·도입 및 활용의 구체적 계획(예산, 추진내용, 일정 등)이 수립된 경우에도 실적으로 제출 가능

<table>
<tr><th>유형</th><th>예시</th></tr>
<tr><td>AI를 활용한 시스템(서비스) 구축·운영</td><td>o AI 기술을 도입·활용한 특화 서비스, 기관의 현안(사회문제) 해결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
<table>
<tr><td>대국민 서비스</td><td>▪ 개인 맞춤형 정보 제공 및 추천 서비스, 지능형 검색 및 상담 서비스, 실시간 알림·안내 서비스 등</td></tr>
<tr><td>현안(사회문제) 해결</td><td>▪ 재난·안전·복지·환경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모니터링·예측·대응 서비스 등</td></tr>
</table></td></tr>
<tr><td>기관 행정업무 내 AI 활용</td><td>o 범정부 AI 공통기반, 생성형 AI 등을 활용한 기관(직원)의 행정업무 생산성·효율성 향상, 창의적 업무환경 조성 지원 등
※ 보고서 초안 작성, 번역, 기초자료 조사·분석 등 기관 내부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table>
<tr><td>특화 서비스</td><td>▪ 업무에 특화되어 행정 처리를 지원하는 분석·선별·예측 서비스, 위험·부정 등 방지를 위한 감지·심사 서비스 등</td></tr>
</table></td></tr>
</table>

[실적인정 기간] 2025년 11월 15일 ~ 2026년 9월 30일

[제출방법]

■ 제 출 처 **:**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평가시스템)

■ 제출자료

① AI 도입·활용 사례 및 추진 보고서 (**[첨부7]** 작성양식 참고)

② 보고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공식 결재 및 보고 문서, 사진 등)

※ 모든 증빙을 한 파일로 묶어 PDF 형태로 1부 제출

■ 등록경로 : ㊀공공데이터포털 통합로그인(all.data.go.kr) → 기관시스템 연계 →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 → 데이터기반행정평가

㊁ std.sharedata.go.kr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 → 데이터기반행정평가

[참고사항]

[주요 불인정 사례]

- o 실적인정 기간('25.11.15.~'26.9.30.) 내 실적이 아닐 경우
- o 보고서(결재문서) 작성 없이 증빙자료만 제출하는 경우
- o AI 기술의 도입이나 활용 없이 단순한 데이터 분석 서비스인 경우
- o 정례적인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인 경우
- o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의 타 지표에 동일한 실적을 제출 한 경우

※ 동일 실적을 여러 지표에서 중복 인정 불가하므로 지표별로 구분하여 제출

[평가 착안사항]

구분	착안사항
AI를 활용한 시스템(서비스) 구축·운영	o AI를 활용한 시스템(서비스)의 구축 추진배경 및 필요성 등이 적절한가 o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추진되었는가(또는 법령 개정·정비의 노력이 있는가) o 범정부 AI 공통기반, 생성형 AI 도입·활용, 서비스에 활용하는 내외부 데이터 등이 서비스 목적 및 환경에 맞게 검토되어 적용되었는가 o AI 도입·활용 결과에 대한 수혜자(국민, 업무담당자 등)의 만족도나 효과성(활용도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는가(표창, 경진대회 수상 등) o 공공부문의 확산을 위해 타 시스템(서비스)과 연계, 제공 서비스에 대한 안내·공유 등 노력하였는가 o 구축, 고도화,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의 예산확보와 계획수립 등에 대한 이행 노력이 있는가 o AI민주정부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에 포함된 과제로서 AI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서비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기관 행정업무 내 AI 활용	o 보고서 초안 작성, 번역, 기초자료 조사·분석 등 기관 내부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능형업무관리플랫폼 연계, 생성형 AI 등 기관 차원의 지원이 있는가 o 효과적인 업무 활용을 위한 가이드 안내, 이용현황 확인, 활용 대표사례 선정·공유 등 체계적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o 내부데이터(자료)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보안 규정·가이드를 준수하고 있는가 o AI 민주정부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에 포함된 과제로서, 행정기관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AI를 활용하는가

3-③-3 (정성)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배점 8점)

기관에서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한 다양한 노력에 대해 평가

[평가방법]

[평가기준]

■ 기관에서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한 다양한 시책* 노력을 **8점 만점** 기준으로 정성평가

- 아래 유형 및 예시를 참고하여 **기관이 대표하는 실적을 선별하여 최대 4건 제출**

유형	예시
기반 조성	o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규정 정비, 절차 및 제도 개선 o 데이터기반행정 전담 인력 증원, 예산확보 o 기관 내 성과지표에 AI·데이터 관련 지표 신설 등 o 데이터 분석을 위한 인프라(시스템·도구) 구축 또는 고도화
문화 조성 및 성과 확산	o 공모전, 경진대회, 설명회, 세미나 등 각종 행사 개최 o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사례 o 관련 성과 보도자료 배포 등 성과 홍보·확산 o 우수사례 공유회, 사례집 발간 등
AI·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의 지원 노력	o AI챔피언 등 AI·데이터 인재에 대한 인센티브 등 활동지원 ※ (예) 희망보직 배치, 중요직무급 지급, AI 전문직위, 심화교육 지원, AI서비스 사용권 제공 등 o AI·데이터 관련 연구모임 등 운영 실적 o AI·데이터 전문인력(AI챔피언 등)이 기관 여건에 맞는 자체 개발 교육 추진 실적(교육과정 개설, 교육 실시 등) o AI·데이터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및 관련 전문인력 채용 등
기타	o 상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의 여건·특성을 고려한 기타 노력

[실적인정기간] 2025년 11월 15일 ~ 2026년 9월 30일

[제출방법]

■ 제 출 처 :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평가시스템)

■ 제출자료 : 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 보고서 (**[첨부8]** 작성양식 참고)
② 보고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공식 결재 및 보고 문서, 사진 등)
※ 모든 증빙을 한 파일로 묶어 PDF 형태로 1부 제출

■ 등록경로 : ㊀공공데이터포털 통합로그인(all.data.go.kr) → 기관시스템 연계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 → 데이터기반행정평가
㊁ std.sharedata.go.kr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 → 데이터기반행정평가

[참고사항]

[주요 불인정 사례]

o 실적기준일('25.11.15.~'26.9.30.) 내 실적이 아닐 경우
※ 공식 문서 내 정확한 날짜가 명시되어야 함

o 보고서 작성 없이 증빙자료만 제출하는 경우

o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의 타 지표에 동일한 실적을 제출한 경우
※ 동일 실적을 여러 지표에서 중복 인정 불가하므로 지표별로 구분하여 제출

[평가 착안사항]

유형	착안사항
공통	o 문화 조성, 성과확산, 관리체계 마련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이루어졌는가 o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제도·체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되었는가 o 특정 부서 또는 담당자 중심이 아닌 기관 차원의 협업과 참여를 통해 추진되었는가 o 기관의 여건, 데이터 환경, 업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시책이 추진되었는가 o 추진 사례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는가
기반 조성	o 규정 정비, 절차 및 제도 개선, 조직 개편(전담인력 증원 등) 등의 제도적인 노력이 기관의 데이터 활용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었는가 o 일회성 예산이 아닌, 데이터 플랫폼 유지보수나 데이터 구매 등 지속 가능한 예산이 확보되었는가 o 기관장/부서장의 성과지표(평가)에 AI·데이터 관련 항목이 실제 반영되고 있는가 o 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시스템, 도구, 플랫폼 등 인프라가 기관 업무에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구축·고도화 되었는가
문화 조성 및 성과 확산	o 공무원 및 직원의 AI·데이터기반행정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이 추진되었는가 o 공모전, 경진대회, 설명회 등 각종 행사가 많은 참여와 관심을 끌었는가 o 기관 간 협력, 간담회 등 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한 협력 체계가 구축되었는가 o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성과·사례가 조직 내외로 공유·확산되었는가 o 단순 홍보가 아닌 실제 활용 및 참여를 촉진하는 활동이 이루어졌는가
AI·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의 지원 노력	o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의 지원이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제공되었는가 o AI챔피언 등 실무 인재를 위한 중요직무급 지급, 전문직위 지정, 근무성적 평정 가점, 희망보직 배치 등 실질적 우대책을 지원하는가 o 전문성 확보와 실제 업무활용을 위한 AI·데이터 분석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을 채용하였는가 o AI·데이터 관련 연구모임 구성을 독려하고 연구모임 운영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하였는가 o AI 실무 인재(내부전문가)가 강사가 되어 기관 교육을 실시하거나 맞춤형 활용법을 동료에게 전수한 실적이 있는가 o AI·데이터 관련 자격증 취득 등 기관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있었는가

4. 공유 영역

< 평가목적 >

모든 기관이 보다 손쉽고 빠르게 필요한 데이터를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공유·활용 수준 및 노력을 평가

지표구성	배점							방식
	중앙	광역	기초	공기업·준정부 기관	지방 공기업	기타 공공 기관	시도 교육청	
① 데이터 공유 실적	**15**	**15**	**15**	**15**	**15**	**15**	**15**	**정량**
①-1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데이터 공유 실적	**8**	**8**	**8**	**8**	**8**	**8**	**8**	
①-2 AI 친화적 행정문서 데이터 공유 실적	**7**	**7**	**7**	**7**	**7**	**7**	**7**	
② 고가치·고활용 공유데이터 발굴 노력 및 실적	**12**	**12**	**8**	**12**	**12**	**8**	**12**	**정성**
③ 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실적	**6**	**6**	**6**	**6**	**6**	**6**	**6**	**정량**
④ 메타데이터의 등록 및 관리	**8**	**8**	**10**	**8**	**8**	**10**	**8**	
⑤ 가명정보 제공 및 합성데이터 공유 실적(가점)	**건당 1점 (최대 5점)**							

※ **A기관 :** 중앙, 광역, 공기업·준정부, 지방공기업, 시도교육청 / **B기관** : 기초, 기타공공기관

○ 「4-① 데이터 공유 실적」 지표

지표 정의	행정·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제공-공유 실적 평가		
배점	15점	방식	정량
담당자	행안부 공공데이터분석관리과 **박승준 사무관(044-205-2471)**, NIA **박종엽 선임(053-230-1539)**		

[세부기준]

번호	세부기준명	방식	배점
1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데이터 공유 실적	정량	8점
2	AI 친화적 행정문서 데이터 공유 실적	정량	7점

4-①-1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데이터 공유 실적(배점 8점)

[평가방법]

[평가기준]

■ 기관이 **현안대응과 정책 결정, 행정업무 혁신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생성-가공 이후 공유한 데이터** 건수를 정량적으로 평가

- 데이터 등록 시 **메타관리시스템 기반***으로 **데이터를 생성**

* '정보시스템명', 'DB명', '테이블명', '컬럼명' 등의 메타데이터 입력 필요

< 관련 용어 설명 >

▸ (공유데이터) **공공기관이** 직무상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공공기관 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가공한 데이터

[점수산정]

■ **평가 산식 :** $\frac{\text{실적 건수}}{\text{목표 건수}} \times \text{배점}$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목표 건수 : 정원 대비 목표치 설정**

* **기관 정원 :**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내 정원은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며 상세 내용은 49페이지 참조

1) 중앙행정기관

정원기준	목표 건수
~200명	15건
201~400명	20건
401~600명	25건
601~800명	30건
801명~1,000명	35건
1,001명~	40건

2) 광역자치단체

정원기준	목표 건수
~1,000명	20건
1,001~1,500명	25건
1,501~2,000명	30건
2,001명~	35건

3) 공기업·준정부기관, 시도교육청, 지방공기업, 기타공공기관

정원기준	목표 건수
~200명	10건
201~400명	13건
401~600명	16건
601~800명	19건
801~1,000명	22건
1,001명~	25건

4) 기초자치단체

정원기준	목표 건수
~400명	10건
401~600명	12건
601~800명	14건
801~1,000명	16건
1,001명~	18건

[유의사항]

- 기존 공동활용시스템에 등록한 공유데이터와 중복 불가
- 지표 담당부서에서 품질 및 활용성 검토 후, 반려 처리될 수 있음
- 4-①-2「AI 친화적 행정문서 데이터 공유 실적」지표에 등록한 데이터와 중복 불가

[N/A 처리]

- 데이터기반행정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데이터를 취급하는 기관(행안부와 협의된 기관) → 해당 기관유형의 평균점수 적용

[실적 인정기간] 2025년 12월 13일 ~ 2026년 9월 30일

[제출방법]

- 제 출 처 : 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추후 공문 안내 예정)
- 제출자료 :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sharedata.go.kr)에서 집계하므로 별도 자료제출 불필요
- 제출기한 : 9월 30일까지 데이터 업로드를 완료하고, 10월 16일까지 행안부 검토결과에 따른 보완을 완료

※ '총괄담당자, 업무담당자' 권한인 사용자만 소속기관의 데이터 등록 가능

4-①-2 AI 친화적 행정문서 데이터 공유 실적(배점 7점)

[평가방법]

[평가개요]

- **(개요) 통계·연구보고서·사업보고서 등 비정형 문서**를 **메타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자산**으로 통합 관리하여, **AI 학습 및 과학적 행정의 기반** 마련
- **(수집목적)** 향후 **각종 공공부문 AI의 학습데이터 및 공동활용 데이터**로, **모든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행정문서 기준]

- **데이터 형식:** 텍스트 기반의 비정형 데이터만 실적으로 인정
  - 권장 형식: 텍스트형 pdf, hwpx, docx 등 (hwp, doc는 각각 hwpx, docx로 변환)
  - 제한 형식: 스캔 파일, 이미지 기반 PDF 등 텍스트 추출이 어려운 문서
    ※ 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에서 메타데이터를 입력 후 등록한 데이터만 실적으로 인정
- **파일 크기:** 개별 파일 기준 100MB 이하 등록을 권장
- **등록 권장 문서 유형**

유 형	내 용	비 고
연감·연차 보고서	공공기관이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일정 기간동안 발생한 주요 업무 성과, 통계, 사건 등을 정리한 문서	연감, 연차보고서, 기관 성과보고서 등
백 서	정부 정책 또는 주요 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정리한 문서	정책백서, 사업백서, 총람 등
통계집	공공기관의 업무 분야와 관련된 통계 자료를 수록한 문서	통계연보, 통계자료집 등
정책·연구 보고서	정책 수립, 정책 분석, 연구·조사 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서	정책보고서, 정책연구보고서, 정책영향 평가 보고서 등
사업 추진 보고서	사업 추진 과정, 결과 및 성과 등을 정리한 문서	사업결과보고서, 평가보고서, 사업제안요청서 등
매뉴얼·지침 ·가이드라인	업무 수행을 위한 기준, 절차, 방법 등을 정리한 문서	업무 매뉴얼, 업무 처리지침, 업무 가이드라인 등
법령·제도 해설 자료	법령 및 제도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거나 해설한 문서	법령집, 법령 해설서, 법령 운영 지침 등
사례집	우수한 행정경험, 혁신적 성과 등 모범 사례를 정리한 문서	정책우수사례, 적극행정사례, 혁신우수사례 등

※ 연차보고서, 백서 등 주기적으로 발행되는 문서는 여러 연도의 문서를 등록하더라도 실적은 1건으로 인정
※ 2020년 이후 생성된 문서를 대상으로 하며, 동일 문서가 여러 버전인 경우 가장 최신본만 등록

- **등록 비권장 문서:** 협조 요청 공문, 행사 안내문, 단순 공지 문서, 내부 결재 문서 등 활용 가치가 낮은 문서

※ 등록 비권장 문서는 지표 담당부서 검토 후, **반려처리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 기준:** 문서 등록 전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검토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거나, 비식별처리(개인정보 삭제 또는 '******' 같은 마스킹처리)한 문서만 등록

※ 정책백서, 연구보고서 등의 문서 뒤에 기재된 담당자 소속, 성명, 연락처 등은 문서 발간 시 문의 대응 등의 목적으로 포함되는 정보이나, 데이터 공유 시 개인 식별 가능 정보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비식별화 처리 후 등록 필요

[점수산정]

■ **평가 산식 :** $\frac{\text{실적건수}}{\text{목표건수}} \times \text{배점}$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목표 건수 : 정원 대비 목표치 설정**

* **기관 정원 :**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내 정원은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며 상세 내용은 49페이지 참조

1) 중앙행정기관

정원기준	목표 건수
~200명	100건
201~400명	110건
401~600명	120건
601~800명	130건
801명~1,000명	140건
1,001명~	150건

2) 광역자치단체

정원기준	목표 건수
~1,000명	80건
1,001~1,500명	90건
1,501~2,000명	100건
2,001명~	110건

3) 공기업·준정부기관, 시도교육청, 지방공기업, 기타공공기관

정원기준	목표 건수
~200명	25건
201~400명	30건
401~600명	35건
601~800명	40건
801~1,000명	45건
1,001명~	50건

4) 기초자치단체

정원기준	목표 건수
~400명	30건
401~600명	35건
601~800명	40건
801~1,000명	45건
1,001명~	50건

[N/A 처리]

■ 데이터기반행정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데이터를 취급하는 기관(행안부와 협의된 기관) → 해당 기관유형의 평균점수 적용

[실적 인정기간] 2025년 11월 15일 ~ 2026년 9월 30일

[제출방법]

■ 제 출 처 : 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추후 공문 안내 예정)

■ 제출자료 :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sharedata.go.kr)에서 집계하므로 별도 자료제출 불필요

■ 제출기한 : 9월 30일까지 데이터 업로드를 완료하고, 10월 16일까지 행안부 검토결과에 따른 보완을 완료

※ '총괄담당자, 업무담당자' 권한인 사용자만 소속기관의 데이터 등록 가능

○ 「④-② 고가치·고활용 공유데이터 발굴 노력 및 실적」 지표

지표 정의	행정·공공기관 간 공유·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용·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발굴·생성, 공유한 기관의 노력 및 실적을 정성적으로 평가		
배점	**A기관 : 12점 / B기관 : 8점**	**방식**	**정성** (평가시스템에 자료제출)
담당자	행안부 공공데이터관리과 **박승준 사무관(044-205-2471)**, NIA **김민규 수석(053-230-1547)**		

[평가방법]

[평가기준]

■ 행정·공공기관 간 공유·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용·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발굴·생성, 공유한 기관의 노력과 실적(성과)을 정성적으로 평가

- 기관에서 제출한 실적 사례를 평가

※ 공유데이터 설명, 공유데이터 발굴을 위한 노력, 활용성과 등 사례를 작성양식에 맞춰 제출

* **A기관 :** 중앙, 광역, 공기업·준정부, 지방공기업, 시도교육청 / **B기관** : 기초, 기타공공기관

[실적 인정기간] 2025년 12월 13일 ~ 2026년 9월 30일

[제출방법]

■ 제 출 처 :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평가시스템)

■ 제출자료 : ① 고가치·고활용 공유데이터 발굴 노력 및 실적 보고서(최대2건) (**[첨부9]** 작성양식 참고)

※ 보고서는 작성양식에 맞춰 작성되어야 하며, 관련 증빙은 별도의 첨부파일로 제출되어야 함

② 보고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등(공식 결재 및 보고 문서, 사진 등)

※ 모든 증빙을 한 파일로 묶어 PDF 형태로 1부 제출

■ 등록경로 : ㉮공공데이터포털 통합로그인(all.data.go.kr) → 기관시스템 연계 품질·표준관리통합시스템 → 데이터기반행정평가

㉯ std.sharedata.go.kr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 → 데이터기반행정평가

■ 제출기한 : 9월 30일까지 제출자료를 평가시스템에 등록

[참고사항]

[주요 불인정 사례]

o 실적 인정기간('25.12.13. ~ '26.9.30.) 내의 실적이 아닌 경우

※ 공식 문서 내 정확한 날짜가 명시되어야만 인정

o 공식적인 문서(공문, 보고, 결재 등) 증빙이 없는 경우

o 보고서 작성 없이 증빙자료만 제출하는 경우

o 행정·공공기관 간 공유데이터 공유·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거나 실적이 없는 경우

o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의 타 지표에 동일한 실적을 제출한 경우

※ 동일 실적을 여러 지표에서 중복 인정 불가하므로 지표별로 구분하여 제출

[평가 착안사항]

■ **(참고) 다음 분야에서 이용·활용도가 높은 데이터**

·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경제적·사회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견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

· 특정 계층·지역·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분야

·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구분	착안사항
공유데이터 발굴	o 데이터 발굴의 배경과 필요성 등이 적절한가 o 타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파악하고 발굴을 위한 노력이 충분한가 * 현재 공유 중인 데이터의 이용현황 및 활용도 등을 분석해서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발굴
공유데이터 제공 노력	o 데이터의 발굴과정과 연계되어 이용 및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가공 및 분석 등을 통해 생성 후, 적극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이 충분한가 o 비공개 등으로 공유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추가검토 등을 통해 향후 공유 계획이 존재하는가
공유데이터 활용	o 공유한 데이터가 타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어 정책 수립, 행정업무 개선, 또는 대국민 서비스 혁신에 기여한 사례가 존재하는가(표창 및 경진대회 수상 등) o 공유데이터를 활용한 예상성과 등이 적절한가

○「4-③ 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실적」지표

지표 정의	기관별 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공유·활용 활성화 노력에 대해 정량적으로 평가		
배점	6점	방식	정량
담당자	행안부 공공데이터분석관리과 **박선숙 주무관(044-205-2485)**, NIA **남길우 수석(053-230-1544)**		

[유형1] 기관공유시스템 운영 및 '26년 구축 예정기관

[평가방법]

[평가대상] - '24년 ~ '26년 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거나 구축 중인 기관 (세부 대상 기관은 첨부 참조)

[평가기준]

■ 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및 국가공유데이터플랫폼과의 연계 여부

① 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여부

- [첨부10] 양식을 준용하여 작성한 증빙을 기반으로 평가

※ (필수증빙) 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 데이터 등록 목록 캡쳐 화면

②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 연계 여부

- [첨부10] 양식을 준용하여 작성한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평가

※ (필수증빙)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연계 캡쳐 화면

[평가배점] - 6점

기준	세부기준	배점
①	[평가기준]의 ①(시스템 구축) + ②(국가공유 연계) 증빙 **모두 제출**	6점
②	[평가기준]의 ①(시스템 구축), ②(국가공유 연계) 증빙 **미제출** 또는 **일부 제출**	-1점*

※ '24년 구축 기관은 시스템 설치 여부 증빙 제출 불필요(NIA 관리)

* 전년도 평가에서 구축 계획 및 예산 확보를 기반으로 선제적 점수를 부여하였으므로, 올해 시스템 미구축 시 계획 대비 이행 미흡으로 간주하여 감점 적용

[유형2] '27년 이후 기관공유시스템 구축 예정 기관

[평가방법]

[평가대상] - 보급·개별 메타시스템 사용기관 중 기관공유시스템(표준형·지자체형) 미구축기관 (세부 대상 기관은 편람 113페이지 [붙임2] 참조)

[평가배점] - 6점

기준	세부기준	배점
①	기관공유데이터(표준형·지자체형) 관리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여부	4점
②	기관공유데이터(표준형·지자체형) 관리시스템 구축 예산(자원) 확보 여부	2점

[평가기준]

① **기관공유데이터(표준형·지자체형) 관리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여부**

- [첨부11]을 준용하여 수립한 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계획서를 기반으로 평가

※ **(제출증빙)** 실·국장급* 이상 결재 공문, [첨부11] 기반의 (혹은 그정도 수준의) 계획서

* 중앙부처·지자체는 실·국장급, 공공기관은 본부장·실장급

※ **(불인정사유)** 계획문서만 제출하거나 계획문서에 대한 공문 결재권자가 실·국장급이 아닌 경우

② **기관공유데이터(표준형·지자체형) 관리시스템 구축 예산(자원) 확보 여부**

- [첨부11]을 준용하여 작성한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27년 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 여부 및 구축 기반 자원 확보 여부를 평가

※ **(인정증빙)** '27년 예산확보 자료에서 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부분을 캡쳐, 혹은 '27년 기관공유시스템 구축 기반 마련 증빙 제출

※ '27년 예산 확보 기관은 '27년 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대상기관으로 자동 분류되며, 해당 연도에 시스템 구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평가 시 감점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참고사항]

[실적 인정기간] 2025년 11월 15일 ~ 2026년 9월 30일

[제출방법]

■ 제 출 처 :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평가시스템)

■ 제출기한 : 9월 30일까지 제출자료를 평가시스템에 등록하고, 10월 16일까지 행안부 검토결과에 따른 보완을 완료

[주요 불인정 사례]

o 실적 인정기간 내 실적이 아닌 경우(혹은 실적 인정기간 내 실적임이 증빙이 안될 경우)

o 실적 보고서에 대해 증빙문서를 통한 증빙이 되지 않을 경우(혹은 실적 보고서에 없는 증빙이 첨부될 경우)

[N/A 처리]

o N/A 처리기관 : 공동활용형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활용기관(편람 113페이지 [붙임2] 참조) 및 기초자치단체

o 점수산정 방식 : N/A 세부지표를 제외한 배점으로 평가 후, 기관유형별 공유영역 만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점수 산정

※ 기관유형별 공유영역 배점 중 6점(본 지표 배점)을 제외한 후, 기관유형별 공유영역 배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

○「4-④ 메타데이터의 등록 및 관리」 지표

지표 정의	기관별 보유·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를 메타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현행화한 실적을 평가 *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하는 자료 ** 기관메타관리시스템 및 중앙메타관리시스템		
배점	**A기관 : 8점 / B기관 : 10점**	**방식**	**정량** ('메타관리시스템'에서 집계)
담당자	행안부 공공데이터분석관리과 **이예진 주무관(044-205-2493)**, NIA **김수정 선임(053-230-1573)**		

[평가방법]

[평가기준]

■ 기관 보유DB의 메타데이터 현행화(신규·변경·삭제 등) 정도를 평가

※ 연 2회(6월, 9월) 평가하여 점수를 산출하고, 각 점수를 합산한 평균치를 평가점수로 적용

[평가배점]

기준	내 용	배점	
		A기관	B기관
1	메타데이터 현행화율	8점	10점
2	정보시스템(DB) 미등록률	-5점	-5점

※ **A기관** : 중앙, 광역,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시도교육청 / **B기관** : 기초, 기타공공기관

[점수산정]

■ **메타데이터 현행화율**

$$\frac{\text{상반기 메타데이터 현행화율 점수} + \text{하반기 메타데이터 현행화율 점수}}{2}$$

$$\text{메타데이터 현행화율} = \frac{\text{1)현행화된 테이블 수}}{\text{2)메타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테이블 수}}$$

1) 기관메타관리시스템에 테이블을 현행화하여 중앙메타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한 테이블 수
   ※ 기관메타관리시스템에 현행화를 완료하였으나, 중앙메타관리시스템에 최종 전송되지 않은 테이블은 불인정
2)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운영중'으로 등록된 정보시스템이 보유한 DB 및 테이블 전체
   ※ 미등록 정보시스템(DB)은 '1'로 산출하여 평가대상에 포함
   ※ 수집제외 승인을 받았거나 '표준배포시스템(활용)' 유형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은 평가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세부기준	배점	
	A기관	B기관
현행화율 90% 이상	8점	10점
현행화율 80% 이상	6.5점	8점
현행화율 70% 이상	5점	6점
현행화율 60% 이상	3.5점	4점
현행화율 40% 이상	2점	2점
현행화율 40% 미만	0점	0점

■ **(감점) 정보시스템(DB) 미등록률**

$$\text{미등록 정보시스템(DB) 비율} = \frac{^{1)}\text{미등록 정보시스템(DB) 수} + {}^{2)}\text{정보시스템 수집제외 미승인 수}}{^{3)}\text{등록 대상 정보시스템(DB) 수}}$$

1) 미등록 정보시스템(DB) 수
- 신규 정보시스템(DB)에 대해 메타데이터를 등록하지 않은 정보시스템 수
- 하반기 실적인정 기간 내 현행화하지 않은 정보시스템(DB) 수

2) 정보시스템 수집제외 미승인 수
- 수집제외 되어있던 정보시스템에 대해 행안부 검토 결과에 따라 최종 수집제외 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정보시스템 수
  ※ 수집제외 신청 시 증빙자료를 등록하여야 하며, 제외 기준 등 메타관리시스템 설명회에서 별도 안내

3) 등록 대상 정보시스템(DB) 수
-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운영중'으로 등록된 정보시스템이 보유한 DB 전체
  ※ 수집제외 승인을 받았거나 '표준배포시스템(활용)' 유형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은 평가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세부기준	배점
미등록 비율 80% 이상	-5점
미등록 비율 60% 이상	-4점
미등록 비율 40% 이상	-3점
미등록 비율 20% 이상	-2점
미등록 비율 10% 이상	-1점

※ 최종 현행화일(9월) 기준 미등록 정보시스템(DB) 비율에 따른 감점 적용

[실적 인정기간]

■ **(상반기)** 2025년 12월 13일 ~ 2026년 6월 30일

■ **(하반기)** 2025년 12월 13일 ~ 2026년 9월 30일

[N/A 처리 기준] 기관별 평균 점수 적용(배점에 따른 가중치 적용)

■ 정보시스템 유형이 모두 "표준배포시스템(활용)"인 경우

■ 정보시스템이 모두 수집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수집제외된 경우
  ※ 신규/기존 수집제외 대상은 수집제외를 신청하여 검토 결과에 따라 최종 승인 완료되어야 함

■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등록된 시스템이 없는 경우

[제출방법]

■ 제 출 처 : 메타관리시스템

■ 제출자료 : 메타관리시스템을 통해 집계하므로, **별도 자료제출 불필요**

■ 등록경로 : 기관메타관리시스템 > 메타데이터 > 메타데이터 등록

■ 현행화율 확인 방법 : 기관메타관리시스템 > 메타데이터 > 정보시스템 > 정보시스템관리 > DB현행화 결과보기

[참고사항]

■ 개별메타관리시스템 운영기관은 중앙메타관리시스템에 연계되어 전송된 경우만 현행화율 인정

■ 등록 테이블 수에 대한 별도의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④-⑤ 가명정보 제공 및 합성데이터 공유 실적」 지표

지표 정의	민감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타기관에 가명정보로 제공하거나 합성데이터로 공유한 실적을 평가		
배점	**5점(가점)**	**방식**	**정량** (평가시스템에 자료제출)
담당자	행안부 공공데이터분석관리과 **박승준 사무관(044-205-2471)**, NIA **김민규 수석(053-230-1547)**		

[평가 방법]

[평가기준]

■ **민감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가명정보 형태**로 **타 공공기관**에 제공했거나 **합성데이터 형태**로 **공유한 실적**을 정량적으로 평가

< 관련 용어 설명 >

- (제공) 특정 대상이나 조건에 맞는 대상에게만 데이터 전달
- (공유데이터) 공공기관이 직무상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공공기관 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가공한 데이터
- (가명정보)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하는 등 가명으로 처리하여 추가 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합성데이터) 원천데이터와 통계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가진 가상데이터

[점수산정] 가명정보 제공, 합성데이터 공유 **1건당 1점 가점 (최대 5점)**

■ 동일한 가명정보 제공 요청 건에 대해서 가명 처리된 **동일 데이터**를 여러 대상에게 제공하였더라도 **1건으로 처리**

■ 합성데이터는 **기관공유시스템을 통해 공유**한 건에 한해서 인정

[실적 인정기간] 2025년 12월 13일 ~ 2026년 9월 30일

[제출방법]

■ 제 출 처 **:**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평가시스템)

■ 제출자료

① 가명정보 제공 및 합성데이터 **공유 실적**(**[첨부12]** 작성양식 참고)

② 공유실적 및 가명정보·합성데이터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공문, 포털, 이메일 등 ㉮공식적인 신청 증빙자료(가명정보 제공·이용 신청서 등)
- ㉯제공·공유 증빙자료
- ㉰가명정보 적정성 최종 검토 결과서 또는 합성데이터 안전성 및 유용성 검증 결과서
- ㉱적정성 검토 또는 안정성·유용성 검증 최종 결과 보고한 공식 문서(내부 결재문서 등)

※ 증빙자료는 ㉮,㉯,㉰,㉱ 모두 제출해야 실적 인정(합성데이터는 ㉮ 생략 가능)

※ 증빙자료에는 신청 일자, 제공·공유 일자, 검토·검증 일자가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증빙자료에 민감정보가 포함되었을 경우 마스킹 처리 등 민감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후 제출

- 모든 증빙을 사례별 한 파일로 묶어 PDF 형태로 **1부 제출**

■ 등록경로 : ㉮공공데이터포털 통합로그인(all.data.go.kr) → 기관시스템 연계 → 품질 표준관리 통합시스템 → 데이터기반행정평가

㉯ std.sharedata.go.kr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 → 데이터기반행정평가

■ 제출기한 **: 9월 30일까지 제출자료를** 평가시스템에 등록해야 함

[참고사항]
[주요 불인정 사례] o 실적 인정기간('25.12.13. ~ '26.9.30.) 내의 실적이 아닌 경우 ※ 공식 문서 내 정확한 날짜가 명시되어야만 인정 o 공식적인 문서(공문, 보고, 결재 등) 증빙이 없는 경우 o 보고서 작성 없이 증빙자료만 제출하는 경우 - 증빙자료만 제출한 경우, 증빙자료가 없거나 일부 누락된 경우* * 예) ㉰가명정보 적정성 최종 검토 결과서를 제출하였으나, ㉱결과 보고서가 없는 경우 - '1-⑤ 가명정보 제공 및 합성데이터 개방 실적(가점)' 지표와 동일 실적을 제출한 경우 - '4-② 지표'와 중복 제출된 경우 **[기타]** o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처리 가이드라인",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 준수

5. 관리체계 영역

< 평가목적 >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관의 기반 구축 및 교육 참여 노력 평가

구분	지표구성	배점							방식
		중앙	광역	기초	공기업·준정부	지방공기업	기타공공	시도교육청	
공공데이터 제공	① 추진기반 조성	3	3	3	3	3	3	3	정량
	②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교육 참여	2	2	2	2	2	2	2	
데이터 기반행정	① 추진기반 조성	3	3	6	3	3	6	3	
	② 기관장 추진 의지	3	3	3	3	3	3	3	

○ <공공데이터 제공>「5-① 공공데이터 추진기반 조성」지표

지표정의	공공데이터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관의 추진기반 조성 노력을 평가		
배점	3점	방식	정량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 제출)
담당자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과 **오정현 주무관(044-205-2418)**, NIA **임정민 책임(053-230-1520)**		
비고	①**[첨부13] 양식을** 기반으로 **작성 필수(PDF형태)**, ②**증빙자료는 한 파일(PDF)로 제출**		

[세부기준]

번호	세부 평가항목	배 점	방식	제출방법
1	'26년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수립·제출 여부	1점	정량	별도 자료제출 불필요 ※행안부 보유자료로 판단
2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인력 및 조직 운영 여부	2점	정량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 제출

[5-①-1] '26년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제출 여부(배점 1점)

[평가방법]

[평가기준]

구 분	배점
-「'26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제출 여부	1점

[제출방법] 별도 자료 제출 불필요 (※ 기관에서 행정안전부에 공문으로 제출한 자료로 평가)

[실적 불인정 사례] 시행계획 제출 양식(한글, 엑셀)을 하나 이상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상위기관에서 제출한 한글 양식의 [붙임] 시행계획 수립기관 목록 내 '제출 여부'로 평가

[5-①-2]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인력 및 조직 운영 여부(배점 2점)

[평가방법]

[평가기준]

■ 기준1.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실무담당자 지정 및 공표 여부 (1.5점)

※ 소속기관은 평가 제외

1. 기관 실적 제출 여부	배점 (A·B공통)	2. 성명 일치 여부*	배점
-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임명 공식자료	0.25점	- 제공책임관 성명 일치 여부	0.25점
-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임명 공식자료	0.25점		
- 공공데이터포털內 제공책임관·실무담당자 등록 증빙자료	0.25점	- 실무담당자 성명 일치 여부	0.25점
- 기관홈페이지內 제공책임관·실무담당자 등록 증빙자료	0.25점		

* 임명 공식자료, 공공데이터포털·기관홈페이지 內 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성명이 일치하여야 함

■ 기준2. 공공데이터 전담부서 공식 지정 여부 (0.5점)

- 직제시행규칙(중앙부처),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지자체), 직제규정(그 외 기관) 등을 통해 기관의 공공데이터 전담 부서 지정 여부를 평가

[제출방법]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 아래 자료 제출

① 공공데이터 추진기반 조성 보고서(**[첨부13]** 양식에 맞춰 PDF파일로 제출)

② 전담부서 공식 지정 관련 증빙자료(직제시행규칙, 행정기구설치조례 등)

[참고사항]

[실적 불인정 사례]

(1)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실무담당자 지정 및 공표 여부 관련

- "기관 홈페이지"에 제공책임관·실무담당자 성명이 누락 되어있고, 추가 자료를 통해 제공책임관·실무담당자 성명 일치 여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기관 홈페이지"에 공공데이터 담당자(제공책임관, 실무담당자) 이름 없이 전화번호만 등록된 경우 홈페이지에 등록된 전화번호가 실제 공공데이터 담당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자료 제출 필요

- 행안부로 제출한 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공문 외 내부 인사자료를 제출한 경우

(2) 공공데이터 전담부서 공식 지정 여부 관련

- 기관의 공식문서에서 "공공데이터" 문구가 명시된 업무가 분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부서 직제내용에 "공공데이터"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함

○ <공공데이터 제공> 「5-②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교육 참여」 지표

지표 정의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데이터 품질 등 관련 교육 수강 여부를 평가		
배점	2점	방식	정량
담당자	**(제공·운영)**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과 **오정현 주무관(044-205-2418)**, NIA **임정민 책임(053-230-1520)** **(품질관리)** 행안부 공공데이터분석관리과 **최지현 주무관(044-205-2490)**, NIA **김정수 주임(053-230-1537)**		

[세부기준]

번 호	세부 평가항목	배점	방식	제출방법
1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교육 이수	1점	정량	**별도 자료제출 불필요** ※온오프라인 교육 이수 여부 집계 결과로 판단
2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교육 이수	1점	정량	

[5-②-1]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교육 이수 (배점 1점)

■ **평가방법**

구분	내용
교육 대상	목록등록관리시스템 상의 **모든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이수 기준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권역별 순회교육 또는 온라인 실적반영교육 이수
점수 산정	전원이 교육 이수 시 1점, 전원 또는 일부 인원이 교육 미이수 시 0점 부여

[5-②-2]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교육 이수 (배점 1점)

■ **평가방법**

구분	내용
교육 대상	① 목록등록관리시스템 상의 모든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②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 내 평가대상 DB업무담당자
이수 기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권역별 순회교육 또는 온라인 실적반영교육 이수 ▸ ① (실무담당자) **전원**이 순회교육 또는 온라인 실적반영교육 **전체과정 이수** ▸ ② (DB업무담당자) **전원**이 순회교육 또는 온라인 실적반영교육 **전체과정 이수**
점수 산정	상기 이수기준(①, ②)을 모두 충족 시 1점, 하나만 충족 시 0.5점 부여, 교육 미이수 시 0점 부여

참고사항 (5-②-1, 5-②-2 공통)

■ 교육 관련 세부사항은 6월 중으로 공문 및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예정

■ 중앙행정기관은 소속기관 실무담당자도 교육 이수 대상에 포함

※ 평가대상 DB업무담당자는 기관 유형에 관계 없이 소속기관 담당자도 교육 이수 대상에 포함

■ 본 지표평가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교육 이외의 교육이수 실적은 인정되지 않음

○ <데이터기반행정> 「5-① 추진기반 조성」 지표

지표 정의	데이터기반행정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관의 추진기반 조성 노력을 평가		
배점	A기관 : 3점 / B기관 : 6점	방식	정량 (평가시스템에 자료제출)
담당자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과 **정선영 주무관(044-205-2476)**, NIA **최현미 수석(053-230-1597)**		

5-①-1, 5-①-2 데이터기반행정([A기관] 3점, [B기관] 6점)

[세부지표]

번호	세부지표명	방식	배점	
			A기관	B기관
1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조직·인력 운영 여부	정량	2점	5점
2	'26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및 제3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제출 여부	정량	1점	1점

※ **A기관 :** 중앙, 광역, 공기업·준정부, 지방공기업, 시도교육청 / **B기관** : 기초, 기타공공기관

5-①-1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조직·인력 운영 여부([A기관] 2점, [B기관] 5점)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기준	배점	
	A기관	B기관
(1)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임명 및 운영	1점	2점
(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전담부서 공식 지정 - 직제시행규칙(중앙부처),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지자체), 직제규정(그 외 기관) 등을 통해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전담 부서 지정 여부 평가	0.5점	1.5점
(3) 데이터기반행정 담당 인력 운영 - 전담부서 내 책임관을 제외한 1인 이상 데이터기반행정 업무 담당자 운영 여부 평가	0.5점	1.5점

※ 위 사항의 증빙은 '**[첨부14]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전체 실적 개요서(기관 직인 날인 필수))**' 제출로 갈음

[실적 인정기간] 2025년 11월 15일 ~ 2026년 9월 30일

[제출 방법]

- 제 출 처 :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평가시스템)
- 제출자료 :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전체 실적 개요서
  ※ 데이터기반행정 전체 정량지표의 실적 확인을 위해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
- 등록경로 : ㉮공공데이터포털 통합로그인(all.data.go.kr) → 기관시스템 연계 →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 → 데이터기반행정평가
  ㉯ std.sharedata.go.kr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 → 데이터기반행정평가

[참고사항]

[주요 불인정 사례]

o 부서 직제 및 담당자 업무분장에 '데이터기반행정'이라고 명시되지 않고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 관리, 데이터 운영 등으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

※ '부서명'에 데이터기반행정을 포함하라는 의미가 아니며, 부서 직제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면 인정함

o 전담부서를 내부규정 내에 명확히 정의하지 않은 경우

※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 관리하는 부서, 기관장이 정한 부서 등 모호한 표현이거나, 기관장이 결재한 내부 결재 문서, 단순 업무분장표, 내부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조직도 등으로 증빙한 경우

o '데이터기반행정'이 아닌 '공공데이터' 관련 실적을 제출하는 경우

5-①-2 '26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및 제3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제출 여부(배점 1점)

[평가 방법]

[평가기준]

평가기준	배점
(1)「'26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제출 여부 - 기관별「'26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한글·엑셀서식*)」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에 공문으로 제출했는지의 여부 * 양식에 맞춰 완성된 자료를 상위기관에서 취합하여 행정안전부로 공문 제출한 경우만 인정	0.5점
(2)「제3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제출 여부 - 기관별「제3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한글·엑셀서식*)」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에 공문으로 제출했는지의 여부 * 양식에 맞춰 완성된 자료를 상위기관에서 취합하여 행정안전부로 공문 제출한 경우만 인정	0.5점

[제출 방법] 별도 자료제출 불필요

■ 기관에서 행정안전부에 공문으로 제출*한 자료로 평가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등 상위기관에서 취합하여 행정안전부로 공문을 제출

[참고사항]

[주요 불인정 사례]

o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제출 양식(한글+엑셀)을 모두 제출하여야 함 (한글, 엑셀 중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인정)

o 양식에 맞춰 작성한 자료를 상위기관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 <데이터기반행정> 「5-② 기관장의 추진 의지」 지표

지표 정의	기관장 주재 보고회, 토론회, 점검회의, 행사 등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관장의 주도적 역할, 리더십, 추진 실적 등을 평가		
배점	**3점**	**방식**	**정량** (평가시스템에 자료제출)
담당자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과 **정선영 주무관(044-205-2476)**, NIA **최현미 수석(053-230-1597)**		

[평가방법]

[평가기준]

■ 데이터기반행정 추진과 관련하여 기관장이 주재하고 참여하는 보고회, 토론회, 점검회의, 언론기고 및 인터뷰 등의 실적

[평가배점]

실적	점수
2회	3점
1회	1.5점
실적없음	0점

① 인정기준

- 기관장(또는 기관장이 직접 서면 위임한 부기관장)이 주재하거나 직접 결재한 데이터기반행정 추진과제 점검 실적이 연 1회 이상 존재
- 보도자료는 기관장 언론 기고, 인터뷰는 단독기사일 경우에 한해 인정
- 회의 형식: 기관장 주재 보고회, 점검 회의, 전략 회의 등 (형식 무관)
- 결재 형식: 기관장 결재 점검 보고서 (단순 수신·참조 결재·메모보고는 제외)
  - 지시사항 또는 후속조치가 명시된 회의록·결재문서에 한해 인정

② 위임 인정 범위

- 기관장 대외공무·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연 1회 부기관장 대리 인정
- 단, 위임 사실 및 사유가 공식문서로 확인되어야 함

[실적 인정기간] 2025년 11월 15일 ~ 2026년 9월 30일

[제출 방법]

■ 제 출 처 :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평가시스템)

■ 제출자료 : 내부결재 등 공식문서 및 증빙

※ 내부결재 등 공식문서를 통해 회의(행사)내용과 기관장 참석이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언론보도 및 인터뷰의 경우 내용을 발췌한 자료도 함께 제출

■ 등록경로 : ㊀공공데이터포털 통합로그인(all.data.go.kr) → 기관시스템 연계 →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 → 데이터기반행정평가

㊁ std.sharedata.go.kr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 → 데이터기반행정평가

[참고사항]
[주요 불인정 사례] o 실적 내용이 데이터기반행정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o 기관장이 회의 관련 결재만 시행하고 실제 회의에는 참여하지 않은 경우 o 내부결재 문서(결과보고) 미제출 및 기관장의 참여 여부와 역할이 불분명한 경우 o 서면으로 회의, 보고, 점검 등을 진행한 경우 ※ 단순 수신·참조·결재·메모보고를 증빙으로 제출할 경우는 기관장 주재 및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서면으로 판단 o 일반 경영회의(경영현안회의, 확대기관장회의 등) 실적 ※ 해당 회의에서 진행한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보고 및 기관장의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발언 내용은 불인정

Ⅲ FAQ

FAQ 1	제출자료는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 목록등록관리시스템(all.data.go.kr) > 기관 시스템 연계 >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 > 평가항목으로 이동·접속하여 지표별 실적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FAQ 2	정원 확정은 지표가 아닌데, 꼭 해야하나요?

○ 일부 지표에서는 '확정 정원'을 바탕으로 기관별 목표치가 설정됩니다.

○ '확정 정원'은 2025년도 데이터기반행정 평가를 위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라 확정된 기관의 본부(본청/본원/본사) 정원으로, 정원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 유형의 최대 정원 구간을 적용하게 됩니다.

○ 정원 변동이 필요한 기관, 전년도 미확정 및 신규 평가대상 기관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원 확정 기간 내 정원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원 기준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49페이지 <정원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AQ 3	각기 다른 지표에 같은 실적을 제출해도 되나요?

○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내 지표 간 동일 실적 제출이 불가하며, 타 지표와 동일 실적으로 확인될 경우, 각 지표는 0점 처리 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AQ 4	실적개요서 엑셀파일은 제출했는데 직인날인한 PDF 파일을 누락했어요. 괜찮은가요?

○ 실적개요서 직인날인 파일이 누락될 경우, 실적 미제출로 간주됩니다.

FAQ 5	편람에서 제공하는 보고서 양식 이외의 양식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 편람에서 '첨부'로 제공하는 보고서 양식 이외의 별도 양식을 사용할 경우, 실적 미제출로 간주됩니다. 반드시 양식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서 양식 '준용'을 허용하는 지표에 한해서만 양식을 일부(최소한으로) 수정 가능

FAQ 6	실적 등록기간 이후에 제출자료를 보완할 수 있나요?

○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제출자료를 보완할 수 없으며 요구되는 자료 일체를 반드시 실적 등록기간까지 평가시스템에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 특히, 제출자료에서 지표별 실적 인정기간을 참고하여 해당 지표의 인정기간 내의 실적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식 계획 및 결과보고서, 사진, 캡쳐 등 제출되는 자료에서 정확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FAQ 7	N/A 처리항목의 점수산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 N/A처리가 포함된 지표(항목)인 경우, 해당 지표(항목)별 설명 자료에 안내되어 있사오니 지표별 산정방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AQ 8	평가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목록등록관리시스템(all.data.go.kr) > 기관 시스템 연계 >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 > 공공데이터제공평가/데이터기반행정평가 메뉴로 이동하여 평가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1 2026년 평가대상 기관 목록

※ 기관명 변경 혹은 기관 통합·폐지 시 추후 안내 예정

기관유형	기관명		비고
중앙 행정 기관 (48개)	부 (19개)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가보훈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성평등가족부, 외교부, 재정경제부,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법, 데이터기반 행정법, 정부업무 평가법
	처·청 (23개)	국가데이터처, 기획예산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혁신처, 지식재산처, 경찰청, 관세청, 국가유산청, 국세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방위사업청, 병무청, 산림청,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우주항공청, 재외동포청, 조달청, 질병관리청,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위원회 (6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광역 자치단체 (17개)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기초 자치단체 (226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원주시,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춘천시,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경기도)** 가평군,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경상남도)**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김해시,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양산시, 의령군, 진주시, 창녕군, 창원시,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경상북도)** 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포항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대구광역시)** 군위군, 남구, 달서구, 달성군,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울산광역시)**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중구 **(인천광역시)** 강화군, 계양구,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옹진군, 중구		

기초 자치단체 (226개)	**(전라남도)**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광양시,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목포시, 무안군, 보성군, 순천시, 신안군, 여수시,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익산시, 임실군, 장수군, 전주시, 정읍시, 진안군 **(충청남도)**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충청북도)**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청주시, 충주시			공공데이터법, 데이터기반 행정법, 정부업무 평가법
공공기관 (388개)	시장형 공기업 (14개)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공공데이터법, 데이터기반 행정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기후부)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산업부)	㈜강원랜드,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6개)	**(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기후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주), 한전KPS(주)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문체부)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산업부)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재경부)	한국조폐공사	
		(해수부)	해양환경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2개)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금융위)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산업부)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6개)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과기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보훈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공공기관 (388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6개)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기획처)** 한국재정정보원 **(기후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농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해수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행안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공공데이터법, 데이터기반 행정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기타 공공기관 (253개)	**(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과기부)**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 **(관세청)** 한국관세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공공기관 **(388개)**	기타 공공기관 (253개)	**(데이터처)** (재)한국통계정보원, (재)한국통계진흥원 **(보훈부)** 88관광개발(주), 독립기념관 **(유산청)** 국가유산진흥원 **(국조실)** 건축공간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새만금개발공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금융위)**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기상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후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한국물기술인증원,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환경보전원, 한전MCS,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농식품부)** (재)축산환경관리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립농업박물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식진흥원 **(농진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공공데이터법, 데이터기반 행정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388개)	기타 공공기관 (253개)	**(문체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국악방송,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스포츠윤리센터,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전당,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스포츠레저(주),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공공데이터법, 데이터기반 행정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방미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복지부)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치산기술협회	
		(산업부)	무역안보관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성평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식약처)	식품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공공기관 (388개)	기타 공공기관 (253개)	**(동포청)** 재외동포협력센터 **(재경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중기부)** ㈜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지재처)**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정보원 **(통일부)**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해수부)** 국립울진해양과학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행안부)**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국재해구호협회	공공데이터법, 데이터기반 행정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 공기업 (47개)	**(도시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도시철도, 대전교통공사 **(도시개발공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특정공사·공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세종도시교통공사, 경기교통공사,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관광공사)** 부산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대전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경북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시설관리공사·공단)** 서울, 부산, 인천, 울산, 세종 **(환경시설공사·공단)**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부산환경, 대전시설, 대구공공시설, 인천환경, 광주환경,	공공데이터법, 데이터기반 행정법, 지방공기업법
시도 교육청 (17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공공데이터법, 데이터기반 행정법

첨부2 (지표1-②) AI 친화 · 고가치 데이터 개방 노력 보고서 양식

(기관명) AI 친화 · 고가치 데이터 개방 노력 (지표1-②)

< 작성 참고사항 >

✓ 자료 제출 시 청색 글씨, 이탤릭체, 박스 등 작성 참고사항은 삭제하여 제출

※ 양식 내 모든 항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일부 내용 누락 시 점수 차감 혹은 실적 불인정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작성한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공식자료, 사진, 캡쳐 등 임의로 수정이 안되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AI 친화·고가치 데이터 대표사례'는 1건만 제출(1건 이상 제출 시 첫 번째 사례만 평가)

✓ (실적 등록) 본 보고서와 증빙자료는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 등록

✓ (파일 구성) 1. AI 친화·고가치 데이터 개방 노력 보고서 파일 1부
2. 증빙자료 압축파일 1부

1 AI 친화 · 고가치 데이터 개방 실적 ('26.9.30. 기준)

※ 실적기간('25.11.15.~'26.9.30.) 내 기관에서 개방한 AI친화 ·고가치 데이터 작성

우선순위	분야	실적 목록명	형태 (정형/비정형/반정형)	개방시점	개방URL
1	*(하단 참고)*	*00000 데이터*	*정형*	*YYYY-MM-DD*	**미작성 또는 URL을 통한 개방데이터 확인 불가 시 0점 처리*
2	...	...	*비정형*	*2021-09-11*	
3	...	...	...	...	
...	...	...	...	...	

** 분야 : 국토관리, 교통물류, 환경기상, 산업고용, 보건의료, 농축수산, 식품건강, 공공행정, 과학기술, 재난안전, 문화관광, 사회복지, 교육, 법률, 재정금융, 통일외교안보 등*

2 AI 친화 · 고가치 데이터 개방 계획 ('26.10월 이후)

※ 기관에서 보유한 AI친화·고가치 데이터 중 미개방 데이터의 개방계획을 작성

*※ 우선순위가 높은 순위부터 순차적으로 작성**(개방시점과 무관)***

우선순위	분야	목록명	형태 (정형/비정형/반정형)	개방시점 (예정)
1	*(하단 참고)*	*00000 데이터*	*정형*	*YYYY-MM*
2	...	...	*비정형*	*2028-09*
3	...	...	...	

** 분야 : 국토관리, 교통물류, 환경기상, 산업고용, 보건의료, 농축수산, 식품건강, 공공행정, 과학기술, 재난안전, 문화관광, 사회복지, 교육, 법률, 재정금융, 통일외교안보 등*

3 AI 친화 · 고가치 데이터 대표사례

※ "1 AI친화·고가치 데이터 개방 실적"에서 작성한 목록 중 실적기간('25.11.15.~'26.9.30.) 내 **대표사례(1건)**를 작성하고, 아래 양식에 따라 데이터에 대한 상세 설명을 작성

목록명	○○ 데이터	형태 (정형/비정형/반정형)	정형
개방URL	https://www.data.go.kr/data/○○○ *미작성 또는 URL을 통한 개방데이터 확인 불가 시 0점 처리	개방시점	YYYY-MM-DD
TOP 100 여부	O / X		
주요내용	• 데이터 컬럼명, 데이터 축적 기간, 지역적 분포, 수집 목적, 활용 대상 등 데이터 관련 상세 내용 작성		

고수요·고가치성	• 해당 데이터가 민간의 수요 혹은 사회적 가치가 높음을 뒷받침하는 설명 작성 - 산업·공공 수요도, 사회·경제적 파급력, 정책 연계성(국정과제 번호 및 과제명, 공공데이터 정책 사업 여부 등) 등 데이터 가치 관련 상세 내용 작성 - 수요조사 과정, 분석, 선별 과정 등 대해 잘 드러나도록 작성(증빙자료 필수) • AI 데이터인 경우, AI 서비스에서의 필요성(또는 수요 여부)을 추가 작성 • 맑은고딕 10p. - 맑은고딕 10p. ※ 중고딕 8p.
AI 친화성	※ AI 친화성은 비필수 항목으로 해당 기관만 작성 • 개방한 데이터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지 서술 · (시계열) AI 모델이 패턴 인식·학습하기에 충분한 기간의 내용이 포함된 데이터 · (완결성) 지역·성별·연령 등 일부 집단의 내용이 아닌 전국 단위 등 골고루 확보된 데이터 · (신뢰성) 잘못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정확하고 일관된 데이터 · (범용성) 특정 기업(서비스)의 사용에 국한되지 않는 형태로 정제·전처리·가공된 데이터
활용성	• 지역·사회현안 해결사례, 민간 서비스로 개발된 사례, 향후 예상되는 활용 사례, 파급효과 등 데이터의 활용성을 정량적·정성적으로 작성

4 인공지능 친화적(AI-Ready) 공공데이터 평가용 체크리스트

※ "3 AI친화·고가치 데이터 대표사례"에 대해 인공지능 친화적(AI-Ready) 공공데이터 평가용 체크리스트를 작성

분류	점검 내용	체크
공통	◦ **[필수]** (포맷) 특정 프로그램이 없어도 열리는 개방형 표준 포맷(CSV, JSON, XML 등)으로 제공하고 있는가?	□ 적정 □ 미흡
	◦ **[필수]** (구조)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데이터가 항목별로 나누어 정리된)로 제공하고 있는가?	□ 적정 □ 미흡
품질	◦ **[필수]** 여러 개의 파일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데이터의 항목명과 순서는 동일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 적정 □ 미흡
	◦ **[필수]** 데이터 내 빈값, 오류(오타, 깨진글자 등), 중복값 등이 없는가?	□ 적정 □ 미흡
	◦ **[필수]** 데이터 내 같은 항목은 표기 형식을 동일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예) 등록일을 표기하는데 2026-03-20, 260320, 26-03_20 등으로 혼용하고 경우 x	□ 적정 □ 미흡
	◦ 파일명이나 라벨링 규칙은 일정한 형식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 적정 □ 미흡 □ 해당없음
	◦ 비정형 데이터의 경우, 화질 저하가 없는 형태(PNG, JPEG 등)인가? 예) 이미지 확대 시 글자 주변 깨끗, 글자 가독성(선명한가), 도표의 선과 배경 구분 명확	□ 적정 □ 미흡 □ 해당없음
	◦ 인공적으로 생성된 합성데이터나 기계가 자동으로 단 주석이 포함된 경우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했는가?	□ 적정 □ 미흡 □ 해당없음
데이터	◦ 개방한 데이터가 최소 1,000개 이상의 누적 데이터인가? 예) 정형(파일) : 1,000행 이상, 비정형(이미지, 문서 등) : 1,000장/건 이상	□ 적정 □ 미흡
	◦ 개방한 데이터가 AI가 학습하기에, 충분한 기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예) 시간대별, 요일별 월별 등 데이터의 포함 여부	□ 적정 □ 미흡 □ 해당없음
	◦ 데이터가 다양한 분야, 상황 등의 유형을 골고루 포함하고 있는가? 예) AI가 상황별로 구분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지역·성별·연령 등 일부 집단이 아닌 전국 단위 등) 포함 여부	□ 적정 □ 미흡 □ 해당없음
	◦ 데이터가 가공·시각화된 결과 데이터가 아닌 가공 전의 원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가? 예) 지도에 시각화한 데이터는 원천 데이터 개방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도에 포함된 각 항목에 관한 원천데이터, 시각화 파일데이터(shp 등) 등 개방 필요	□ 적정 □ 미흡
	◦ 데이터 항목별 정의·단위·산정기준·코드값 의미를 포함하는 데이터 사전(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을 제공하고 있는가?	□ 적정 □ 미흡 □ 해당없음
	◦ 비정형 데이터(이미지, 음성 등)의 경우, 해당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추가 설명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가? 예) 사진 : 장소/일시/이미지 속 주요객체이름, 음성 : 화자정보, 자막(텍스트)데이터 등	□ 적정 □ 미흡 □ 해당없음

첨부3 [지표1-④-2]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성과 양식

< 작성 참고사항 >

✓ 자료 제출 시 청색 글씨, 이탤릭체, 박스 등 작성 참고사항은 삭제하여 제출

✓ (작성 분량) 아래 양식 중 1개를 선택하여 2p 이내 작성

※ 양식 내 모든 항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일부 내용 누락 시 점수 차감 혹은 실적 불인정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작성한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공식자료, 사진, 캡쳐 등 임의로 수정이 안 되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분야(앱·웹, 논문 등) 구분 없이 대표 사례 1건만 제출(1건 이상 제출 시 첫 번째 사례만 평가)

✓ 모든 내용은 기관의 데이터가 활용된 부분에 한해서 해당되는 내용을 작성

예) 기존 앱·웹서비스 개선 사례일 경우, 서비스의 우수성·필요성·파급효과 등 기관 데이터가 활용되어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 (실적 등록) 본 보고서와 증빙자료는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 등록

✓ (파일 구성) 1.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성과 보고서 파일 1부
2. 증빙자료 압축파일 1부

■ 앱 · 웹 서비스일 경우

※ 운영주체, 실적일자, 기관 데이터 활용 부분, 기관 지원 노력은 증빙자료 필수 제출사항임

서비스명	*앱일 경우 어플리케이션명 작성 (ios or 안드로이드)* **평가시점에 미운영중인 경우 0점 처리*	서비스 URL	**미작성 또는 평가시점에 URL 접속 불가한 경우 0점 처리*
운영주체	**본인 기관인 경우 0점 처리*	실적일자	*YYYY-MM-DD*
활용 데이터명	*○○ 데이터*	활용데이터 URL	** URL을 통한 개방데이터 확인 불가 시 0점 처리*

기관 데이터가 활용된 부분의 서비스 개요	• *기관 데이터가 활용된 부분에 대한 개요 작성*

서비스의 우수성·필요성	• *기관 데이터가 활용된 서비스 부분의 우수성 및 필요성 작성*

파급 효과	정량	• *기관 데이터가 활용된 부분의 정량효과*
	정성	• *기관 데이터가 활용된 부분의 정성효과*

기관 지원 노력	• *기관 데이터가 활용된 서비스의 개발·개선 추진을 위한 기관의 지원 노력* *- 대면 멘토링 실시, 지속적인 업무협의, 테스트베드 제공, 활용기업 간담회,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정제·정비·가공, 홍보 지원 등*

■ 지식재산(논문)일 경우 (※ 논문 파일 제출 필수)

※ 서지정보, 승인·출판일자, 기관 데이터 활용 부분, 기관 지원 노력은 증빙자료 필수 제출사항임

논문명		서지정보 (제목, 볼륨, 호수)	*미작성 또는 확인 불가한 경우 0점 처리
저자정보 (이름, 소속)	*본인 기관 소속직원인 경우 0점 처리	승인·출판일자*	(승인) YYYY-MM-DD 또는 (출판) YYYY-MM-DD
활용 데이터명	○○ 데이터	활용데이터 URL	* URL을 통한 개방데이터 확인 불가 시 0점 처리

논문 개요	• 논문 전체에 대한 개요 작성
기관 데이터가 활용된 부분의 논문 개요	• 기관 데이터가 활용된 부분에 대한 주요내용 작성(활용 데이터 등 확인 가능한 페이지 등 관련 정보 포함)
논문의 우수성·필요성	• 기관 데이터가 활용된 서비스 부분의 우수성 및 필요성 작성
활용성	• 논문을 통해 기대되는 파급효과
기관 지원 노력	• 기관 데이터가 활용된 논문 추진을 위한 기관의 지원 노력

** 논문 승인 및 출판일자 중 한 개 이상이 실적 인정기간 내 일자이면 실적으로 인정*

■ 지식재산(특허)일 경우 (※ 특허증 또는 출원사실증명원 사본 제출 필수)

※ 특허명, 출원·특허번호, 기관 데이터 활용 부분, 기관 지원 노력은 증빙자료 필수 제출사항임

특허명		출원·특허번호	*미작성 또는 확인 불가한 경우 0점 처리
발명자정보 (이름, 소속)	*본인 기관 소속인 경우 0점 처리	출원·등록일자*	(출원) YYYY-MM-DD 또는 (등록) YYYY-MM-DD
활용 데이터명	○○ 데이터	활용데이터 URL	* URL을 통한 개방데이터 확인 불가 시 0점 처리

특허 개요	• 특허 전체에 대한 개요 작성
기관 데이터가 활용된 부분의 특허 개요	• 기관 데이터가 활용된 부분에 대한 주요내용 작성
특허의 우수성·필요성	• 기관 데이터가 활용된 부분의 우수성 및 필요성 작성
활용성	• 특허를 통해 기대되는 파급효과
기관 지원 노력	• 기관 데이터가 활용된 특허 추진을 위한 기관의 지원 노력

** 특허 출원 및 등록일자 중 한 개 이상이 실적 인정기간 내 일자이면 실적으로 인정*

■ 기타(서비스 구축, 시스템 개발 등에 활용)일 경우

※ 기타 실적의 증명(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필수), 실적자의 소속(추진기관 확인을 위해 필수), 실적 일자, 활용데이터 등 필수 내용을 포함하여 성격에 맞게 양식을 일부 수정 가능

기타명		기타증빙 (URL 등)	**미작성 또는 확인 불가한 경우 0점 처리*
개발인정보 (이름, 소속)	**본인 기관 소속인 경우 0점 처리*	실적일자	*YYYY-MM-DD*
활용 데이터명	*○○ 데이터*	활용데이터 URL	** URL을 통한 개방데이터 확인 불가 시 0점 처리*

기타 개요	• *기타 실적에 대한 개요 작성*
기관 데이터가 활용된 부분의 기타 개요	• *기관 데이터가 활용된 부분에 대한 주요내용 작성*
기타의 우수성·필요성	• *기관 데이터가 활용된 부분의 우수성 및 필요성 작성*
활용성	• *기타 실적을 통해 기대되는 파급효과*
기관 지원 노력	• *기관 데이터가 활용된 기타 추진을 위한 기관의 지원 노력*

첨부4 [지표1-④-3]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성과 보고서 양식

< 작성 참고사항 >

✓ 자료 제출 시 청색 글씨, 이탤릭체, 박스 등 작성 참고사항은 삭제하여 제출
✓ (작성 분량) 아래 양식을 준용하여 **보고서 6p 이내 작성, 증빙자료 50p이내**
※ 양식 내 모든 항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일부 내용 누락 시 점수 차감 혹은 실적 불인정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작성한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공식자료, 사진, 캡쳐 등 임의로 수정이 안되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 사례 수는 '5건' 제출
※ 대표사례 중 우선순위가 높은 순위부터 순차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기준 건수 이상 제출 시 기준 건수 내에서 제출 순서대로 평가
※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수행**한 실적은 **1건**으로 **제출** (예: 동일 내용의 교육을 여러 차례 실시하거나, 동일 내용의 홍보를 여러 매체를 통해 수행한 경우는 1건으로 인정)
✓ (실적 등록) 본 보고서와 증빙자료는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 등록
✓ (파일 구성) 1.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성과보고서 파일 1부
2. 증빙자료 압축파일 1부

< 제출 개요 >

연번	분야	추진실적명	수행 시기	증빙 페이지
1	*기업 지원*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YYYY-MM-DD~ YYYY-MM-DD*	*1-5*
2	*수요조사*	*공공데이터 활용 관련 설문조사 실시*	*YYYY-MM-DD~ YYYY-MM-DD*	*6-10*
3				
4				
5				

실적①	*[분야] 추진실적명*		
수행시기		증빙 페이지	
추진 필요성 (추진배경)	• *현황 및 문제점을 바탕으로 기관에서 해당 지원노력을 추진한 배경 기술*		
추진 내용	• *국민·기업이 기관에서 개방 중인 데이터를 파악하고, 이를 다방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지원한 기관의 노력 제시*		
핵심 성과	• *상기 기재한 기관의 추진 내용(실적 등)을 통해 나온 결과와 기관 노력을 통해 발생한 효과 기재(정량·정성 등)* *※ 정량 성과 작성 시, 단순 추상적 표현이 아닌 구체적 수치나 근거 작성 필요* *예시) - 총 100개팀 참여,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10건 발굴* *- 공모전 운영기간 중 공공데이터 활용도 증가(전년대비 다운로드 수 500건, API 제공신청 10회 증가* *- 공공데이터 활용 인식 제고 효과 창출(설문조사 결과 참여자 90% 이상이 긍정적 변화 인식)*		

첨부5 **[지표1-⑤] 가명정보 제공 및 합성데이터 개방 실적 작성 양식**

[기관명] 가명정보 제공 및 합성데이터 개방 실적[지표1-⑤]

< 작성 참고사항 >

✓ 자료 제출 시 청색 글씨, 이탤릭체 등 작성 참고사항은 삭제하여 제출

✓ (작성 분량) 아래 목차를 준용하여 2p 이내 작성 (증빙자료*는 분량 제한 없음)

- 증빙자료는 순서(①~④)에 맞춰 건별 1개의 PDF파일로 병합(파일명 1-5-연번-기관명-데이터명.pdf), 여러 건일 경우 여러 PDF파일을 한 개의 압축파일로 압축하여 제출(파일명 1-5-기관명.zip)
- 증빙자료에 민감정보가 포함되었을 경우 마스킹 처리 등 민감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후 제출

* ①공식적인 신청 증빙, ②제공·개방 증빙, ③가명정보 적정성 최종 검토 결과서 또는 합성데이터 안전성·유용성 검증 결과서, ④적정성 검토 및 안전성·유용성 검증 결과를 보고한 공식 문서

※ 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일부자료 누락 시 해당 실적은 불인정 처리됨

✓ (실적 등록) 본 보고서와 증빙자료는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 등록

✓ (파일 구성) 1. 가명정보 제공 및 합성데이터 개방 실적 보고서 파일 1부
2. 증빙자료 압축파일 1부

□ 가명정보, 합성데이터 제공 · 개방 목록

연번	구분	데이터명	신청일자	적정성 검토 완료일자 /안전성 및 유용성 검증일자*	제공·개방 일자
1	*가명/ 합성*	*수도권 교통카드 이용내역 합성 데이터*	*YYYY-MM-DD*	*YYYY-MM-DD*	*YYYY-MM-DD*
2					
3					
4					
5					
총계(건수)			총 00 건	가명정보 00건	합성데이터 00건

※ "데이터명"은 반드시 제공(개방)한 시스템에서 등록한 데이터명과 동일하게 작성

** '가명정보'는 적정성 검토 완료일자, '합성데이터'는 안전성 및 유용성 검증일자 작성*

※ 4-⑤ 지표에 제출된 실적은 해당 지표의 평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첨부6 **(지표3-①-2) 분석 결과의 정책활용 노력 및 성과 작성 양식**

(기관명) 분석 결과의 정책활용 노력 및 성과 보고서 (지표3-①-2)

< 작성 참고사항 >

✓ 자료 제출 시 청색 글씨, 이탤릭체, 박스 등 작성 참고사항은 삭제하여 제출

✓ (작성방법) 각 기관에서 데이터 분석으로 **과학적 의사결정, 행정·대민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추진한 일련의 노력 및 성과에 대해 보고서 양식을 참고하여 **10장 이내**로 작성 (증빙자료*는 분량 제한 없음)

*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증빙자료는 공식 계획 및 결과보고서, 내부결재 문서, 사진, 캡처, 보도자료 등으로 정확한 날짜 확인이 가능해야 함),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유의사항) 작성된 내용은 모두 실적인정 기간('25.11.15.~'26.9.30.) 내에 수행한 내용이어야 함

✓ (실적등록) 본 보고서와 증빙자료는 평가시스템에 등록

✓ (파일구성) 1. 아래 양식의 보고서 파일 1부
2. 다수의 증빙자료를 하나로 묶은 PDF 파일 1부

1 개요

☞ *기관 내 데이터 분석으로 과학적 의사결정, 행정·대민 서비스 개선 등 업무혁신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한 주요 활동과 결과 등에 대한 소개*

○

-

2 정책활용 주요성과

☞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룩한 **핵심적인 정책활용 성과**에 대하여 주제의 발굴, 기획, 분석 수행, 정책 활용, 사후 관리로 이어지는 전체 과정을 소개하고, 기관에서 이행한 모든 실적을 리스트업하고 간략히 소개하되,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 1~2개 과제에 대해서는 아래의 구성 예시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

○

-

<구성 예시>

□ 과제명 :

□ 추진배경 및 목적

○

-

□ 데이터 분석

○ 활용 데이터

연번	데이터명	형식	내용	출처	수집기간
1	*고용동향*	*xlsx*	*고용률, 실업률 등*	*고용노동부*	*2026*
2	*구매협의정보*	*hwp*	*구매협의제목, 유형 등*	*조달청*	*2026*

○ 분석기간 :

○ 분석기법 :

○ 분석내용 및 결과 :

□ 정책활용 성과/기대효과

○ 활용기간 :

○ 활용내용 :

○ 활용성과(또는 기대효과) :

3 운영 및 개선 방안

☞ *데이터 분석과 정책활용 결과물의* ***내외부 확산 방안****, 분석모델을 지속 활용하기 위한* ***유지관리 방안****, 데이터 및 모델 업데이트/고도화 방안, 내외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방안, 신규 분석주제의 발굴과 기획 추진시 고려사항 및 개선방안 등 해당항목에 대해 자유롭고 구체적으로 기술*

○

-

첨부7 **(지표3-③-2) AI 도입·활용 사례 및 추진 노력 보고서 작성 양식**

(기관명) AI 도입·활용 사례 및 추진 노력 보고서(지표3-③-2)

< 작성 참고사항 >

✓ 자료 제출 시 청색 글씨, 이탤릭체, 박스 등 작성 참고사항은 삭제하여 제출
✓ (작성분량) 아래 서식을 준용하여 실적별 5장 이내 작성(증빙자료*는 분량 제한 없음)
  *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증빙자료는 공식 계획 및 결과보고서, 내부결재 문서, 사진, 캡처, 보도자료 등으로 정확한 날짜 확인이 가능해야 함),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실적등록) 본 보고서와 증빙자료는 평가시스템에 등록
✓ (파일구성) 1. 아래 양식의 보고서 파일 1부
  2. 다수의 증빙자료를 하나로 묶은 PDF 파일 1부

□ 추진목록

연번	유형*	추진실적명	추진기간
1			
2			
3			

* 1 AI를 활용한 시스템(서비스) 구축·운영 또는 2 기관 행정업무 내 AI 활용에 대한 유형에 맞게 작성하되, 유형 구분 없이 기관의 대표적 사례를 최대 3건 선별하여 작성
※ 실적인정 기간 내 구축·도입의 구체적 계획(예산, 추진내용, 일정 등)이 수립된 경우에도 작성 가능

□ 추진실적

※ 아래 작성 항목 및 표의 양식을 준용하여 기관별 최대 3건의 실적 제출

AI를 활용한 시스템(서비스) 구축·운영	*o AI를 활용한 시스템(서비스)의 구축 추진배경 및 필요성* *o 관련 법령 근거 또는 법령 개정·정비* *o 민간 또는 자체 LLM 도입·활용, 서비스에 활용하는 내외부 데이터* *o AI 도입·활용 결과에 대한 수혜자(국민, 업무담당자 등)의 만족도나 효과성* *o 공공부문 확산을 위해 타 시스템(서비스)과 연계, 제공 서비스의 안내·공유* *o 구축, 고도화,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의 예산확보와 계획수립 등*
기관 행정업무 내 AI 활용	*o 보고서 초안 작성, 번역, 기초자료 조사·분석 등 기관 내부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의 지원* *o 효과적인 업무 활용을 위한 가이드 안내, 이용현황 확인, 활용 대표사례 선정·공유 등 체계적 운영* *o 내부데이터(자료)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보안 규정·가이드를 준수*

실적①	*추진실적명(추진목록과 동일하게 작성)*		
추진기간		증빙 페이지	

추진배경 및 목적	o - - ※

추진대상	*대국민 / 행정·공공기관(업무담당자, 일반사용자) / 기관 내부 직원*

추진내용	o - - ※
추진성과 (또는 기대효과)	o - - ※
향후계획	o - - ※

첨부8	(지표3-③-3)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 보고서 작성 양식

(기관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 보고서(지표3-③-3)

< 작성 참고사항 >

✓ 자료 제출 시 청색 글씨, 이탤릭체, 박스 등 작성 참고사항은 삭제하여 제출

✓ (작성분량) 아래 서식을 준용하여 실적별 3장 이내 작성(증빙자료*는 분량 제한 없음)

*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증빙자료는 공식 계획 및 결과보고서, 내부결재 문서, 사진, 캡처, 보도자료 등으로 정확한 날짜 확인이 가능해야 함),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실적등록) 본 보고서와 증빙자료는 평가시스템에 등록

✓ (파일구성) 1. 아래 양식의 보고서 파일 1부

2. 다수의 증빙자료를 하나로 묶은 PDF 파일 1부

□ 추진목록

연번	유형*	추진실적명	추진기간	증빙 페이지
1				
2				
3				
4				

* 역량진단 결과 활용,기반조성,문화조성 및 성과확산, 전문인력 양성, 기타 중 해당유형으로 작성 (유형은 평가의 편의를 위한 구분으로 유형별 제한 건수는 없음)

□ 추진실적

※ 아래 표의 양식을 준용하여 기관별 최대 4건의 실적제출

실적①	***추진실적명***		
추진기간		증빙 페이지	

추진대상	

추진내용 및 성과 (또는 기대효과)	o - - ※ o

첨부9	(지표④-②) 고가치 · 고활용 공유데이터 발굴 노력 및 실적 보고서 작성 양식

(기관명) 고가치 · 고활용 공유데이터 발굴 노력 및 실적 보고서(지표④-②)

< 작성 참고사항 >

✓ 자료 제출 시 청색 글씨, 이탤릭체, 박스 등 작성 참고사항은 삭제하여 제출

✓ (작성분량) 아래 목차를 준용하여 2장 이내 작성(증빙자료는 분량 제한 없음)

-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증빙자료는 계획, 사진, 캡처 자료 등으로 정확한 날짜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증빙자료는 **건별 1개**의 PDF파일로 병합(파일명 4-2-연번-기관명-과제.pdf),여러 건일 경우 여러 PDF 파일을 한 개의 압축파일로 압축하여 제출(파일명 4-2-기관명.zip)
- 증빙자료에 민감정보가 포함되었을 경우 마스킹 처리 등 민감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후 제출

✓ (실적등록) 본 보고서와 증빙자료는 평가시스템에 등록

✓ (파일구성) 1. 아래의 실적보고서 파일 1부
2. 증빙자료(압축파일) 1부

개요	배경 및 목적	*공유데이터 발굴·생성·공유의 배경 및 목적 등*
	공유데이터 설명	*공유데이터의 명칭 및 설명, 데이터 주요 내용 및 활용 가능한 분야 등*
발굴·제공 노력	공유데이터 발굴	*행정·공공기관에서 이용.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지원한 노력과 추진 성과를 작성* *- 타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공유데이터 발굴을 위한 활동(설문, 연구용역, 자체분석 등), 기관 내 보유DB별 공유여건에 대한 실태·현황 조사 및 분석 여부 등 공유데이터 발굴 노력* *※ 증빙자료에서의 활동과 발굴된 공유데이터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공유데이터 제공	*공유데이터 제공 기관이 공유데이터 공유·활용 과정에서 수요 기관에 직접적으로 지원한 활동 및 추진 성과 등*
활용사례 및 기대효과	제공데이터 활용사례	*제공한 공유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 수립 및 실제 행정서비스가 개선된 사례*
	제공데이터 활용 기대효과 및 계획	*제공한 공유데이터 활용을 통한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등*

첨부10 [지표④-③] 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실적 작성 양식

(유형1 관련) 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및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 연계

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 데이터 등록 목록 캡쳐 화면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연계 캡쳐 화면

(유형2 관련) '27년 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확보 증빙

'27년 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계획 관련 결제 공문(실·국장급 이상)
'27년 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확보 증빙 캡쳐

첨부11 **[지표④-③] 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계획서**

□ 기관공유시스템 구축 개요

기관명		
구축 목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데이터의 행정적 활용도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구축 범위 (중복선택 가능)		☑ WEB/WAS 서버 구축 ☐ DB 서버 구축
		☐ 연계서버 구축 ☐ NAS 구성
구축 방식		☐ 온 프레미스 ☐ 클라우드 ☐ 혼합
시스템 구성	전체 구조	*시스템 구성 및 데이터 흐름 중심 작성* *[예; WEB/WAS 서버는 통합 구성하고, DB서버는 별도로 분리하여 구성]*
	망 구성	*서버의 네트워크 위치(DMZ/내부망 등) 중심 작성* *[예; (내부망) DB 서버, (DMZ) WEB/WAS 서버]*
	구성 이유	*보안, 성능, 운영 안정성 등을 고려한 설계 이유 작성* *[예; DB 서버는 외부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내부망에 분리 구성하고, WEB 트래픽 증가에 따른 부하 분산을 고려하여 WEB/WAS와 DB 서버를 분리하였음. 또한 시스템 장애 시 영향 범위를 최소화하고자 서버를 분리하여 구성하였음]*
	이중화 여부	☐ WEB/WAS 서버: ☐ 적용 ☐ 미적용 ☐ DB 서버: ☐ 적용 ☐ 미적용 ☐ 연계 서버: ☐ 적용 ☐ 미적용
행정공동이용센터 기 활용 여부		☐ 활용중 ☐ 미 활용중

※ 망 구성도(네트워크 구성도(내부망/DMZ, 서버위치 등)를 간단히 작성)

□ 기관공유시스템 설치 대상 자원 정보

○ WEB/WAS 서버

서버	항목	설치 사양	비고
WEB/WAS 서버	CPU	- CORE :	
	MEM	- GB :	
	DISK	- GB :	
	OS	-	
WEB/WAS 구성		□ 통합 서버 □ 분리 서버	

○ DB 서버 정보

서버	항목	설치 사양	비고
DB 서버	CPU	- CORE :	
	MEM	- GB :	
	DISK	- GB :	
	OS	-	

○ 연계서버 정보

서버	항목	설치 사양	비고
연계 서버	CPU	- CORE :	
	MEM	- GB :	
	DISK	- GB :	
	OS	-	

○ 스토리지(NAS)

구성유무	□ 유 □ 무	저장용량	

※ 스토리지(NAS)는 수집된 데이터의 가공 처리에 사용되며, WEB/WAS, 연계서버에서 공유 폴더 형태로 접근 가능하도록 설정해야 함

○ 상용SW

소프트웨어명	구입여부	구입일(예정일)
SSL 인증서*	□ 여 □ 부	
MagicLine V4.0 (드림시큐리티)**	□ 여 □ 부	
Petra Chiper V4 (신시웨이)	□ 여 □ 부	

* **SSL 인증서**: NIA에서 제공하는 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으며, 기관에서 기존에 사용 중인 인증서도 사용 가능함. 또한, SSL 인증서는 특정 제품에 대한 제한 없이 적용 가능함

** **MagicLine(전자서명)**: 중앙부처는 필수 도입 대상이며, 공공기관은 기관 내부 정책 또는 업무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도입 가능함

□ 기관공유시스템 구축 일정

단 계	기간	주요 내용
사전 준비	*~ 3월*	*HW/SW 확보, 네트워크·방화벽 설정, 행공센 연계 준비 등*
시스템 구축	*~ 6월*	*시스템 설치 및 환경 구성, 국가공유시스템 연계테스트 등*
원천시스템 연계	*~ 8월*	*기관 원천시스템과의 연계 완료*
시스템 오픈	*~ 9월*	*서비스 개시*

붙임1 [지표④-③] 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 설치 정보 안내

□ 기관공유시스템 기준

○ HW 요구사항(표준형)

서버	CPU	MEM	DISK	OS	비고
DB서버	2Core	16GB	/GCLOUD 50GB 이상 /APP 200GB 이상	Rockey Linux 8.x 및 Redhat Linux 8.x 버전	
WEB/WAS서버	6Core	24GB	/GCLOUD 50GB 이상 /APP 100GB 이상		
연계서버	2Core	16GB			
Agent	-	0.5GB	100GB	-	
NAS	-	-	1 TB	-	

※ Web/Was 서버 분리 구성 시 Web(CPU 2Core, MEM 16GB), Was(CPU 4Core, MEM 16GB) 필요
※ 제시된 사양은 권장사양으로, 기관 환경에 따라 조정 가능
※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WEB/WAS, DB 서버 등의 이중화 구성을 권장함. 다만, 기관 여건에 따라 단일 구성도 가능하며, 이중화 시 추가 비용 및 전문인력 투입이 수반될 수 있음

○ HW 요구사항(지자체형)

서버	CPU	MEM	DISK	OS	비고
DB서버	8Core	32GB	SAN 500GB	Rockey Linux 8.x 및 Redhat Linux 8.x 버전	
WEB서버	8Core	32GB	SAN 100GB		
WAS서버	8Core	32GB	SAN 100GB		
가공서버	12Core	48GB	SAN 300GB		
연계서버	4Core	16GB	SAN 100GB		
Agent	-	2GB	100GB	-	
NAS	-	-	5 TB	-	

※ Web/Was 서버 분리 구성 시 Web(CPU 2Core, MEM 16GB), Was(CPU 4Core, MEM 16GB) 필요
※ 제시된 사양은 권장사양으로, 기관 환경에 따라 조정 가능
※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WEB/WAS, DB 서버 등의 이중화 구성을 권장함. 다만, 기관 여건에 따라 단일 구성도 가능하며, 이중화 시 추가 비용 및 전문인력 투입이 수반될 수 있음

○ 상용 SW 요구사항

항목	제품명	비 고
웹구간암호화	SSL 인증서	WEB
전자서명	MagicLineV 4.0(드림시큐리티)	WEB
DB암호화	PETRA CIPHER V4 (신시웨이)	WAS

※ 시스템 구축 기관에서 구입

○ 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성안(예시)

시스템 구성안	활용 예
• WEB/WAS 서버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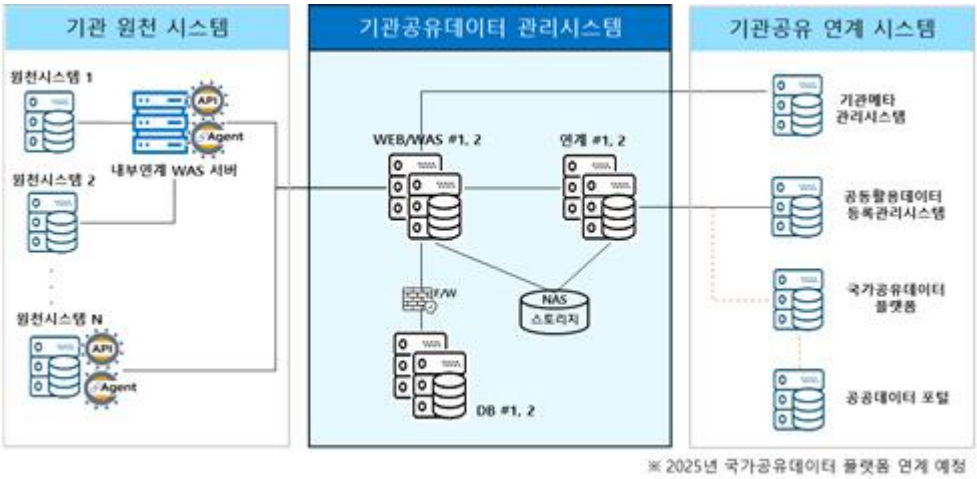 ※ WEB/WAS 통합서버 내에 Hostname/Port 각각 설정하고 Directory를 구분하여 설정함	국가정보자원 관리원(업무망)
• WEB/WAS 서버 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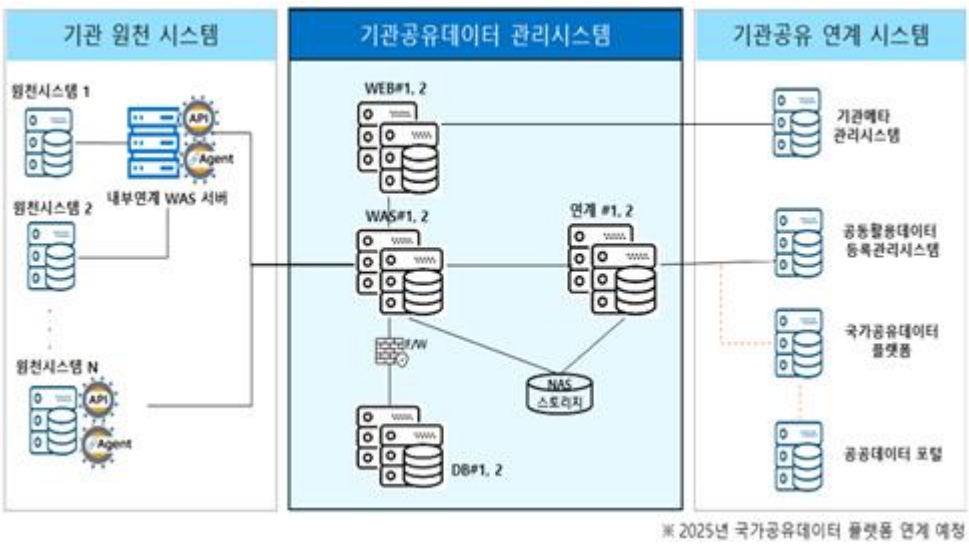 ※ WEB/WAS 서버별로 Hostname/Port 및 Directory를 설정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인터넷망), 기관內 구성

붙임2 [지표④- ③] 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 설치기관

□ 2024년, 2025년 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 설치기관(25개) - 유형1

기관유형	기관명
중앙부처 (7)	'24년기후에너지환경부, '24년기상청, '24년산림청, '24년소방청, '24년행정안전부, '24년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광역자치(1)	'24년대구광역시
공기업·준정부 (13)	'24년국토안전관리원, '24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국가철도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타공공 (4)	'24년한국환경연구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 공동활용형 활용기관(484개) - N/A 처리기관

기관유형		기관명
중앙부처 (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예산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새만금개발청,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재외동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기업·준정부 (20)		공무원연금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조폐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재정정보원, 한전KDN(주),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시도교육청 (16)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기업 (31)		강원개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교통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남개발공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광주광역시관광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광주교통공사, 광주환경공단, 대구교통공사,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전관광공사,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부산관광공사,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서울에너지공사,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울산시설공단,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환경공단, 전남개발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충북개발공사
기초자치 (226)	강원특별자치도 (18)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원주시,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춘천시,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경기도 (31)	가평군,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기관유형	기관명	
	경상남도 (18)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김해시,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양산시, 의령군, 진주시, 창녕군, 창원시,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경상북도 (22)	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포항시
	광주광역시 (5)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대구광역시 (9)	군위군, 남구, 달서구, 달성군,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대전광역시 (5)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부산광역시 (16)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서울특별시 (25)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울산광역시 (5)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중구
	인천광역시 (10)	강화군, 계양구,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옹진군, 중구
	전라남도 (22)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광양시,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목포시, 무안군, 보성군, 순천시, 신안군, 여수시,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전북특별자치도 (14)	고창군,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익산시, 임실군, 장수군, 전주시, 정읍시, 진안군
	충청남도 (15)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충청북도 (11)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청주시, 충주시
기타공공 (183)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잡월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재)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재단법인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관세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강원대학교병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동북아역사재단, 경상국립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보육진흥원, 88관광개발(주), 재단법인한국통계정보원, (재)한국통계진흥원, 국가유산진흥원, 건축공간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새만금개발공사, 재단법인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재단법인건설기술교육원,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테크(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항공안전기술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기후센터,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재단법인한국에너지재단, 한국물기술인증원,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환경보전원,	

기관유형	기관명
	한전엠씨에스주식회사, 한전원자력연료(주), 예술경영지원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국악방송,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재단법인스포츠윤리센터, 영상물등급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스포츠레저(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재)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재단법인축산환경관리원, 한식진흥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립농업박물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정부법무공단, 재단법인한국보건의료정보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전국재해구호협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재단법인한국특허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벤처투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투자공사, 주식회사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한국수출입은행, 재외동포협력센터,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무역안보관리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양육비이행관리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치산기술협회

첨부12 **(지표4-⑤) 가명정보 제공 및 합성데이터 공유 실적 작성 양식**

(기관명) 가명정보 제공 및 합성데이터 공유 실적(지표4-⑤)

< 작성 참고사항 >

✓ 자료 제출 시 청색 글씨, 이탤릭체 등 작성 참고사항은 삭제하여 제출

✓ (작성 분량) 아래 목차를 준용하여 2장 이내 작성(증빙자료*는 분량 제한 없음)

-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증빙자료는 ①②③④ 순서에 맞춰 **건별 1개**의 PDF파일로 병합(파일명 4-5-연번-기관명-데이터명.pdf), 여러 건일 경우 여러 PDF파일을 한 개의 압축파일로 압축하여 제출(파일명 4-5-기관명.zip)
- 증빙자료에 민감정보가 포함되었을 경우 마스킹 처리 등 민감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후 제출

①공식적인 신청 증빙, ②제공·개방 증빙, ③가명정보 적정성 최종 검토 결과서 또는 합성데이터 안전성·유용성 검증 결과서, ④적정성검토 및 안전성·유용성 검증 결과를 보고한 공식 문서

✓ (실적 등록) 본 보고서와 증빙자료는 평가시스템에 등록

✓ (파일 구성) 1. 아래의 실적 보고서 파일 1부
2. 증빙자료 압축파일 1부

□ 가명정보, 합성데이터 제공·개방 목록

연번	구분	데이터명	신청일자	적정성 검토 완료일자/ 안전성 및 유용성 검증일자*	제공·공유 일자
1	*가명, 합성*	*수도권 교통카드 이용내역 합성 데이터*	*2025-09-01*	*2026-07-30*	*2026-09-01*
2					
3					
총계(건수)			총 00 건	가명정보 00건	합성데이터 00건

※ '데이터명'은 합성데이터 공유 시 기관공유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명과 일치해야 하며, 가명정보 제공 시에는 관련 공문 등에 기재된 데이터명과 일치해야 함

* '가명정보'는 적정성 검토 완료일자를, '합성데이터'는 안전성 및 유용성 검증일자를 작성해야 함

※ 1-⑤ 지표에 제출된 실적은 해당 지표의 평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첨부13 **(지표5-①-2) 공공데이터 추진기반 조성 보고서 양식**

(기관명) 공공데이터 추진기반 조성 노력 (지표5-①-2)

< 작성 참고사항 >

✓ 자료 제출 시 청색 글씨, 이탤릭체, 박스 등 작성 참고사항은 삭제하여 제출

※ 양식 내 모든 항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일부 내용 누락 시 점수 차감 혹은 실적 불인정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작성한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공식자료, 캡처 등 임의로 수정이 안되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실적 등록) 본 보고서와 증빙자료는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 등록

✓ (파일 구성) 1. 공공데이터 추진기반 조성 노력 보고서(증빙자료 포함) 1부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인력 및 조직 운영]

▪ 공공데이터 담당자 이름 및 직책

구 분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대표자 1명만 작성, 증빙과 일치 필요*
이 름	*홍 길 동*	*임 꺽 정*
직 책	*과 장*	*대 리*
기관홈페이지 담당자등록 URL	*www.abc.go.kr/####*	

■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임명 공식자료* 캡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변경 통보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변경 통보서를 아래와 같이 보냅니다.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임명[ ] · 변경[○] 통보서				
해당 기관	기관명		대표자 성명	
	주소(소재지)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성명		부서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실무담당자			
	성명		부서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끝.

수신자

붙임자

시행 접수

< 캡쳐 예시 >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임명 공식자료 캡쳐>

** 행정안전부 수신 실무담당자 임명/변경 통보서 외 내부 임명자료 불인정*

■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임명 공식자료* 캡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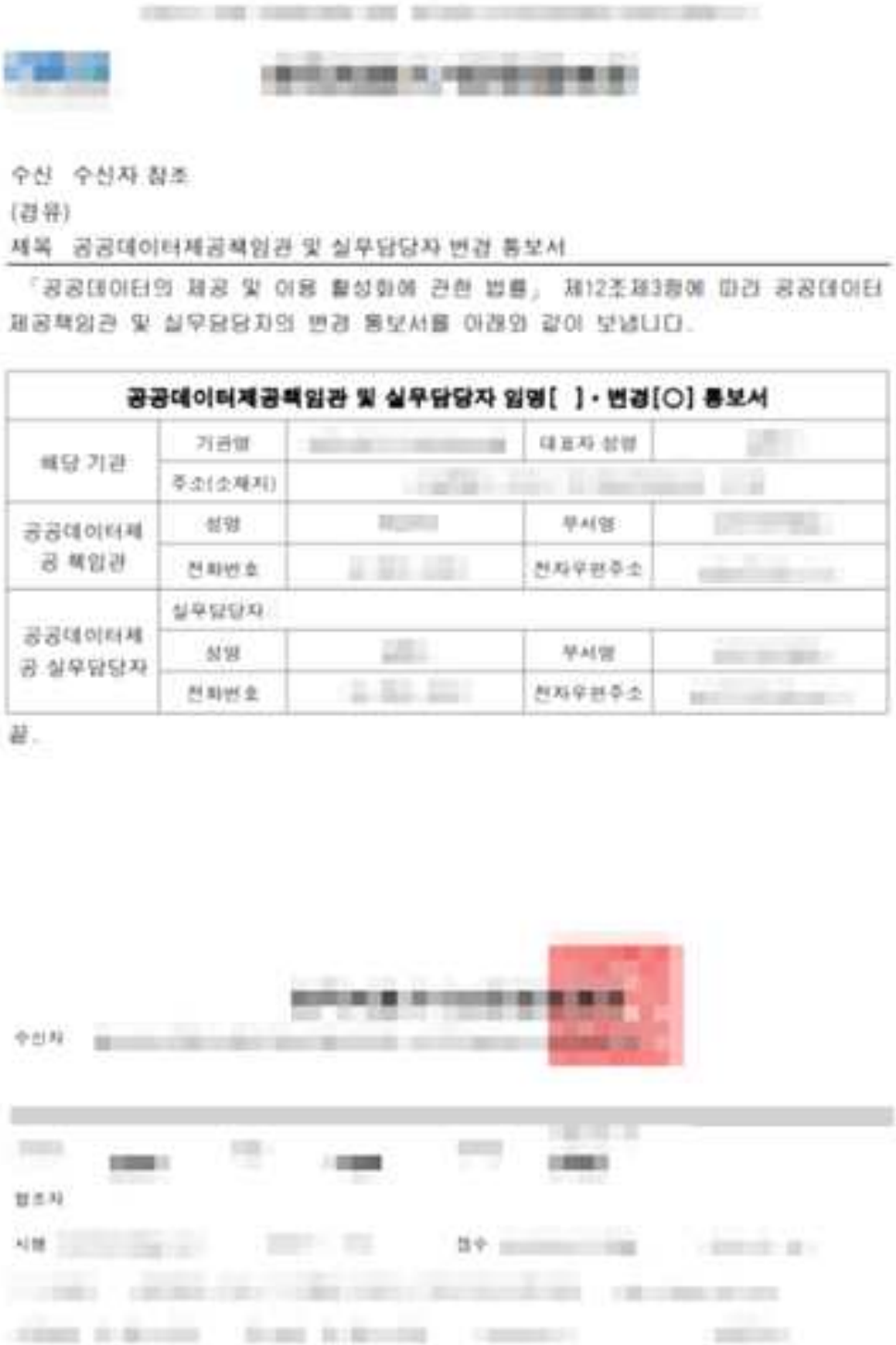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변경 통보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변경 통보서를 아래와 같이 보냅니다.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임명[ ]·변경[○] 통보서				
해당 기관	기관명		대표자 성명	
	주소(소재지)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성명		부서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실무담당자			
	성명		부서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끝.

수신자

참조자

시행 접수

< 캡쳐 예시 >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임명 공식자료 캡쳐>

* 행정안전부 수신 실무담당자 임명/변경 통보서 외 내부 임명자료 불인정

■ 공공데이터포털內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등록 캡쳐

< 캡쳐 예시 >

<공공데이터포털內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등록화면 캡쳐>

< 캡쳐 예시 >

<공공데이터포털內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등록화면 캡쳐>

■ 기관 홈페이지內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등록 캡쳐

< 캡쳐 예시 >

<기관 홈페이지內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등록 캡쳐>

<[홈페이지 내 담당자 연락처만 적혀있는 경우] 추가 증빙자료>

[공공데이터 전담부서 공식 지정]

▪ 공공데이터 전담부서 지정

전담부서명	*경영기획실*
지정 근거	*직제시행규칙 제 3조 (조직 및 분장직무), 별표 2*

▪ 공공데이터 전담부서 지정 공식자료* 캡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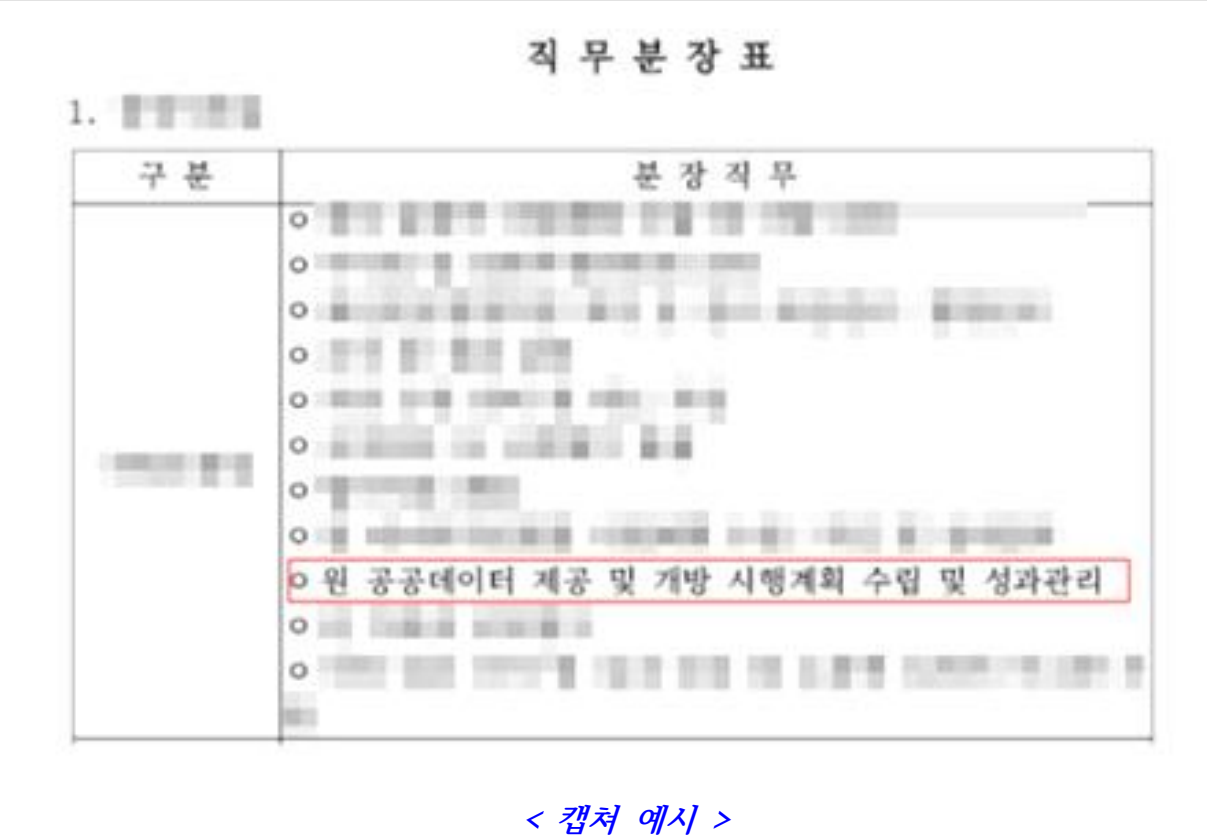

< 캡쳐 예시 >

<00기관 직제규정 내 '공공데이터' 단어 포함 영역 캡쳐>

** 직제규정 등 기관의 공식 규정 문서에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와 담당 부서(또는 직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단순 내부결재·업무설명 자료는 불인정*

첨부14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전체 실적 개요서 작성 양식

(기관명)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전체 실적 개요서

< 작성 참고사항 >

✓ 자료 제출 시 청색 글씨, 이탤릭체, 박스 등 작성 참고사항은 삭제하여 제출
✓ (작성방법) 아래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기관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 개요서 내용의 증빙자료는 각 지표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개별 지표에 제출하므로 증빙 또는 증적자료 제출 불필요
- 필요에 따라 각 서식의 줄, 칸을 늘려서 작성

✓ (파일구성) 1. 아래 양식의 개요서 파일(엑셀*) 1부,
* 엑셀서식은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 지표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제공 예정
2. 동일한 내용을 직인날인하여 스캔한 PDF 파일 1부
* 기관 직인이 누락된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자료 제출은 공공데이터포털 통합로그인(all.data.go.kr) → 기관시스템 연계 →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 → 데이터기반행정평가 → 5-1-1지표에 제출

□ 분석 · 활용 영역

1. 데이터 분석 · 정책활용 실적 (3-①-1 지표) :

실적 있음	√	실적 없음*	

번호	과제명 **	수행기간
1	*초등돌봄 수요 예측*	*(분석)* *(활용)*
2	*CCTV 최적 입지 분석*	*(분석)* *(활용)*
3	*교통 신호·통행 분석*	*(분석)* *(활용)*
총 00건		

* 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없음' 칸에 체크하고 공란 또는 박스 삭제 후 제출(아래 모든 항목 동일)
** '범정부 데이터분석시스템'에 제출하여 승인된 과제만 작성(시스템에 등록한 과제명과 동일하게 작성)

2. AI · 데이터 문해력(리터러시) 교육 실적 (3-②지표) :

실적 있음	√	실적 없음	

번호	구 분	실적
1	전직원 대상 AI·데이터 분석 교육 이수 실적 (3-②-1지표)	교육대상(정원)* : *00명* 교육 이수 : *00명* 정원대비 이수비율 : *00.0%*

<table>
<tr><th>번호</th><th>구 분</th><th>실적</th></tr>
<tr><td>2</td><td>AI·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 실적 (3-②-2지표)</td><td>
<table>
<tr><th>구 분</th><th>양성실적</th></tr>
<tr><td>합계</td><td>00명</td></tr>
<tr><td>① AI챔피언 인증 또는 자격증 취득자</td><td>00명</td></tr>
<tr><td>② 전문교육이수자</td><td>00명</td></tr>
</table>
</td></tr>
</table>

* 기관 정원 (본부(본청,본원) 정원)

※ 1인이 자격증 취득 및 교육이수 동시 충족 시 중복 인정 불가

3. 데이터 분석 · 활용역량 진단실시 (3-③-1 지표) :

실적 있음	√	실적 없음	

진단방법	진단기간	진단대상	진단인원
행안부 역량진단 점검 도구 or 자체 점검		00명	00명

□ 공유 영역

1.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데이터 공유 실적 (4-①-1지표) :

실적 있음	√	실적 없음	

구분	목표 건수	등록 건수
정원기준에 따른 메타기반 공유데이터 목표 건수		

2. AI 친화적 행정문서 데이터 공유 실적 (4-①-2지표) :

실적 있음	√	실적 없음	

구분	목표 건수	등록 건수
정원기준에 따른 행정문서 데이터 공유 실적		

3. 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실적 (4-③ 지표) :

실적 있음	√	실적 없음	

시스템명	구축기간(또는 예정기간)	예산 (백만원)

4. 메타데이터의 등록 및 관리 (4-④ 지표) :

실적 있음	√	실적 없음*	

상반기(6월)		하반기(9월)	
등록대상 테이블 수	현행화 테이블 수	등록대상 테이블 수	현행화 테이블 수

5. 가명정보 제공 및 합성데이터 공유 실적 (4-⑤지표) :

실적 있음	√	실적 없음*	

번호	정보명	신청기관 (또는 신청자)	신청목적	제공일
1				
2				
3				

□ 관리체계 영역

1.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임명 (5-① 지표) :

실적 있음	√	실적 없음	

구 분	성명	직급	직위	임명일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1급*	*본부장*	*2025.6.1 ~ 현재*

2. 전담부서 지정 (5-① 지표) :

실적 있음	√	실적 없음	

전담부서명	*경영기획실*
지정 근거	*직제시행규칙 제 3조 (조직 및 분장직무), 별표 2*
증적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된 화면이나 내부규정의 맨 앞장과 해당 조항 내용을 화면 캡처하고, 내용 확인이 쉽도록 하이라이트 처리 (규정명, 제정일,시행일, 조항 내용이 모두 확인 가능하여야 함)*

3. 담당인력* 운영 (5-① 지표) :

실적 있음	√	실적 없음	

구 분	부서명	성명	직위	담당업무	연락처	이메일
대표 담당자						
담당자						

* 담당인력은 전담부서 내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의미함
(전담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평가담당자 또는 본 개요서 작성자를 대표 담당자로 작성)

4. 기관장 추진의지 (5-② 지표) :

실적 있음	√	실적 없음	

번호	추진 실적명	추진일자
1		
2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우리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자체 점검결과를 상기와 같이 제출하며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o 작성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서명)

o 확인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서명)
**확인자는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또는 작성자의 소속 부서장으로 함*

o 제출일: 2026. . .

(기관명) (직인)

첨부15 평가지표별 문의처

□ [공공데이터 제공] 지표 문의처

구 분	전화번호	이메일
대표문의 (평가운영 전반, 품질·표준관리통합시스템 이용 문의 등)	1600-2187	(품질) gooddata@nia.or.kr (품질 外) asop@nia.or.kr

지표명		부서	전화번호
1-①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및 이행		헬프데스크	1533-5912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과	044-205-2470
		NIA 공공지능데이터개방팀	053-230-1568
1-② AI친화·고가치 데이터 개방 노력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과	044-205-2472 044-205-2469
		NIA 공공지능데이터개방팀	053-230-1568
1-③ 개방데이터 이용자 지원 실적	1-③-1~3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과	044-205-2473
		NIA 공공지능데이터개방팀	053-230-1550
	1-③-4	행안부 디지털인프라혁신과	044-205-2866
		NIA 공공지능데이터기획팀	053-230-1510
	1-③-5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과	044-205-2463
		NIA 공공지능데이터기획팀	02-6191-2063
1-④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및 성과	1-④-1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과	044-205-2473
		NIA 공공지능데이터개방팀	053-230-1568
	1-④-2,3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과	044-205-2418
		NIA 공공지능데이터기획팀	053-230-1503
1-⑤ 가명정보 제공 및 합성데이터 개방 실적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과	044-205-2469
		NIA 공공지능데이터개방팀	053-230-1563
2-①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2-①-1,5	행안부 공공데이터분석관리과	044-205-2491
		NIA 공공지능데이터인프라팀	053-230-1542
	2-①-2	행안부 공공데이터분석관리과	044-205-2490
		NIA 공공지능데이터인프라팀	053-230-1535
	2-①-3,4	행안부 공공데이터분석관리과	044-205-2492
		NIA 공공지능데이터인프라팀	053-230-1536
2-② 데이터 값 관리		행안부 공공데이터분석관리과	044-205-2491
		NIA 공공지능데이터인프라팀	053-230-1542
2-③ 진단결과 조치		행안부 공공데이터분석관리과	044-205-2491
		NIA 공공지능데이터인프라팀	053-230-1542
5-① 공공데이터 추진기반 조성 <공공데이터 제공>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과	044-205-2418
		NIA 공공지능데이터기획팀	053-230-1520
5-②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교육 참여 <공공데이터 제공>	제공·운영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과	044-205-2418
		NIA 공공지능데이터기획팀	053-230-1520
	품질관리	행안부 공공데이터분석관리과	044-205-2490
		NIA 공공지능데이터인프라팀	053-230-1537

□ [데이터기반행정] 지표 문의처

구분		전화번호	이메일
대표문의 (평가운영 전반, 품질·표준관리통합시스템 이용 문의 등)		1600-2187	-
중앙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053-230-1596 053-230-1939	niada@nia.or.kr
지방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02-2031-9333 02-2031-9335	klidda@klid.or.kr
시스템문의	품질·표준관리통합시스템	1600-2187	-
	기관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1588-0182(내선2번)	gdpm@nia.or.kr
	기관공유데이터관리시스템	1588-0182(내선3번)	sharedata@nia.or.kr

지표명	부서	전화번호
3-① 데이터 분석·활용 실적 및 성과	행안부 공공데이터분석관리과	044-205-2287
	NIA 지능데이터기반행정팀	053-230-1952
3-② AI·데이터 문해력(리터러시) 교육 실적	행안부 공공인공지능혁신과	044-205-2289
	NIA 지능데이터기반행정팀	053-230-1592
		053-230-1956
3-③-1 데이터 분석·활용역량 진단실시	행안부 공공인공지능혁신과	044-205-2289
	NIA 지능데이터기반행정팀	053-230-1546
		053-230-1933
3-③-2 AI 도입·활용 사례 및 추진 노력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정책과	044-205-2711
		044-205-2712
	NIA AI정부기획팀	053-230-1634
3-③-3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	행안부 공공지능데이터정책과	044-205-2475
	NIA 지능데이터기반행정팀	053-230-1596
		053-230-1597
4-① 데이터 공유 실적	행안부 공공데이터분석관리과	044-205-2471
	NIA 공공지능데이터인프라팀	053-230-1539
4-② 고가치·고활용 공유데이터 발굴 노력 및 실적	행안부 공공데이터분석관리과	044-205-2471
	NIA 공공지능데이터인프라팀	053-230-1547
4-③ 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실적	행안부 공공데이터분석관리과	044-205-2485
	NIA 공공지능데이터인프라팀	053-230-1544
4-④ 메타데이터의 등록 및 관리	행안부 공공데이터분석관리과	044-205-2493
	NIA 공공지능데이터인프라팀	053-230-1573
4-⑤ 가명정보 제공 및 합성데이터 공유 실적(가점)	행안부 공공데이터분석관리과	044-205-2471
	NIA 공공지능데이터인프라팀	053-230-1547
5-① 추진기반 조성	행안부 공공지능데이터정책과	044-205-2475
	NIA 지능데이터기반행정팀	053-230-1596
		053-230-1597
5-② 기관장 추진 의지	행안부 공공지능데이터정책과	044-205-2475
	NIA 지능데이터기반행정팀	053-230-1596
		053-230-1597

추가안내 2026년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데이터분석 · AI 교육 소개

※ 교육 상세 안내 : KLID 아카데미(https://www.klidacademy.or.kr)

분 류	구 분	교 육 내 용		
		형태	과정명	교육월
전직원 교육 (18)	데이터 (6)	온라인	떠먹여주는 ChatGPT 데이터 분석(feat. 파이썬)	매월
			비전공자도 할 수 있는 SQL 데이터분석 (feat. ChatGPT)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AI 활용 시장 조사 및 데이터 분석	
			Python 기반 실전 빅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 자동화	
		화상	대화형AI를 활용한 프로그래밍과 데이터분석	6월
			업무에 바로쓰는 공공데이터 분석	9월
	AI (12)	온라인	반복 업무 탈출! 편집자P의 Cursor AI로 업무 자동화하기	매월
			업무 단축 끝판왕! 생성형 AI 마스터 클래스	
			Make와 ChatGPT로 완성하는 AI 에이전트 업무자동화	
			보고서의 품질을 높이는 AI 문서 작성 노하우	
			처음 배우는 생성형AI 프로그램개발(LLM)	
		화상	생성형 AI 4대천왕(ChatGPT,Gemini,Claude,Grok) 실전 활용	5월
			멀티모달 AI 서비스로 홍보 콘텐츠 만들기	
			초중급자를 위한 에이전트 AI 활용	6월
			업무 효율 두 배로! ChatGPT 업무 활용 비법(프롬프트 작성)	
			바로 쓰는 업무 자동화 AI 에이전트 만들기(n8n)	7월
			인공지능(AI)으로 쉽게 유튜브 콘텐츠 만들기	
			생성형 AI 활용! 보고서 작성을 위한 스마트 정보 검색	9월
전문 교육 (3)	데이터 (1)	화상	생성형AI를 활용한 손쉬운 공공데이터 분석	5월
	AI (2)		[1차] ChatGPT를 활용한 보고서 작성	7월
			AI 오피스 도구 실무: 한글·엑셀·파워포인트 통합 활용	9월

※ 전문교육 중 3일 이상(1日 최소 4시간 이상 한정) 집합교육(화상) 이수자만 인정함